의정활동보고서

제320회 정례회(2020. 11. 6 ~ 12. 18)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설계하는 제320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심한 경기 침체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방역수칙에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우리 3백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경북은 그 어느 때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수도권 집중화에 맞선 국가 균형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야 하며,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비롯한 경북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1년도 본예산 및 2020년도 정리추경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조사와 연구, 도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도정의 추진과정과 성과 등을 철저히 살펴보시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정조치 요구와 합리적인 정책대안으로 도민을 위한 도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면밀한 예산심사과정을 통해 소중한 지방재정이 오롯이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 전반에 대한 구상과 설계를 꼼꼼히 살펴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우리 도민들에게 약속한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 코로나19의 겨울철 재확산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민생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도정 추진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이 입동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3백만 도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고 우 현

차 례

Ⅰ. 개 황 ····· 11

Ⅱ. 의사일정 ····· 14

Ⅲ. 의안처리 ····· 33

Ⅳ. 민원처리 ····· 34

Ⅴ. 본회의 보고사항 ····· 36

Ⅵ.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43

□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회) ····· 43

□ 박권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55

□ 박미경 의원(교육위원회) ····· 66

□ 김득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78

□ 김성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87

□ 박태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103

Ⅶ. 5분 자유발언 ····· 116

□ 이칠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116
□ 임미애 의원(농수산위원회) ····· 119
□ 김상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122
□ 황병직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125
□ 이재도 의원(농수산위원회) ····· 128
□ 이동업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131
□ 권광택 의원(교육위원회) ····· 134
□ 김준열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137
□ 이수경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140
□ 박현국 의원(농수산위원회) ····· 144

부 록

□ 조 례 안(48건) ····· 149

□ 예 산 안(4건) ····· 385

□ 동 의 안(5건) ····· 403

□ 결 의 안(2건) ····· 475

Ⅰ.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는 2020년 11월 6일 14시 0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2월 18일까지 43일간의 회기 동안 6차 본회의와 31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10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1월 6일(금) 오후 14시 00분에 개의하여 네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폐회하였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월) 오후 14시 00분에 개의하여 세 분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한 후,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였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화) 오후 14시 00분에 개의하여 세 분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한 후,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였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월) 오전 11시 00분에 개의하여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였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금) 오전 11시 00분에 개의하여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4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였다.

2021년 새해를 설계하는 제320회 제2차 이번 정례회는 우선 수도권화에 맞선 국가 균형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야 하며,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비롯한 경북 미래를 위한 사업에 모든 역량 집중과 또한 코로나19의 겨울철 재확산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더불어 민생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도정 추진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321회 임시회로 2021년 1월 26일(화) 오후 14시 00분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정례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다. 집회일시 : 2020년 11월 6일(금)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20년 11월 6일 ~ 12월 18일(43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6회(누계 138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41	2	7	4	4	4	6	4	8	2
누 계	732	60	95	87	75	67	71	78	101	98

※ 누계는 제11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 6(금) 14:00 (제1차)	□ 안건처리 ○ 5분 자유발언 (이칠구・임미애・김상헌・황병직 의원) ○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 휴회의 건	
11. 23(월) 11:00 (제2차)	□ 안건처리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5분 자유발언 (이재도・이동업 의원)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 30(월) 14:00 (제3차)	▢ 안건처리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회) • 박권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박미경 의원(교육위원회) ○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 1(화) 14:00 (제4차)	▢ 안건처리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김득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김성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박태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2. 1(화) 14:00 (제4차)	○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12. 14(월) 11:00 (제5차)	○ 5분 자유발언 (권광택·김준열 의원) ○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결의안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 제출)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2. 18(금) 11:00 (제6차)	○ 5분 자유발언 (이수경·박현국 의원)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2. 18(금) 11:00 (제6차)	○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 23(월) 13:30 (제1차)	□ 안건처리 ○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12. 1(화) 11:00 (제2차)	□ 안건처리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기획경제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 6(금) 11:00 (제1차)	□ 안건처리 ○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 23(월) 14:30 (제2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조정실 소관) ○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 23(월) 14:30 (제2차)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일자리경제실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대변인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청년정책관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1. 30(월) 13:10 (제3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2. 2(수) 11:10 (제4차)	▢ 안건처리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대변인 소관)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투자유치실 소관)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소관)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2. 3(목) 11:00 (제5차)	▢ 안건처리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청년정책관 소관)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일자리경제실 소관)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2. 4(금) 10:00 (제6차)	▢ 안건처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과학산업국 소관)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	
12. 14(월) 14:15 (제7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24(화) 10:3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 소관)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12.2(수) 11:00 (제2차)	▢ 안건처리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 소관)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소관)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2.3(목) 10:30 (제3차)	▢ 안건처리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건강국 소관)	
12.14(월) 14:00 (제4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문화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23(월) 14:3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 소관) ○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2.2(수) 10:40 (제2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2.3(목) 10:30 (제3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 ○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2.14(월) 13:25 (제4차)	▢ 안건처리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23(월) 14:00 (제1차)	□ 안건처리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해양수산국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농축산유통국 소관)	
12.3(목) 10:40 (제2차)	□ 안건처리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해양수산국 소관)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소관)	
12.4(금) 10:30 (제3차)	□ 안건처리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2.14(월) 14:00 (제4차)	□ 안건처리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23(월) 14:30 (제1차)	□ 안건처리 ○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1.24(화) 13:30 (제2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12.1(화) 16:30 (제3차)	□ 안건처리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2.2(수) 10:10 (제4차)	▢ 안건처리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재난안전실 소관)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2.3(목) 10:10 (제5차)	▢ 안건처리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12.14(월) 14:00 (제6차)	▢ 안건처리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23(월) 14:3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경상북도 중하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11.24(화) 11:00 (제2차)	▢ 안건처리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25(수) 11:00 (제3차)	▢ 안건처리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2.14(월) 14:00 (제4차)	▢ 안건처리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26(목) 10:30 (제1차)	▢ 안건처리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대변인·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인재개발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11.27(금) 10:30 (제2차)	▢ 안건처리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미래전략기획단·청년정책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12.7(월) 10:30 (제3차)	▢ 안건처리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조정실 소관 • 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 소관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2.8(화) 10:30 (제4차)	▢ 안건처리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대변인·투자유치실·일자리경제실 소관 ▪ 미래전략기획단·청년정책관·과학산업국 소관 ▪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12.9(수) 10:30 (제5차)	▢ 안건처리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문화관광체육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소방본부 소관	
12.10(목) 10:30 (제6차)	▢ 안건처리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2.11(금) 10:30 (제7차)	▢ 안건처리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의회사무처 소관 ○ 계수조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2.17(목) 14:10 (제8차)	□ 안건처리 ○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2.1(화) 11:00 (제2차)	□ 안건처리 ○ 통합신공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2.9(수) 11:00 (제2차)	□ 안건처리 ○ 주요업무 보고의 건(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결의안(위원회안)	

Ⅲ. 의안처리

구 분		접수 ⓐ+ⓑ+©	처리 ⓐ+ⓑ	의결					철회 ⓑ	계류 ©	비고
				계 ⓐ	가결		부결	폐안			
					원안	수정					
계		68 (700)	65 (680)	64 (677)	59 (632)	5 (45)	0 (0)	0 (0)	1 (3)	3 (20)	
조례안	소 계	50 (394)	48 (380)	48 (380)	45 (355)	3 (25)	0 (0)	0 (0)	0 (0)	2 (14)	
	의원발의	42 (280)	40 (267)	40 (267)	38 (253)	2 (14)				2 (13)	
	도지사 제출	6 (80)	6 (80)	6 (80)	5 (71)	1 (9)					
	교육감 제출	2 (34)	2 (33)	2 (33)	2 (31)	(2)				(1)	
규칙안		0 (4)	0 (4)	0 (4)	(4)						
예산·결산		4 (31)	4 (31)	4 (31)	2 (16)	2 (15)					
동의·승인		6 (90)	6 (88)	5 (85)	5 (80)	(5)			1 (3)	(2)	
건의안		0 (3)	0 (3)	0 (3)	(3)						
결의안		5 (51)	4 (50)	4 (50)	4 (50)					1 (1)	
기타안		3 (126)	3 (124)	3 (124)	3 (124)					2	
청원		0 (1)								(1)	

※ ( )안은 제11대(제301회~제320회) 의회 누계

Ⅳ.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11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3 (53)	1 (12)	(2)	(2)	1 (10)	1 (5)	(1)	(13)	(2)	(6)
의 회 운 영										
기 획 경 제	1 (8)	1 (1)	(1)	(2)	(1)		(1)	(1)		(1)
행 정 보건복지	(10)	(8)								(2)
문 화 환 경	(13)		(1)					(11)		(1)
농수산	1 (8)	(3)			1 (1)				(2)	(2)
건 설 소 방	(10)				(8)	(1)		(1)		
교 육	1 (4)					1 (4)				
특 별 위원회										

※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4 (53)	4 (53)				
의회운영						
기획경제	1 (8)	1 (8)				
행 정 보건복지	(10)	(10)				
문화환경	(13)	(13)				
농 수 산	1 (8)	1 (8)				
건설소방	1 (10)	1 (10)				
교 육	1 (4)	1 (4)				
특별위원회						

※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Ⅴ. 본회의 보고사항

1. 안건 접수 : 68건(조례안 50, 예산안 4, 동의안 6, 결의안 5, 기타안 3)

2. 처리 의안 : 65건

○ 원안가결 : 59건(조례안 45, 예산안 2, 동의안 5, 결의안 4, 기타안 3)

○ 수정가결 : 5건(조례안 3, 예산안 2)

○ 철 회 : 1건(동의안 1)

3. 의안접수 내용

○ 조 례 안 : 50건(원안가결 45, 수정가결 3, 위원회 계류 2)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 건 명	비고
1	20.10.26	교육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10.26	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0.26	김준열 의원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
4	20.10.26	한창화 의원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0.26	도지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0.26	도지사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0.26	박창석 의원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0.26	김준열 의원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수정가결
9	20.10.26	조현일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0	20.10.26	배한철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20.10.26	이칠구 의원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
12	20.10.26	이선희 의원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20.10.26	윤승오 의원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 건 명	비고
14	20.10.26	이동업 의원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20.10.26	이동업 의원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10.26	곽경호 의원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
17	20.10.26	김영선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18	20.11.20	도지사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9	20.11.20	도지사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	20.11.20	도지사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21	20.11.20	도지사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20.11.20	김준열 의원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
23	20.11.20	박정현 의원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24	20.11.23	박채아 의원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계류
25	20.11.23	박영서 의원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26	20.11.23	김득환 의원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27	20.11.23	조주홍 의원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28	20.11.23	이춘우 의원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29	20.11.23	김득환 의원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0	20.11.23	이수경 의원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20.11.23	정근수 의원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
32	20.11.23	장경식 의원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 건 명	비고
33	20.11.23	임미애 의원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34	20.11.23	이종열 의원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
35	20.11.23	정영길 의원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
36	20.11.23	정영길 의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20.11.23	박미경 의원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38	20.11.23	박현국 의원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
39	20.11.23	정세현 의원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0	20.11.23	나기보 의원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
41	20.11.23	김상조 의원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20.11.23	김성진 의원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류
43	20.11.23	박채아 의원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4	20.11.23	정영길 의원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20.11.23	이재도 의원	경상북도 해녀어업문화 전승·보존에 관한 조례안	〃
46	20.11.23	박차양 의원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7	20.11.23	이재도 의원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8	20.11.23	박용선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
49	20.11.23	박미경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0	20.12.14	위원장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

○ 예 산 안 : 4건(원안가결 2, 수정가결 2)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 건 명	비고
1	20. 11.10	교육감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가결
2	20. 11 .11	도지사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	20.11.13	도지사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4	20.12.02	교육감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 동 의 안 : 6건(원안가결 5, 철회 1)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 건 명	비고
1	20.10.26	교육감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원안가결
2	20.10.26	도지사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20.10.26	도지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철회
4	20.11.20	도지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원안가결
5	20.11.20	도지사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
6	20.11.20	도지사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	〃

○ 결 의 안 : 5건(원안가결 4, 계류 1)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 건 명	비고
1	20.10.28	박차양 의원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2	20.12.04	위원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계류
3	20.12.09	위원장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결의안	원안가결
4	20.12.18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	20.12.18	이춘우 의원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 기 타 안 : 3건(원안가결 3)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 건 명	비고
1	20.11.06	의장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2	20.11.06	의장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11.06	의장	휴회의 건	〃

4. 조례 공포 사항 : 48건(도 41, 교육청 7)

연번	공포번호	자 치 법 규 명	공포일	비고
1	제4419호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12.14	도
2	제4420호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	〃
3	제4421호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2.17	〃
4	제4422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	〃
5	제4423호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	〃	〃
6	제4424호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	〃
7	제4425호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8	제4426호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
9	제4427호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0	제4428호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	〃
11	제4429호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	〃
12	제4430호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3	제4431호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4	제4432호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2.21	교육청
15	제4433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
16	제4434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	〃
17	제4435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8	제4436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9	제4437호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2.31	도
20	제4438호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	〃
21	제4439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
22	제4440호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	〃
23	제4441호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1.1.4	〃
24	제4442호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25	제4443호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	〃
26	제4444호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

연번	공포번호	자 치 법 규 명	공포일	비고
27	제4445호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21. 1.4	도
28	제4446호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
29	제4447호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
30	제4448호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
31	제4449호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	〃
32	제4450호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	〃
33	제4451호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4	제4452호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	〃
35	제4453호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	〃
36	제4454호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	〃	〃
37	제4455호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	〃
38	제4456호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
39	제4457호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	〃
40	제4458호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존에 관한 조례	〃	〃
41	제4459호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42	제4460호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
43	제4461호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44	제4462호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	〃
45	제4463호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46	제4464호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	〃
47	제4465호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교육청
48	제4466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	〃

Ⅵ.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020년 11월 30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고우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축산업계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시기를 내년 3월 25일에서 2022년 3월 25일로 3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나머지 제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 1> 퇴비부숙도 검사 적용 농가 (단위 :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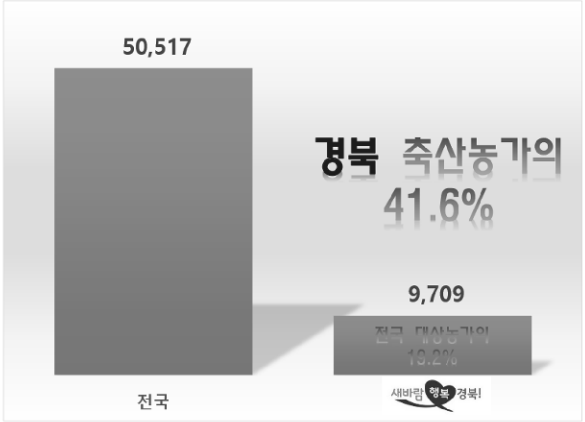

2020년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부숙도 검사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만 517호이며 경북은 9,709호로 도내 축산농가 2만 3,440호 중 41.6%입니다. 축산물 소비 증가로 가축 사육 수가 늘어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4,174만 톤에서 2019년 5,184만 톤으로 10여 년간 무려 24.2%나 증가했습니다.

<표 2>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단위 : 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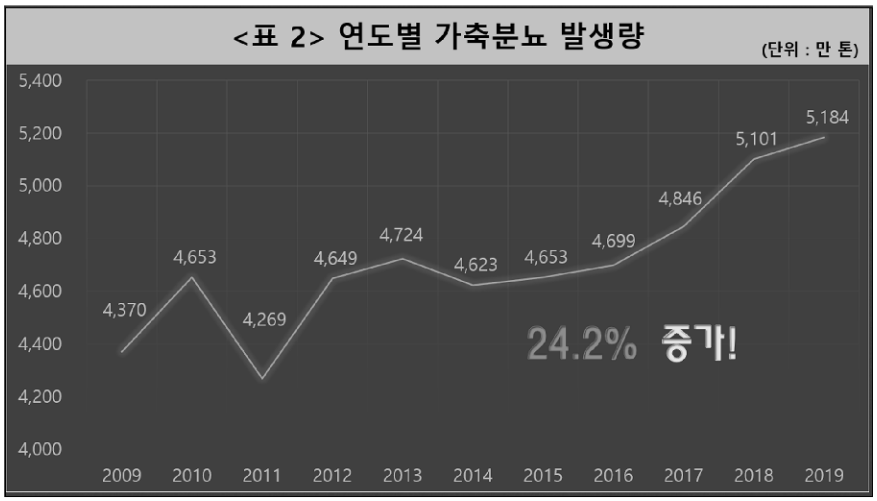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지자체별로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해당 농가 총 5만 517호 중 부숙관리가 가능한 농가는 71.2%인 3만 5,944호이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28.8%인 1만 4,573호로, 여전히 30% 정도의 축산농가가 제도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3> 퇴비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 점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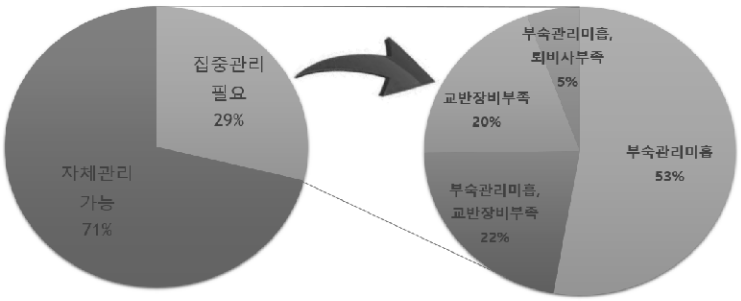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을 앞두고 축산업계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우업계는 축사 면적이 좁아 건폐율 초과 시 퇴비사를 증축하지 못하므로 퇴비사의 경우 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건의하고, 교반장비 등의 장비 구입을 위한 보조사업 확대 및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축산장비 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돈업계는 축분을 정화방류처리시설에서 퇴비화하거나 정화된 물을 방류해야 하지만 처리시설 부족과 수질오염총량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머지 축분은 가축분뇨처리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개인 처리장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적게

드는 시·군의 공공처리장은 배정물량이 적습니다. 양돈농가들을 위해 정화수 배출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기준 완화와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과 자원화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양계업계도 계분을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분을 전량 처리하기 위해서는 1억 8,000만 원의 고가장비가 필요하지만 매년 시·군에서는 한 대만 보조사업으로 배정이 됩니다. 따라서 양계농가에서는 계분 처리를 위해 자부담으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하며 구입 후에도 전기료, 유지·보수비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양계농가들에게 계분처리장비 구입을 위한 보조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첫째, 중소규모 및 대규모 축산농가별, 한우·한돈·양계 등 축산 분야별로 맞춤형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축산분뇨 배출량이 퇴·액비 수요량보다 많아서 전량 소비하지 못해 적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환경에 부담을 주는 수입산 유박퇴비를 가축분뇨퇴비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로는 축분의 전량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액비나 정화방류시설에서 자체 정화된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주로 퇴·액비로 자원화되어 농경지에 환원되고

있지만 경지면적의 감소, 농경지 양분 과잉, 퇴·액비 부숙도 시행 등으로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축산농가들은 축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축산분뇨 처리에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퇴비부숙도 검사 전면 시행에 앞서 가축분뇨 퇴비화·자원화 대책,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과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 가축분뇨처리 관련법과 제도 개선 등의 대응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혼선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결위에서 복지담당국장이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연간 500명씩 4년간 2,000명의 행복도우미와 강사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445명, 2020년에는 64세 이하 461개의 일자리 창출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강사 채용은 61명에 그쳤습니다. 23개 시·군 중 9개 시·군은 강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고, 2개 군은 1명이었습니다.

2020년 경로당 행복도우미와 강사의 연령대를 보면 461명 중 20~30대가 16명 4.3%, 60대는 41명 11.11%로 청년일자리

창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복도우미는 1년 단위의 고용이 불안한 단기적 일자리이므로 양질의 일자리로 단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요자인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령화된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급식도우미나 청소도우미와 같은 경로당 관리입니다. 따라서 행복도우미를 경로당 관리사로 전환하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자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경로당의 상황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행복도우미사업은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경로당 봉사서비스 및 프로그램과 유사하므로 연계 및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복도우미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존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서 수요자인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시·군에게 지나친 재정부담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행복도우미 예산은 전액 인건비로 편성되는데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시·군에서 30~40%의 예산을 부담하면 되지만 행복도우미사업은 시·군 부담이 70%나 됩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최소한 도가 50%는 인건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재료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별도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행복도우미사업 수행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회 19곳, 자활센터 1곳, 복지관 1곳이며 고령군과 울진군만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등 전문기관이 아닌 곳에서 행복도우미사업을 수행할 경우 수행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든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든 사업의 전문성과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여섯째, 행복도우미의 목적과 역할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행복도우미는 2020년 10월 말까지 총 8,011개의 경로당 가운데 7,423곳에서 방문활동을 하였고 전체 활동 실적은 29만 8,756회였습니다. 그러나 활동 실적 내용을 살펴보면 애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유익정보 제공 15만 7,388건과 생활방역 11만 3,964건으로 9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복도우미 선발여건과 업무가 바뀌다 보니 업무수행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되고 대인접촉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활동 실적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표 6>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채용인원	사업비	실 적
2019	총 445명 행복도우미 379 감사 66	3,627백만원 도비 1,116, 시군비 2,511	총41,411회 프로그램 18,110 유익정보 21,813 복지코디네이터 1,488
2020	총 461명 행복도우미 370 감사 91	12,040백만원 도비 3,612 시군비 8,428	총298,756회 프로그램 11,298 유익정보 157,388 복지코디네이터 16,106 생활방역 113,964 * 경로당 7,423개(91.5%) 도내 경로당 8,111개
2021 (계획)	총 500명	13,776백만원 도비 4,133 시군비 9,643	→ 인건비 등 14% 증액 예정

시·군의 경로당 상황이 이런데도 경북도는 내년 2021년 행복도우미사업에 올해보다 14%나 증액된 137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시·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철우 도지사께서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자칫하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성과가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상시로 의사의 배치가 곤란한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의 역할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1차 진료,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업무, 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가정방문 및 경로당방문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의 의료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북도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전담 간호인력으로 파견근무,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역학조사원 등 대응인력, 만성질환자 투약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령화, 사망원인 및 질병양상 변화, 독거노인 증가, 의료서비스 요구 증가 및 다양화로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지역·기관·인력 간 연계사업의 필요성 증가로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8년에서 2022년 선도사업을 실시, 2023년에서 '25년 사업기반 구축, 2026년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2019년 4월 16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2년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경북도만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보건진료사업의 연계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 보건진료서비스의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진료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가 및 도 보건사업 관련업무 추진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도청, 시·군 보건소 내에 보건진료직렬을 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보건진료직의 대체 및 여유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셋째, 보건진료직의 행정업무 역량과 기능강화 차원에서 보건진료직에게도 공정한 승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소수직렬이며 한직으로 인식되는 보건진료직에게도 공정한 포상 및 연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1차 보건진료 업무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주도형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경북교육청의 대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와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에서 장기간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면서 학생 간의 학습격차라는 교육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면적인 대면수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교육을 하는 학생과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도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장기간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수업 외의 각종 학교활동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학생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인간적인 유대와 소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입학한 신입생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학생과 교사와의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원격수업을 받다 보니 직접적인 교우관계의 단절로 심리적·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코로나19 교육격차 실태파악 및 정책연구 현황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원격수업 이후 상위권, 하위권 학생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원격수업에 따른 종합적인 교육격차 실태를 파악한 교육청은

부산 한 곳, 부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는 교육청은 서울, 대구 등 여덟 곳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 전환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된다는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 경북교육을 설계하고 이끌어 가는 경북교육청의 상황 인식과 대응이 아쉽습니다.

코로나19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학생과 교사, 학부모, 학교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환경과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만큼 복합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에서 장기간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비대면 수업의 질, 원격수업 교육격차,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 과외 및 비과외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 학생과 학생·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감 상실, 돌봄 문제,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대책, 특히 2020년 신입생들의 학교적응 등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수능이 실시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능도 걱정이고 코로나도 걱정입니다. 철저한 방역관리로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교육환경에 경북도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12월 3일에 시행될 대입수능시험 코로나 방역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0년 11월 30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박권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권현 의원입니다, 청도 출신 박권현입니다.

오늘 제32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 제정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상북도 조례의 대다수가 조례 시행규칙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제정된 경상북도 조례는 총 610건이며 이 중 약 20% 정도인 123건만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10건 중 약 8건은 조례 시행규칙이 없는 실정입니다.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 등 시행규칙이 없어도 되는 조례 등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숫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듯 경상북도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하지 않는 것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례나 정책·제도의 완결성을 해치고, 이러한 폐해는 조례의 효능을 마비시키는 것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은 집행부가 정책·제도 집행에 있어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자의적 판단과 집행을 통한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이어져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건 해소를 통해서 조례와 정책·제도의 완결성을 꾀해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별도의 심의기구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운동단체 활성화 및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50주년

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50주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60달러이던 세계 최빈국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경제규모 12위의 OECD 회원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해인 올해 경상북도에서는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이하는 각종 기념사업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우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등 많은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고, 새마을단체에서 매년 개최해 오던 각종 행사와 사업도 함께 취소 또는 축소되는 상황으로,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은 매우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돋보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새마을정신이 빛을 발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휩쓸고 있을 때 텅 빈 거리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도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방역활동에 나섰습니다. 변변한 방역복이나 장비도 없이 농사지을 때 사용하던 분무기를 메고 나와 우리 생활 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인 기차역, 버스정류장, 주택가 골목은 물론 시장, PC방, 노래방, 학원 등에 자율적 방역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자율방역활동에 참가한 새마을지도자가 연인원 5만 명이 넘었고 총 4만여 개소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방역하였으며 새마을자원봉사단이 앞장서서 마스크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새마을지도자들 스스로가 해낸 것입니다. 이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정신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태풍, 지진 등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이를 극복해 내는 데 앞장서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영웅들을 우리는 응원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떨어진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사회가 더욱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종주도입니다. 5천 년을 이어온 가난을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끌어낸 자랑스러운 유산을 이어갈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나눔·봉사·배려의 21세기 새로운 새마을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새마을봉사단체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지원과 성원 그리고 시대에 걸맞은 정책과 시책이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이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는 새마을사업은 언택트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재정비하여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매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시책평가를 하여 우수 시·군에 대하여 시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연평균 200명 정도의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상이 풀뿌리 지역사회 개발운동이라는 새마을

취지에 다소 부족하기에 그 뜻이 일선 읍·면·동까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초창기 시절 마을별로 자조마을, 자립마을 등으로 차별하여 지원함으로써 마을별 경쟁력을 높였던 것처럼 새마을운동 시책평가를 시·군 단위 평가와 일선 읍·면·동 단위 평가를 함께 시행하여 우수 시·군 및 읍·면·동을 도에서 도지사가 직접 시상하여 격려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일선 기초행정단위인 읍·면·동에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황을 보면 경북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 720여 개소, 도지정문화재 821개소, 등록문화재 61개소, 문화재자료 578개소 등 총 2,180개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중 부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인근에서 거주하는 도민들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에 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도지사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가·도지정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국가지정 녹지·관리·농림지역은 500m, 도지정 산림·관리·농림지역은 300m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존지역 규제로 인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많은 소중한 것들 또한 지정하려고 해도 도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크나큰 제약으로 인해 문화재 지정을 사실상 거부한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비교적 비중이 큰 주요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가지정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녹지·관리·농림지역은 100m, 시지정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녹지·관리·농림지역은 50m 등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존지역의 문화재별 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일제히 재점검하여 문화재를 유형별·형태별로 분류해서 보존지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마침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확정되면서 통합신공항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단번에 되살릴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경북형 뉴딜 핵심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비롯하여 경북형 뉴딜 10대 역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청도는 경상북도 차원의 장기발전 사업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북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청도군이 경상북도의 아주 중요한 일원이라 생각되시면 청도를 비롯한 남부권지역에서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새로운 먹거리산업을 발굴하여 낙

후된 경북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도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반드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최근 식품산업의 가공식품 중 기내식의 해외시장 규모는 약 17조 원, 국내시장 규모는 4,000억 원 등에 달하는 등 기내식 사업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간편식시장은 2019년 기준으로 4조 원에 육박하며 2022년도에는 약 5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간편식, 밀키트 등 HMR(Home Meal Replacement) 시장과 캐터링산업이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품 생산 및 기술개발단지 조성을 통해 청도를 비롯한 농촌지역의 새로운 신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의성군에 통합신공항과 연계하여 경북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산업단지, K-Food 유기농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농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도는 풍부한 농식품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신공항과의 교통 접근성도 비교적 좋은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도에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친환경 유기식품 가공을 통한 기내식 관련 식품 제조·가공기업 조성 및 R&D사업 연구 지원 등 스카이캐터링사업을 포함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를 추진함으로써 경북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조성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 통합신공항 연계사업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계사업에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조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도소싸움경기장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도군은 민자 및 군비 1,000여억 원을 투입하여 9,726석 규모의 원형돔 청도소싸움경기장을 2011년부터 개장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통소싸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청도소싸움경기는 2011년 개장 이래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8일부터 청도소싸움경기장이 폐쇄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싸움 관련한 산업 종사자들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지 주변의 상권 침체로 인한 군민들의 시름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사업 육성에 발맞추어 청도소싸움경기의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제도 도입도 함께 절실히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경마사업을 하는 미국·영국·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비대면 온라인 발매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청도소싸움경기에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제도가 함께 시행된다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인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 청도군민들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현장창구에서 대면방식의 우권 발매와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를 병행 허용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에 건의 등을 통해 이러한 발매제도 도입을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도군은 소싸움경기장 운영비 및 싸움소 육성을 위한 지원비 등에 전체사업비 중 77%에 해당하는 57억 원의 적자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청도군은 소싸움경기 운영수익에서 제세금 16%인 40여억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유일한 레저세인 27억 원 정도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청도군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군민들의 어깨를 매우 무겁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에서 유일한 전통소싸움경기의 지속적인 운영과 지역특화관광 육성을 위해서라도 청도소싸움 레저세 감면을 담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도군의 레저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또 다른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미집행 교육예산을 활용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생 건강권 보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집행 교육예산(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생 건강권 보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삼한사미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나라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학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청정한 교육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계절인 12월부터 3월이 지척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를 제외한 공기정화 시설이 부족하여 학생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한 공기청정기로는 교실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하고 맑은 공기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특화된 전열교환 환기장치의 모든 교실 내 전면 설치를 통해, 학생 건강권을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2019년 서울시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아파트 내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63%나 줄이는 것으로 효과가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렇듯 교실 내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된 비율은 고작 18.8%(181개 학교)에 그치고 있습니다. 10개 학교 중 8개 학교에서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없는 셈입니다.

미세먼지 증가로 인해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교육청의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 예산은 2019년 185억 원에서 2020년 30억 원

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즉 불용의 경우에 발생하는 사실상의 미집행 교육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교육청의 미집행 교육예산은 총 6,646억 원에 달합니다. 2020년에도 도교육청은 850억 원에 달하는 미집행 교육예산 발생이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2019년 기준으로 2,270억 원이나 이미 적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곳간에 도로 집어두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지 못한 처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교육청의 미집행 교육예산을 경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에 활용함으로써, 미집행 교육예산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권을 지키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0년 11월 30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박미경 의원(교육위원회) ◎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민생당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도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움츠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경북 특유의 강인한 저력을 바탕으로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거점도시 안동 육성 전략 및 안동역사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관광거점도시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에 의거 추진되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2024년까지 5년간 관광브랜드, 콘텐츠 등 도시관광의 전반적인 분야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안동시가 세계적 수준의 지역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안동은 유네스코세계유산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 봉화 등 10개 협력 시·군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그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며, 지역 협력과 상생 발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관광 혁신을 도모할 콘텐츠는 차고 넘치지만, 각 지역의 문화자원을 엮어낼 핵심 플랫폼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북 전체 23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경상북도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7일 이전을 앞두고 있는 안동역사의 부지 활용은 안동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전략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동시 원도심 중심에는 오랜 시간 안동시와 주변 지역 주민과의 만남과 헤어짐의 장소로서 존재한 안동역사가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들으신 이 노래는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로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우리 안동역입니다. 안동역은 중앙선의 주요 철도역이었지만 도담~안동 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계획에 따라 다음 달 17일에 현재의 자리에서 현 안동터미널 바로 옆으로 장소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안동역 이전으로 안동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안동터미널과 연계하여 더욱 편리하게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제가 임청각의 맥을 끊겠다며 마당을 가로질러 중앙선 철도를 놓는 바람에 훼손되었던 임청각의 옛 모습도 다시 살릴 수 있어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안동역 이전으로 원도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안동역이 이전하게 되면 그만큼 유동인구가 줄게 될 것이며, 지역의 상권도 함께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안동은 역사문화 고장으로서 잠재력은 풍부하지만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테마 및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안동역사 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문화관광 핵심 플랫폼으로 만들어 관광객을 찾아오게 하고 일부 유관기관·단체를 유치해 원도심의 정주인구를 늘린다면 세계적 수준의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내외의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폐역과 폐선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자원화에 성공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경의선 숲길은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와 닮았다고 해서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불리며 카페, 맛집, 경의선 책거리 등 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지어진 지 오래된 기관차 격납고를 도서관으로 탈바꿈한 네덜란드 로칼 도서관(LocHal Library)과 같은 기차 관련 시설을 활용해서 도시 재생에 성공했습니다.

한편으로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 이설로 인해 발생할 폐선과 폐역은 안동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계획 부재 및 지원 미비로 오랜 시간 방치되어 경북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에 있는 동해남부선 해운대역은 2013년 12월 2일에 선로 이설과 함께 해운대구 우동으로 이전되었으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 해운대역 보존 후 시민공원화를 추진하려는 시민단체와 상업 개발을 추진하려는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차로 아직까지도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동역사 부지도 안동시와 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서로 시민을 위한 기반시설과 상업시설의 비율과 범위를 놓고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및 시장 등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결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동역사 부지 문제는 우리 안동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거점도시 성공에 이바지하고 문화관광 경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는 경북도를 위해서라도 꼭 해결돼야만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의 전략과 안동역사 부지를 새로운 역사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는 안동역사 부지 등 동해남부선 및 중앙선 이설로 인한 폐선 및 폐역에 대한 활용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지원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포함한

경북의 통합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T/F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 및 극복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가파른 증가로 제3차 대유행이 지금 눈앞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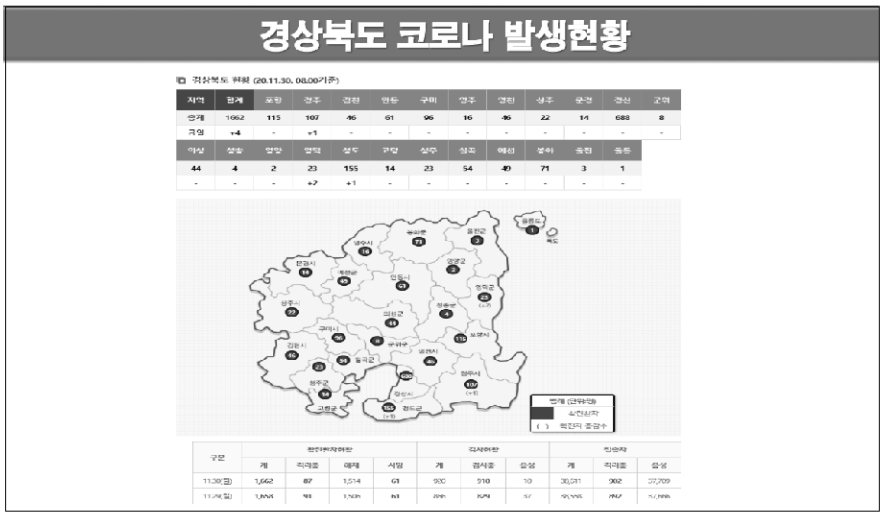

경상북도는 지난 1, 2차 대유행 기간 동안 청도 대남병원, 봉화 푸른요양원 등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3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내 병원 및 요양시설 등에 대한 경상북도의 더욱 철저한 감독 및 방역 준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경북도의 더욱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선택적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선택적예방접종지원사업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	계
2020년	6,300	432,000	438,300
2021년	6,300	216,000	222,300
증감	0	-216,000	-216,000

경상북도는 취약계층의 선택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의 위험으로부터 8개월 이내의 영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경상북도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경상북도는 대상포진은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삼았고 로타바이러스는 기초수급대상 영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내년도 예산 자료를 받아본 본 의원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타바이러스의 예방접종에 630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2억 1,600만 원의 예산만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동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오히려 예산을 반으로 줄였습

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병·의원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도록 지적하였음에도 경북도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시·군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경상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조례에 근거한 선택적예방접종지원사업 추진 실적은 10월 말 기준 로타바이러스 대상자 총 1만 2,740명 중 고작 23명,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대상인원 4만 2,637명 중 겨우 4,200명이 접종을 받는 등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행정이라 하지만 정말예산이 부족했다면 왜 굳이 병·의원에 위탁하여 주사 행위료, 즉 시행비까지 집행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산만 덩그렇게 세워놓고 방치하는 것이 경북도정의 적극행정입니까? 이런 행정이야말로 우리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더구나 2021년 선택적예방접종 예산이 올해보다 더 줄어든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분노를 넘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경상북도는 아이들과 노인들의 복지에 이렇게 무관심하면서 도민들에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노인에게는 행복한 경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그 뒷받침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조례를 제정한 전라남도에서는 8개월 미만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100% 지원하고 있으며, 타 시·도 역시 대상자를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내년에 반토막으로 예산을 세워놓고는 보여주기식 전시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이 우려되지만 초기와는 달리 많이 방역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집단시설 등을 포함한 경북도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2020년 선택적예방접종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 2021년 선택적 예방접종 예산을 이렇게 구실만 갖춰 편성한 이유, 굳이 병·의원으로 위탁하여 예산 낭비 정책을 추진한 이유, 사업 확대 및 예산 추가 편성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세이브 더 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발표하는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2019년에는 17위, 2020년에는 14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캐리어 감금 아동사망 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가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

다. 어떤 이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 가정일 수도 있지만 그 문을 닫으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복지사는 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 등을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휴업 기간 중 대상 학생 가정에 유선으로 학생의 안전과 결핍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학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사례관리 대상인 위기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초·중교 733개 학교 중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가 85개, 즉 8.6%에 불과합니다. 이는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력 충당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손이 닿지 않는 아이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사업 학교 아이들에게 교육복지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복지사 증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육복지사의 근무 여건도 매우 열악합니다.

학교 전체 학생 수와 집중관리 대상의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과 실거주지와는 상관없는 규정에도 맞지 않는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교육복지사 정원은 78명, 현원은 90명입니다. 사립학교 근무 교육복지사 12명은 정원에서 제외됩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3조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육복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에 따른 전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타 시·도 사례를 봐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복지사의 공립에서 공립으로의 전보는 가능하지만 공립·사립 간 전보를 별도의 규정 없이 실시하는 것은 법규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규정을 벗어나 원칙 없는 교육복지사들의 전보 실시로 인해 교육복지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확실히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6일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현장 구성원 간의 입장 차로 초등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학생들이 그 볼모가 되어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돌봄 전담사가 요구하는 지자체 이관 법제화 반대와 전일제 전환 요구 등 그분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감님 역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지자체와 연계한 방과 후 돌봄 통합적 관리 등 초등 온종일 돌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약에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처리할 문제로만 보지 말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요구와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 시 교육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복지사의 효율적 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교육복지사의 전보, 사·공립의 공무직 관련 등 인사 문제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며 공립·사립 간 전보를 규정과 원칙에 맞지 않게 추진한 이유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초등돌봄 전담사들은 얼마 전 1차 돌봄 파업 이후 곧 제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파업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돌봄의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다시 제2의 라면 형제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이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현안문제와 정책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0년 12월 1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김득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득환 의원입니다.

도민을 대표해 도정에 관련한 질문을 하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경북은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경제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 더해지며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반목을 거두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하나의 경북을 완성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경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젊은이들이 경북에서 일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도정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형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 원에 국비 114조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발 빠르게 지난 9월 '경북형 뉴딜 3+1'을 발표하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총 164개 과제 사업에 12조 원 투자, 7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밝혔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하여 올해 경상북도가 건의한 55건의 사업 중 39개 사업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먼저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는 경북형 뉴딜 종합계획 비전과 방향을 밝혀주십시오.

경북형 뉴딜 사업은 더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 경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편승해 경기 부양을 위한 돈 퍼주기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을 살펴보면, 스마트팜 육성 관련 사업의 경우 시범단지 관련으로 상주·안동·포항으로, 인력육성은 의성, 기술개발은 영천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지역과 사업비를 분산해 이곳저곳에 흩어 놓아서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효율성 있게 이끌어나가지 못합니다. 경북형 뉴딜이라는 계획으로 이름만 그럴듯하게 바꾸었을 뿐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에 맞추어 사업을 급조하고 확보된 국비사업은 순간순간 여론에 이끌려 여기저기 사업비가 분산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지역사업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각 지역의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북형 뉴딜사업 권역을 벨트화해서 사업 분야별로 지역에 분배해야 합니다.

경북형 뉴딜 계획은 시·군별 산업환경을 반영하여 집적화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사업을 권역별로 집적화하여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형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지 2개월이 지난 11월 현재, 전체 164개 사업은 총 162개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중 4개

사업도 제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162개의 사업 중 71개 사업은 재원이 투입되어 진행 중인 사업이었습니다. 발 빠른 대응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심도 깊은 검토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창조적 아이디어와 과감하고 선도적인 정책 대응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밝히셨습니다. 정부의 재정 확대를 경북의 산업구조 재편, 일자리 창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북형 뉴딜 세부과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의성·군위 공동후보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최종 확정된 데 이어 10월 12일 경상북도는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하며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통합신공항 사업이 총 51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41만 명의 취업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개발 기대심리 덕분인지 신공항 이전지인 군위의 경우 시·군별 지가상승률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의성 또한 오름세입니다.

신공항 이전지인 의성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일대에는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에 따라 최소 3,000억 이상의 지원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항 이전을 통해 경상북도는 상당 기간 경기부양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사업이 오랜 기간 진행되면서 경북의 모든 역량이 통합신공항 이전에 집중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경북 전역의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시·군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신공항 이전지 외 다른 시·군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도내 균형개발사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재검토 의견을 밝히며 사실상 김해공항은 백지화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부상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미주·유럽노선 취항을 통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목표와 같습니다.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추진되면 항공노선 변화, 대구·경북을 비롯한 주변 지역 항공수요 흡수 등으로 통합신공항은 공항철도와 도로계획, 공항시설 등 전반에 걸친 축소와 함께 미주·유럽노선 취항을 위한 활주로 건설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통합신공항은 경상·전라·충청 등 남부권을 아우르는 수요예측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51조 원으로 분석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항공 수요조사가 시작되면 영남권 전체의 항공 수요를 대체 신공항과 통합신공항이 나눌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도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후신도시 건설과 연계 교통망, 기반시설 개발이 축소되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문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첫 삽을 뜨고 개항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통합신공항의 2028년 개항

목표는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재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되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지역 간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항공업계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반해 대한항공이 항공물류 특송을 통해 유일하게 영업흑자를 기록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자상거래가 늘며 항공물류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316만 건이었던 인천공항 전자상거래 특송화물은 지난해 3,490만 건으로 9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부피가 작고 고부가가치인 상품은 대부분 항공물류를 이용합니다. 항공물류 확대가 산업입지의 기반이 되고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밀집한 구미의 산단은 통합신공항 이전을 통해 항공물류 수송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의 화물터미널은 2만 ㎡로 계획되어 수도권을 제외하면 최대 규모로 지방 최고의 항공물류공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항공물류를 필요로 하는 제품은 경량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그에 맞춘 기업 유치와 지원정책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항공물류 확대에 대응하는 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힘들게 얻은 대구·경북 통합신

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경북과 통합신공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방향을 제시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경북의 특성을 활용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만의 장점을 개발하여 타 공항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북만의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은 신공항 건설, SOC 건설 등을 포함한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만 36조 규모의 단군 이래 대구·경북 최대 건설사업으로, 미래 시대의 발전기반을 만들어 줄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철우 지사께서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해 가장 활발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이전지에 공항을 지어주고 기존 부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국방부와 대구시입니다.

이전지 선정 갈등, 김해신공항 재검토, 코로나19로 인한 공항 산업 변화 등 제반 환경이 경북에 호의적이지만은 않으며 어떠한 돌발변수가 닥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도움이라도 얻어내야 합니다. 여·야, 보수·진보 구분 없이 경북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협치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여·야 구분 없는 지역 정치권의 협력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상향하며 수능 이전 확산세를 꺾는 것을

목표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당국이 수능 당일까지 방역기간을 운영하며 만반의 준비를 약속했지만 수험생들은 불안한 심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연초부터 지구촌을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인들의 일상이 위협받으며 1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우리의 생활상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특히 올해 초·중·고 신입생은 입학식도 없이 예전과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학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기준 경북의 초·중·고생은 26만여 명이며, 이중 신입생 1학년은 7만여 명입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이 밝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EBS에서 제공한 3년간 6월 모의고사 성적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영·수 등 주요 과목에서 중위권 규모가 줄어들고 90점 이상 40점 미만 비율은 늘어 학력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수업과 오프라인수업 병행이 불가피합니다. 올해 누적된 학업결손이 향후 학습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교육이라는 대안을 적절히 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학생이 원격수업만 받게 되면 학력이 낮아질 개연성이 큽니다. 원격수업의 효과가 등교수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월 전국 초·중·고 교사 1,933명에게 학력격차실태를 물은 결과 교사 5명 중 4명이 개학 후에 살펴본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심각하다 진단했습니다. 또한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프로그램은 등교수업을 받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

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원격수업만 받는 저소득층학생이 학업 결손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북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를 보이고 있지만 구미, 포항 등 대형 기초지자체의 경우 과대·과밀 학급이 산재해 있습니다.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가 시행되어도 등교인원 3분의 2 이내 유지로 학습권이 제한됩니다. 입시에 있어 광역지자체의 경우 유명학교·학원이 위치하고 사교육시장에서 쌍방향 원격수업 플랫폼을 적극 도입하면서 학업결손을 보완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력 양극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학업결손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기존 시행하던 기초학력향상사업만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중위권 그리고 저소득층학생에게는 공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력격차 심화에 대한 대책과 교육 인프라의 부재는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육감께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업결손에 대응하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산업이 어렵지만 대면수업을 위주로 하는 학원, 교습소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수업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학원에 대한 규제 강화로 개인과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학원, 교습소들은 최저임금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개인과외는 그 규모도 파악

되지 않는 음성적 사교육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원과 달리 교육청 단속 손길이 전혀 닿지 않으며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파악과 단속이 필요합니다.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증액하고 모범적인 학원의 경우 기존 2년마다 진행하고 있는 지도 점검을 윤번제로 자율정화위원회 점검으로 대체하면 교육청 인력을 불법 개인과외 점검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불법 개인과외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지사님은 신년사를 통해 "과거의 자긍심은 살리되 구태는 버리고, 열정은 갖되 자만은 버려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경상북도청의 모든 구성원들이 미래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마음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상북도에서만 2만여 명의 인원이 한날한시에 시험을 치르는 만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상북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점검과 방역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12월 1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김성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20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2008년 새로운 경북도청 소재지를 선정했으며, 2016년 3월 경북도청을 이전 개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이전의 의미에 대해 '경북 신성장 거점으로 천년 도읍의 출발'임을 천명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청이전 만 4년도 되기 전인 지난해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문제가 언론을 통해 어느 날 아침 툭 내뱉어야 할 만큼 간단한 문제입니까? 단 한 번의 언질도, 단 한마디의 귀띔도 없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말은 한낱 수사에 불과한 것입니까? 270만 도민의 대의기구이자 23개 시·군과 여야의 대의기관인 60명의 도의원은 그저 유령에 불과한 존재입니까?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는 23개 시·군이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23개 시·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상북도가 대구시와 통합을 한다는 것은 경상북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경상북도 관내 23개 시·군의 문제입니다.

경상북도의 예산 가운데 경상북도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고, 절반 이상의 예산은 사업에 따라 20~50%의 도비를 붙여 시·군으로 교부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속성상 사람 많은데 예산 더 가고 표 많은데 예산 더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구시와 통합하면 사람 많은데 예산 더 줄 테니 사람 적은 시·군의 살림은 쪼그라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23개 시장·군수와 시·군 의회에도 먼저 이해를 구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지방이 못산다고, 그렇게 균형발전 해야 한다고 외치다가 이제는 대구시로 모든 것이 집중될 것이 뻔한 통합이 이루어지면 수도권 집중에다 대구 집중의 이중적인 쏠림 현상으로 가뜩이나 힘든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더욱 급격한 지방 소멸을 겪지 않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11월 23일 시정연설에서 '농경시대에 짜여진 현행 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국가적 재검토를 적극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폭탄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북도의 23개 시·군을 대구시의 8개 구·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행정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소규모 시·군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지사님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지난 11월 9일 지사님도 참석한 '아시아포럼21'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문제는 대구·경북 광역통합에서 같이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광역 통합이 되면 광역 내에서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광역 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 논의된다면 지사님 말씀대로 농경시대에 짜여진 경상북도 내 시·군만 해당될 텐데 대구·경북 통합 후에는 소규모 시·군은 토사구팽 시켜버리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거기에다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전통, 주민의 정서적 동질성 등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현행 시·군 단위 행정체제를 농경시대 행정체제의 유물 정도로 단정적으로 폄하한 데 대해서는 실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이날 또다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11월 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시·도지사가 제안했지만 시·도지사의 손을 떠났다.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다시 주장한 것은 의회를 겁박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론화위원회에 모종의 언질을 준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별거해서 살아왔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살림을 합치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 가장을 바로 보겠습니까?

대구시장은 최소한 5년이라도 시정을 해보았으니 대구시의 발전에 한계를 느낀다 하더라도 지사님께서는 100가지가 넘는 야심찬 공약을 내걸고 도지사에 당선된 뒤 선거 뒷정리하는 것까지 합쳐서 겨우 1년 반 도지사직을 수행한 결론이 '경상북도는 이대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까?

열 가지가 넘는 청년 대상 일자리 공약을 제시하며 '새바람 행복경북'을 외치는 동안 경상북도의 인구는 2017년 말 대비 2020년 10월 현재 5만 3,000여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매년 2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경북을 떠났습니다.

[그림3] 경상북도 인구현황(2020.10)

한 번쯤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희망이 없다니 젊은이들은 살길을 찾아 떠나 버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도민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웅도 경상북도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264만의 경상북도와 242만의 대구시가 합쳐 500만이 되면

하늘에서 감이라도 떨어집니까? 대구경북연구원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1년에 약 1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의기투합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대구·경북 통합론에 비위 맞추기 위해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지사님도 속고 계실지 모릅니다. 노래 잘하고 춤 잘 춘다고 하면 정말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어용 전문가들의 허황된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통합의 선진 사례로 제시한 오사카 시와 오사카 부의 통합은 주민투표에 의해 부결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남북 분도 또는 4개 권역 분도론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인구 많아 부럽다고 생각하고 겨뤄보고 싶은 경기도는 왜 분도 논란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주문한 대로 꼭두각시 놀음이나 하는 저들을 믿다가는 한낱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입니다.

이렇듯 허황된 장밋빛 청사진으로 도민을 현혹하려고 하다 보니 소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경북 위원 역시 상당수가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구에 소재한 직장을 두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대구 인근 몇 개 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통합에 반대가 예상되는 시·군의 인사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의 사람을 애초부터 배제

하는 것은 지극히 독단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경상북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는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통합 관련 발표를 합니다.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도민과 도민의 대표인 의원을 사람으로 여긴다면 이를 두고 공론화위원회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무엇보다 공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3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위원이 구성되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 편중과 찬성 위원 일색으로 채워진 공론화위원회는 그 출발부터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했으므로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사님,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를 미리 일정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시하는 것이고 경상북도 산하 각종 기관·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겁박이고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지사께서는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안동 도청은 그대로 통합 5백만 도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구시청도 5백만 시청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도 두 곳, 경찰청도 두 곳, 모두 그렇게 대구와 경북에 두 곳을 두겠다고 하면 지사님 말씀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숱한 기관과 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모두 관계된 문제를 손아귀에 든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사님께서는 특례를 둬서 현재 직원들의 근무와 지위는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지사가 바뀌니 천년 도읍지 경북도청도 5년도 못 가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판에 4년 임기 지사님 공언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사님께 요구하겠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사님이 제시한 2022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역산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여부에 지사직을 거십시오. 거시겠습니까?

이어서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도청신도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누가 지사님의 말을 믿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도지사에 취임한 이후 경상북도가 착공한 공공건물은 단 한 건뿐입니다. 민영 다세대 주택 착공도 지난 3년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경상북도가 2027년까지 2조 2,000억 원을 들여 인구 10만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사업계획을 믿고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과연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도청 신도시에 기대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부지를 사고 건물을 신축하는 데 많은 자산을 투자한 분들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투자만 하도록 유도하고 계획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경상북도는 결국 '먹튀'하고 말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에 입주한 영세 상인들은 전 재산을 투자하여 더 좋은 날이 오기만을 기대하며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표1] 도청신도시 상가 입점| 및 분포 현황 (기준일 '20.9.30)

점포수	입점수	입점률
2,072	875	42.28%

현재 신도시에 있는 총 2,072개의 점포 가운데 875개 점포만이 입주한 상태로 입점률은 42%에 불과합니다. 준공되어 분양된 부지의 상당 부분은 쑥대밭으로 변해 버렸거나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신도시 안착의 현주소입니다.

지사님의 경북도청 신도시 안착에 대한 진정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뜬구름 잡는 듯한 희망고문이 아닌 명확한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 청년정책 내실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청년이 머물고 행복한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의 성장과 자립 및 정착 지원사업으로 26개 부서, 88개 사업에 1,8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2] 경북도 청년정책 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수	예산				
		계	국비	도비	시군	기타
국·도·시군비	28	121,002	59,831	25,355	26,710	9,106
도비	26	7,500	-	7,500	-	-
도비·시군비·기타	32	49,128	-	18,072	16,527	14,529
합계		177,630	59,831	50,927	43,237	23,635

최근 3년 동안 도내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사업을 살펴본 결과, 먼저 기회균등과 형평성 면에서 도내 청년정책 지원을 받은 한 창업 기업이 2년간 지원받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3,000여 건 중 2회 이상 복수지원을 받은 대상은 총 400개 기업이 넘습니다.

표4의 청년창업기업 정책 지원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10월에 창업한 이 기업은 동국대학교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각각 경북청년예비창업가 육성 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지원을 받고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경북청년CEO 희망육성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과 청년기업 일자리지원 사업과 청년정책관에서 경상북도CEO협회에 위탁한 청년기업일자리사업도 두 차례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이 2018년 창업 후 2년간 총 6회에 걸쳐 청년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사례를 볼 때 청년일자리정책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니 복수의 사업 지원이 되더라도 그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청년정책의 운영이 자금 집행에만 매몰된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질수록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청년은 정책 지원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돈만 쓰면 그만인 청년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대책 대행기관 간 지원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경북도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년정책관에도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으니 이런 상황이 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표4] A청년창업 기업의 정책자금 특수·중복 지원 사례(2년간 6회, 2018. 10 ~ 2020. 10)

담당부서	정책사업명			사업 대행기관	○○○지원기업 현황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지원 방법		신규/기존	**개업일**	세부업종
청년정책관	청년창업 기반조성	**경북청년CEO심화 육성지원**	간접	경북테크노파크	신규	2018.10.15	드론
청년정책관	초기창업 패키지지원	**초기창업 패키지지원**	직접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	신규	2018.10.15	기계·소재
청년정책관	시민취업안정	**청년창업 지원사업**	간접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신규	2018.10.15	발달상담
청년정책관	청년창업 기반조성	**청년기업 일자리사업**	직접	경상북도 청년CEO협회	기존	2018.10.15	드론 활영, 오르골 및 경주 관광품 제작
청년정책관	청년창업 기반조성	**청년기업 일자리사업**	직접	경상북도 청년CEO협회	신규	2018.10.15	드론 활영, 오르골 및 경주 관광품 제작
중소벤처 기업과	중소기업 기술지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신규	2018.10.15	드론 s/w

[표5] 청년정책자금 지원 기준 및 사업내용

<2020. 11. 현재>

사 업 명	대 상	지 원 내 용	사 업 내 용 (목적)	비고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주도형)	전국 39세이하 청년	1인 : 3천만원	사업화자금 및 정착비지원, (**외지청년 유입**)	
청년커뮬 창업지원	전국 만39세이하 **청년부부**	팀 : 6천만원	지역정착 창업, 창직 등 사업화 지원 (청업일자리+외지 청년유입+**지역정착**)	
시군 청년예비창업지원	**청년 창업가** **(예비창업 및 1년 이내)**	1인 : 1,200만원	창업활동비, 컨설팅 판로 사업지원 (청업일자리)	
초기창업패키지 (국가직접)	창업기업 **(예비창업 및 3년 이내)**	기업 : 7,000만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청업기업지원)	중기부 사업
청년CEO 심화육성 지원	**우수창업가, 재창업가** (예비 수료자, 재창업가)	1명 : 1,200만원	창업활동비, 마케팅.판로지원, 사업화자금 (청업성공지원+ 창업일자리)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지원(주도형)	도내 미취업 청년 **(마을실태조사 기반)**	1인 : 1,500만원	사업화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청업성공지원+지역활성화+지역정착)	
북부권 청년창업지원	창업청년 (**심화과정**) (**북부권**, 예비 수료자 우선)	1명 : 1,200만원	사업화 자금, 교육, 컨설팅, 사후관리 (청업성공지원+ 창업일자리)	
청년기업 일자리지원(주도형)	**청년기업** (대표자 만39세 이하)	청년근로자 **인건비** (월 200만원 * 2년)	청년기업에 인건비 지원, 역량강화 (청업지원+ 일자리+지역정착)	
창업기업 일자리지원(주도형)	**청업기업** **(7년 미만)**	청년근로자 **인건비** (월 200만원 * 2년)	청업기업에 인건비 지원, 역량강화교육 (청업지원+ 일자리+지역정착)	
청 청년 창업캠퍼스	**청년과 숙련 장년 협업창업** (예비 + 3년이내)	팀 : 5,000만	사업화자금, 전문가 멘토링, 성장프로그램 (청업기업지원)	
청년CEO 창업 재도약	**재창업가** (예비재창업+재창업3년이내)	1명 : 1,200만	사업지원, 전무컨설팅, 실무교육 (청업성공지원+ 창업일자리)	

두 번째, 청년일자리정책 사업을 수탁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은 늘어나는 청년일자리 대행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2019년부터 2년간 총 29회에 걸쳐 인력파견 용역업체를 통해 3~6개월 단위의 단기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고용한 이들이 도정 방향과 청년 정책의 비전을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의 청년정책을 제대로 이해나 하고 계신지 걱정이 됩니다. 청년정책 사업의 현황을 정확히 보고받고 실상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사님이 '자뻑'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상북도 청년일자리의 직접지원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경북도와 사업 대행기관들이 공유하여 정책자금을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정책 시행 단계뿐만 아니라 정책 지원 완료 후에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생존의 위기 앞에서 어느 예술가는 '우리의 곤란을 전 세계인과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문화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예술활동증명제도'가 있지만 거주 요건과 수상 경력 등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가능해 그 요건이 부족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정책적 혜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예술활동증명은 그 자체로 복지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인데, 도내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2020년 11월 현재 1,432명으로 전국 인원 대비 1.48%에 불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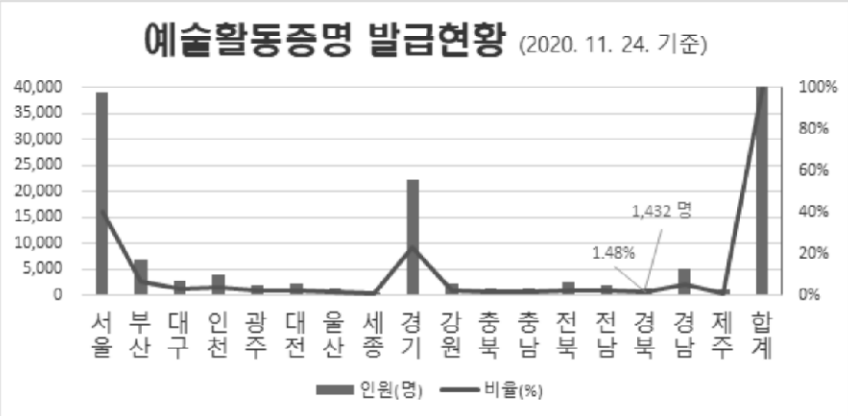

[표6] 전국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현황 (2020년 11월 24일 기준)

지역	예술활동증명 인원	비 율
서울	**38,992**	**40.19**
부산	**6,640**	**6.84**
대구	**2,728**	**2.81**
인천	**3,921**	**4.04**
광주	**1,901**	**1.96**
대전	**2,329**	**2.40**
울산	1,378	1.42
세종	589	0.61
경기	**22,208**	**22.91**
강원	**2,134**	**2.20**
충북	1,384	1.43
충남	1,227	1.26
전북	**2,385**	**2.46**
전남	1,905	1.96
경북	1,432	1.48
경남	**4,931**	**5.08**
제주	925	0.95
합계	97,009	100

또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예술인의 57.4%가 전업 예술인이지만 개인의 예술 활동 수입은 연평균

1,281만 원으로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의 생계 곤란 문제는 일상적입니다.

경상북도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위해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2020년 기준 1,996개 사업에 397억 원을 지원했지만 이 예산 가운데 엉뚱한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지사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표7]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 현황 (문화예술과, 2020.11.24.현재)

연도별	사업수	예산액(단위: 천원)				
		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020	1,196	39,726,164	8,165,210	13,146,088	13,882,172	4,532,694
2019	238	36,838,610	6,491,210	12,531,438	14,386,822	3,429,140
2018	257	32,823,874	2,904,210	12,327,663	15,410,901	2,181,100
2017	235	34,234,420	5,406,210	11,249,663	12,078,747	5,499,800
2016	222	43,463,720	7,798,210	12,667,563	15,997,947	7,000,000

일반적으로 문화예술단체가 단 하루의 행사를 한다면 무대설치 예산이 3분의 1 정도 들어가고, 인기 연예인이라도 부르고 나면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교통비 수준의 사례비 정도인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다음에도 기회를 얻기 위해 조용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희망고문, 열정페이라고 부릅니다. 지사님께서는 열정페이를 공정페이로 바꾸기 위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북도청과 도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지역 문화예술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인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보조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이들에게 정당한 창작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주어진 도정질문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사업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회의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사업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 1만 6,410명 중 경북 출신은 2,327명(14%)이며, 자정순국자 또한 17명(27.8%)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된 지역으로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불립니다

특히, 안동은 1894년 갑오의병, 즉 독립의병의 출발지로서 경북의 독립운동가 2,327명 중 안동 출신 독립유공자는 369명(15.8%)으로 도내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그 외 영덕 222명, 의성 174명, 청송 116명, 칠곡 114명, 예천 102명 등 100명 이상의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 지정 독립운동시설도 전국 950개소 중 경북에 161개소(16.9%)가 있으며, 지역별로는 안동 22개소, 영천 17개소, 문경 10개소, 예천 10개소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독립운동 시설은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독립운동을 주도한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 임청

각입니다. 석주 선생 일가는 독립군을 많이 배출하는 집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은 독립운동의 정기를 끊겠다고 99칸으로 된 임청각을 가로질러 철도를 놓았던 곳이며 인기드라마가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또한 '밀정'의 실존모델 구화 김시현 선생, '암살'의 남자현 선생, 영화 '박열' 등 이미 영화로 재탄생한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경북의 독립운동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식민지 역사를 비롯한 독립운동 역사를 모티브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등을 제작 지원하고 식민지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관련 영화들을 초청하여 경북도청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공동으로 '국제독립운동영화제(영상제)'를 개최한다면 한일강제병합과 전후 식민지 역사를 미화하고 감추기에 위해 파렴치한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동시에 영화 제작과 영화제 관련 예술인들이 지역을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경북도청이 이전한 천년도읍지 안동과 예천이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영화감독이 지역에 정착하여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 경북만의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청년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각 국의 독립운동사 연구전문가를 초청하는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워나감과 동시에 끊임없이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나라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도내 23개 시·

군에 '찾아가는 역사골든벨' 사업과 더불어 전국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찾아오는 독립운동 역사골든벨'을 개최한다면 경북의 독립운동 역사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일부 편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북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시험 잘 치르십시오. 함께하신 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20년 12월 1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박태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우리 모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며 경북도에서도 코로나19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경북도청은 '경북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이곳 안동·예천의 경북도청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경북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경북도청신도시의 활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는 도청신도시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청이전 5년차에 접어든 도청신도시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11월 말 현재 실 거주 인구는 2만 4,000여 명, 65개 기관·단체가 이전하였고, 학교 4개, 보육시설 35개, 음식점, 학원, 마트 등이 들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획된 신도시가 어설픈 도시계획 탓에 교통체증, 문화환경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지사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행정과 문화, 비즈니스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도시 조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체증 및 불법주정차 문제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신도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민원사항이 교통체증과 불법주차문제입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1> 우방센텀(1086가구), 코오롱하늘채(869가구) 입주민 출퇴근시간 혼잡한 모습

본 의원이 지난 11월 20일, 아침 8시 출근길 시간대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난 7월 입주를 시작한 코오롱하늘채 주 출입구 쪽 도로입니다. 이곳은 코오롱하늘채 869세대와 우방센텀 1,086세대, 상록 644세대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2,600여 세대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출근길 교통체증으로 이곳 주민들은 출근지옥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진 2> 신도시내 출근시간 교통체증 모습 및 공공기관 조롱 현수막

도청서문까지 차량으로 평상시 3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가 출근시간대에는 통상 30분 정도가 소요되어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과 공공기관을 조롱하는 현수막 등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이곳이 과연 계획된 명품도시가 맞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교통체증에 대해 경상북도에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도청신도시 1단계 왕복 4차로 관통도로는 경찰청 남동방향 삼거리에서 호명초등 사거리까지 약 2.1㎞ 구간으로 이곳에는 아파트 11개 단지 8,618세대와 상가, 점포, 학교 등이

밀집되어 출근시간 도로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하기 일쑤이며, 신호등은 50~100m 이내에 과다하게 설치되어 심각한 정체로 신도시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안동시, 예천군, 경북개발공사, 경찰청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순환도로 신설, 우회도로 건설 등 신도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사진 3> 신도시내 불법 주정차 모습

또한, 도청서문을 나오면 식당 등 편의시설들이 들어서 있지만 주차공간이 없어 편도 1차선 도로의 양쪽 모두는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도청신도시 내 공영주차장은 중심상업지구 내 총 2개소 188면이 전부로 공영주차장 야간 주차수요 242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형마트, 주거지 등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은 매일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4> 신도시내 야간 불법 주정차 모습

이러한 신도시 주차문제와 교통체증 등의 사태해결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건설 및 버스노선 확대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청이전 5년차에 접어든 신도시는 여전히 사회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시외버스터미널이 조성되지 않아 간이정류장을 이용하고 시외버스 노선도 14개에 불과하는 등 시외버스터미널 건설 및 노선확대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청신도시 시외버스 이용객은 지난 2017년 7,500여 명에서 2019년 2만 3,000여 명으로 급증했지만 간이버스정류장만 있어 무덥고 추운 날씨에도 야외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버스터미널은 외지인들이 처음 접하는 신도시의 얼굴인 만큼 조속한 시외버스터미널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사진 5> 신도시 간이버스정류장 전경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도청신도시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양질의 교육문제입니다.

30·40대 젊은 인구가 83%에 달하는 신도시의 특성상 많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시설 등 대도시에 뒤지지 않는 보육여건과 교육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신도시가 경북의 교육 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시설이 필요하며, 이는 신도시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신도시 내 교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5개소, 초등학교 2개교, 중·고등학교 각 1개교 등 총 9개교에 3,715명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으나 문제는 신도시 내 중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제316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안희영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중학교는 신도시 내 안동지역

풍천중학교 한 곳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신도시 교육발전을 위해 20세 이하 96%가 거주하는 신도시 내 예천지역에 중학교 신설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함께 답변바랍니다.

더불어 신도시 내 대학유치를 위한 부지가 있는 만큼 국내외 유력 대학캠퍼스를 유치하여 경북 제1의 교육도시로서 발돋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시설 유치 및 확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송평천 오염 문제입니다.

도청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송평천은 신도시 주민들에게 운동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사진 6> 신도시 송편천 전경

본 의원이 찍은 우방 5차 아파트 앞과 하나로마트 수변점 주변 송평천 사진입니다. 유량이 부족하여 강은 곳곳이 바닥을 보이고 있으며, 고인 물은 썩어 악취를 풍기고 하천 옆 인도는 곳곳에 물이 말라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신도시 주민들에게 사랑받아야 할 쉼터가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놓은 시설조차 행정부재로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넘어 크나큰 분노를 느낍니다. 송평천 활용방안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신도시의 맑은누리파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도청신도시의 많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도청신도시와 영주, 문경 등 도내 북부권 11개 시·군의 쓰레기처리시설인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첫 가동을 시작한 바 있고, 오염시설에 대한 주민 반감을 줄이기 위해 가동한 달 뒤인 11월, '맑은누리파크'로 명칭까지 변경하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맑은누리파크는 하루에 가연성쓰레기 390톤, 음식물쓰레기 120톤 등 총 51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표를 봐 주십시오.

<표> 맑은누리파크 소각로 가동중단 횟수

➡ 가동기간 10개월(304일) 중 **145일(48%) 가동 중단**

1호기				2호기			
정지기간	정지일수	사유	비고	정지기간	정지일수	사유	비고
합계	**57일**			**합계**	**78일**		
1. 8 ~ 1.11	3일	재추출기 막힘 공동설비 정기점검		2.29 ~ 3.18	18일	재추출기 막힘 공동설비 소모품 교체	동시중지
1.27 ~ 2. 3	7일	컨베이어 파손 공동설비 내부점검		3.25 ~ 3.26	1일	필터 우연 소모품 교체	동시중지
2.29 ~ 3. 2	2일	재추출기 막힘, 공중선비 소모품 교체	동시중지	3.27 ~ 4. 1	5일	재추출기 막힘, 보일러 내부점검	
3.25 ~ 4. 3	9일	펀더 오일 소모품 교체	동시중지	5. 7 ~ 5.14	7일	컨베이어 파손, 공중선비 소모품 교체	
4. 4 ~ 4. 6	2일	재추출기 막힘 공중선비 정기점검		5.14 ~ 5.16	2일	펀더오일 보일러 정기점검	
5. 3 ~ 5. 6	3일	컨베이어 파손, 선비 정기점검		5.16 ~ 5.19	3일	펀더오일 소모품 교체	
5.20 ~ 5.31	3일	벨터오일, 보일러 내부점검		6. 3 ~ 6.10	7일	하부슈트 막힘, 보일러 내부점검	
7. 1 ~ 7. 9	5일	벨터오일, 소모품 교체		7. 3 ~ 7. 7	4일	벨터오일, 소모품 교체	
7.14 ~ 7.22	8일	재추출기 막힘, 공통설비 내부점검		8.15 ~ 9. 1	17일	재추출기 막힘, 터빈정기점검	
8. 8 ~ 8.18	10일	컨베이어 파손, 보일러 정기점검		9. 5 ~ 9.14	9일	컨베이어 파손	
9.26 ~ 10.1	5일	컨베이어 파손		10.9 ~ 10.14	5일	컨베이어 파손	

문제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맑은누리파크의 가동중단 일이 1호기 57일, 2호기 78일 등 약 145일,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동중단 사유는 설비, 보일러, 컨베이어 파손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준공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새 건물이 가동 10개월 중 절반인 5개월 가량이 멈추어 섰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 및 시공불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설건립에 2,097억 원의 막대한 돈을 퍼 넣고도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 도민들에게 도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보일러 수처리과정 설비 고장 등으로 145일간 가동 중단에 대해 전문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수처리 설비 자동시스템 필터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일러와 스팀터빈에 들어가는 수질과 대기로 방출되는 연도가스는 제어가 안 되는 상태로 배출되고, 정수처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의 물이 보일러에 공급됨에 따라 생산된 스팀도 터빈을 때리는 등 부적절한 상태로 계속 가동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고장과 설비의 손상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고장의 원인에 대해 명확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판단하는데 잦은 고장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사진은 본 의원이 지난 11월 11일 아침 6시 30분에 1차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 7> 맑은누리파크 전경(11월11일 06:30분경 촬영)

검은색 연기 : 불완전연소 추정 1

새벽 시간대에 불꽃으로 추정되는 붉은색 모습과 검은색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진 8> 맑은누리파크 전경(11월20일 06:30분경 촬영)

흰색 연기 : 완전연소 추정 1

본 사진은 지난 11월 20일 아침 6시 30분에 2차 촬영한 사진입니다. 흰 연기가 올라오고 불꽃으로 추정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꽃 추정 물질과 검은색 연기로 인해 신도시 주민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경북도의 명확한 답변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서면답변 자료를 바탕으로 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확인 과정을 거쳐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사건·사고, 비위 대책 등 교육행정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8월 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성폭력 매뉴얼에도 학교가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도교육청은 사실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해당 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도교육청의 늑장대응은 도민들의 큰 비난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2차 피해로 큰 고통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도 도내 기간제교사가 연루되어 있었음에도 도교육청은 이러한 사실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4대 강력범죄와 기타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비위 사실도 2016년 217건, 2019년 26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본 의원은 도교육청 교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처가 공교육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는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영상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듯 돌봄의 부재로 형제가 화상을 입고 결국 동생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취약계층 아동·보호자를 발굴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된 아동들에 대해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교육청 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에 아동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돌봄시설에 대리 신청하거나,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전담공무원이 이용시설과 연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해 도교육청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146개국 학생들의 신체 활동량을 조사한 결과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청소년 운동 부족 국가 세계 1위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도내 학생들 체육수업 현황은 초등학교는 주당 3시간, 중학교는 주당 2~3시간, 고등학교는 주당 1시간 내지 2시간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규칙적인 운동, 체육활동은 주의력과 집중력 향상은 물론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능력

개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초·중·고 정규 체육수업 시간은 한국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이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이제는 변해야 산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청소년 운동 부족 국가 세계 1위에 대한 대처방안,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Ⅶ. 5분 자유발언

□ 2020년 11월 6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이칠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포항 장기면 수성사격장 폐쇄 촉구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67년 전인 1953년 7월 27일은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의 쉼표를 찍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 4,200여 명이 살아가는 경북 포항 장기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세기가 넘도록 마치 전쟁터와 같은 포성 속에서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포항 장기면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총탄의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상생활 중에도 총알과 포탄소리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바로 수성사격장이 위치한 포항 장기면민들이 이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에서 불과 1㎞ 인근에 1965년부터 해병대 사격장이 350만 평 규모로 들어선 이후 그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병과 전차, 박격포, 공용화기 등 각종 사격훈련으로 수십 년 동안 불발탄과 유탄 사고, 소음과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통증과 신경불안 증세는 말할 것도 없고 새끼를 밴 소나 돼지들의 원인 모를 유산과 양식 어류 폐사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6.25전쟁은 끝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동해안 최전선인 포항 바닷가에 위치한 장기면의 지형적 상황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부터 이곳 수성사격장에서 주한미군 공격용 헬기인 아파치의 사격훈련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DMZ 철조망과 확성기도 철거하는 마당에 후방인 장기면이 오히려 전방보다 더한,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장으로 둔갑되었습니다. 이유인즉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소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휴전선 일대 사격장들이 폐쇄 수순에 들어가자 국방부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장을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바로 이곳 장기면 수성사격장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광활한 공중에서 행해지고 있는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소음은

전차나 포 사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사격을 위해 낮은 고도로 마을 위를 선회하면서 주민들은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수성리 마을주민 이주만으로 이를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수성리를 넘어 장기면, 그리고 포항시, 장기적으로는 경상북도 지역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헬기 사격훈련으로 주민불편이 야기될 것이 명확했음에도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사과를 위해 방문한 국방부 차관은 도리어 오는 16일 사격훈련의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오히려 자국민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포항 장기면은 해안가를 따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전경의 관광자원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로 인해 수십 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동안 포항시민들은 국방과 안보를 위해 60여 년간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또한 인재로 판명 난 포항 촉발지진 피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주민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상북도 차원에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포항 수성사격장의 폐쇄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11월 6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임미애 의원(농수산위원회) ◎

≪ 여성농어업인 대책 관련 ≫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성 출신 임미애입니다.

18만 8,127, 저는 오늘 이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늘 있었으나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할머니였거나 엄마 혹은 누님이거나 언니, 여동생이었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여성농민입니다.

전국에서 농업인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북입니다. 전국 농가 수의 17% 가량을 차지합니다. 경북농민의 숫자가 약 37만이고, 이 중 남성농민의 수보다 8,000명이 더 많은 51%가 여성농민입니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를 내놨습니다. 이 약관 개정안에는 농어업인의 정년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취업가능연한은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입니다. 사망이나 장애 때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취업가능연한이 높을수록 사망보험금을 더 받게 됩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만 65세 농어업인의 자동차사고 사망보험금은 3,000만원 정도 증가한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농업인이라는 직업의

정년이 70세가 된 것이죠.

농업인이라는 법적 신분을 보장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성농민이 법적 지위를 갖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2019년 기준으로 18만 8,127명 중에 5,953명에 불과합니다. 3.1%입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지만 3%의 여성농민만이 제도의 틀 안에서 농민입니다. 나머지는 무급종사자입니다. 농사는 짓지만 농민은 아닙니다.

그럼 여성농민들의 삶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령에 소득이 매우 낮습니다. 도내 여성농민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60대가 29%, 70~80대가 37%, 50대가 17%로 60대와 70~80대를 합하면 66%에 달합니다. 그럼 이분들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국민연금 가입률은 얼마일까요? 전체 여성농민 중에 3만 330명만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비율로는 16%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충분한 노후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사회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률조차도 16%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여성농민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난하고 평생 노동으로 시달린 건강상태는 각종 질환을 달고 있고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우 낮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경북농정은 투입예산 대비 정책효과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여성농민들의 삶의 질이 낮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 살고 싶지 않은 농촌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철우 지사님,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십시오.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전담팀을 만들어서 여성농어업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강원도는 40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농어업인 건강권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어업인단체의 구성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여성농어업인 개개인을 농업정책의 중심축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경북에서만이라도 농민등록제를 시행해 주십시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민을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제도는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농업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겸업을 하는 경우 경영주는 농업인의 지위가 유지되지만 공동경영주는 농업인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자상거래를 하든 가공을 하든 남편의 이름으로 해야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도 소외와 배제 없이 농사만 지으면 동등한 기회와 지원을 받고 농가 단위로 운영되는 농업행정을 농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민등록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농정에서만큼은 전국의 어느 시·도보다 경북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0년 11월 6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김상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공정한 절차에 따른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촉구 ≫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 7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시장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과연 경북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이슈가 경상북도의 모든 문제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청년일자리 감소, 인구 고령화, 미래먹거리 부재,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제 극복 등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책이 마치 행정통합이라는 요술방망이만 가지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와 집행부 공무원들도 경북 발전과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최선책이 행정통합이라 믿고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그간의 미숙한 절차들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는 통합에 대한 찬반의

견을 충분히 나누고 민의를 수렴하는 공론을 추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인적 구성이 비슷해야 합니다. 또한 경북 북부권에 위치한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가 큰 만큼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이 담보되려면 위원장이 통합 찬반 TV토론의 찬성 측 패널로 등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아무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통합 찬성론자라면 이 공론화 절차를 거친 의견을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걱정되는 것은 위원장 선정뿐만 아니라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여러 정책설계에서 보이는 독선과 경직된 모습입니다.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언론플레이만 진행하는가 하면, 공론화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친집행부 인사들로만 구성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대구·경북 통합이 필요하고 이것만이 경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면 공론화장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담아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구지역은 국비지원 감소와 인프라 분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경북지역은 인력과 자원 이슈에 따른 불균형 심화를 걱정하고 있으며, 통합에 따라 수반되어야 할 의회 통합, 공무원 감축, 통합청사 이전 등 반대가 불 보듯 뻔한 사안들도 숨기지

말고 모두 공론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비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집행부가 몽니를 부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갑니다.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주제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갈등 발생 가능성도 큽니다. 급박한 추진은 결국 도민 간의 분쟁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른 공론화는 충분한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북도청신도시는 여전히 조성 중이고 대구시는 시청 이전 계획을 이제 막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신공항 이전지는 극심한 진통 끝에 겨우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 말부터 본격 추진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언론을 통해 내년 5~6월쯤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9월에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단체장을 뽑아 7월 대구·경북 통합지방정부를 출범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행정통합을 필요로 하는 도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구경북의 행정체제를 통합하는 행정통합 문제는 단체장의 일방적인 하향식 접근에서 성급하게 추진될 사안이 아닙니다. 임기 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경상북도의 주인이 경북도민이라 생각한다면 도저히 계획할 수 없는 일정입니다.

도민을 위해 경북이 먼저 풀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도지사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11월 6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황병직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광역시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관련≫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는 오늘 국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의 범위에 대하여 짚어보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지켜야 할 국정감사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근거는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1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별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에서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는 경상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고려할 때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경상북도에 요구한 자료가 400여 건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무분별한 자료 요구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비서실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과거 비서실 크기 변동 등 자치사무에 불과한 내용을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 근거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핑계로 사무의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올해와 같이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가 동시에 시행되면 관련 공무원들은 9월과 10월에는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작성과 제출, 10월과 11월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제출에 업무 과중과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이 반복되게 됩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이제 3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각각의 역할 구분과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국회는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입법기관의 권위를 세우고 더불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고 개선방안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여 중복 감사를 방지하고 지방자치권 및 지방의회의 자치권이 보장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요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약 국회가 관련 법령의 개정 의지가 없다면 경상북도가 나서서 광역시·도와 연대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11월 23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이재도 의원(농수산위원회) ◎

≪ 포항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철회 관련 ≫

자랑스러운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하 20m, 지상 40m, 이것은 어떤 시설의 높이일까요? 아파트나 도심 속 빌딩의 높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포항시 오천읍에 위치한 곳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1㎞ 남짓 떨어진 곳에 들어설 산업폐기물 쓰레기 산의 높이입니다.

이곳과 인접한 오천읍 주민들은 SRF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한 두 곳의 매립장까지 반경 2㎞ 내에 총 세 곳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업체는 매립시설 포화에 따른 공단 내 업체들의 경영여건 악화를 명분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한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코시스템은 2012년 2월부터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매립장에 모두 228만 ㎥를 매립해 1,7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1,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두었습니다. 대주주인 태영건설은

이에 따른 배당금으로 5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역주민의 희생과 피해로 거둔 막대한 수익금을 고스란히 역외로 유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이 회사는 포항지역 폐기물 처리의 필요성만 강조하면서 2006년 사업허가 시 319만 ㎥이던 폐기물 매립시설을 366만 ㎥로 증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단 내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체인 네이처이앤티는 매립장 사후관리에 들어간 폐기물들의 안정화를 위해 '옥명공원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93만 ㎥ 규모의 매립장을 873만 ㎥로 확장하려는 대규모 증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포항지역 내 발생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공단 내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폐기물 업체의 주장은 겉보기에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3년 톤당 5만 5,000원이던 산업폐기물 매립단가는 불과 6년이 지난 2019년에는 20만 원으로 4배나 올랐습니다. 앞으로 매립단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이들 업체는 엄청난 추가적 수익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 처리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에코시스템의 경우 2018년 전체 폐기물 매립량 13만 5,262㎥ 중 타 지역 반입량은 68%인 9만 1,676㎥에 달했으나 포항지역 발생 폐기물 반입량은 32%인 4만 3,586㎥에 불과했습니다. 타 지역 산업폐기물까지 반입하여 수익을 올려왔음에도 포항지역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매립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이 현실화되어 네이처이앤티 840만 톤, 에코시스템 70만 톤 등 910만 톤 규모의 최대 매립공간이 추가로 들어서게 되면 포항은 타 시·도를 위한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될 것입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포항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고 포항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왔던 지역주민들에게 더 이상 추가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역에는 8개의 초·중·고가 자리하고 있으며 주민 5만 명이 거주하고 1만여 명에 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인근 매립장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많은 유해물질과 60m에 달하는 산업폐기물 쓰레기 산에서 발생할 악취와 오폐수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과 아이들의 웃음을 앗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민과 도민의 생존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산업폐기물업체의 이익만 보장하는 매립장 증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산업폐기물 처리대책 부재와 환경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를 왜 지역주민이 떠안아야 합니까? 아이들을 지키고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네이처이앤티와 에코시스템의 이익만 보장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계획을 즉각 철회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증설과 확장이 아닌 신규 매립장 조성과 같은 근본적인 산업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0년 11월 23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이동업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기능 확대 촉구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서 도지사 출마선언을 하면서 경북 동해안에 도청 2청사를 건립해 부지사를 상주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시면서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미래경북 발전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민선 7기 경북도의 수장으로서 숨 가쁘게 달려온 지 벌써 2년 반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경북발전의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29일 지사님께서 민선 7기 전반기 성과 및 후반기 방향 브리핑에서 밝히신 내용에서도 환동해지역본부가 경북도의 제2청사로서 향후 100만 동남권 도민들의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해양 개발과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4차 산업 전략기지로서 역할 확대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현재 환동해지역본부에는 동해안전략산업국, 해양수산국 등

직원 119명이 근무하고 있고 해양 개발, 해양수산, 항만물류,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관련 업무와 동해안권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가 관할하는 지역은 포항, 경주를 비롯한 동해안 5개 시·군으로 이들 지역은 경북 총생산의 30.3%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자 핵심 지역입니다. 특히 국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537㎞의 해안선을 끼고 있고 컨테이너항인 영일만항이 있어 동해안시대 북방경제의 거점이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전략거점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동해지역본부가 경북도의 해양수산 관련 부서, 사업소, 산하기관 등의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자 경북의 변방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수준이 아니라 경북도청에 버금가는 경북 동부권과 남부권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제2의 경북도청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도청 이전에 따른 동남권 100만 도민의 행정공백 최소화와 동남권지역의 균형 발전, 환동해시대 경북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전진기지로서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환동해지역본부가 현재 2급 본부장 체제에서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지사급으로 격상하고 독립된 예산 확보와 동남권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업무의 범위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 2015년 진주에 서부청사를 개청해 3개 국 2개 직속기관에 330여 명이 근무하는 등 경남도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항노화산업 발전 추진 등의 성과와 경남 서부권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남권 100만 도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담은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가 물류와 해양관광의 동해안바다시대를 열고 더 나아가 경북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0년 12월 14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권광택 의원(교육위원회) ◎

≪안동 원도심과 신도청을 잇는 교통인프라 확충 촉구≫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동 원도심과 신도청을 잇는 교통인프라 확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는 사람에 비유하면 혈관과 같습니다. 사람의 혈관이 막히면 심각한 질병에 걸리듯이 도로도 막히면 사람과 물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도시의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현재 안동 원도심과 신도청을 잇는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안동 원도심과 신도청에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동 원도심과 신도청을 잇는 가장 중요한 도로는 국도 34호선입니다. 송야사거리 일대는 도청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량은 벌써 포화상태로 도로 확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국도 34호선 일 교통량은 2016년 1만 9,696대에서 2019년 2만 5,198대로 27.9%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오전 8시~9시 사이 교통량 평균은 2018년 3,293대에서 2019년 3,473대로 1년 사이에 5.5%나 증가하였습니다.

안동으로 도청 이전이 결정된 것이 2008년 6월입니다. 중앙선 안동역사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은 2011년에 결정되어 금년 12월 17일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도청이 이전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도청이 이전되고 역사의 위치가 바뀌면 교통 환경이 변화되고 교통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했지만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야 국도 34호선 신도청~안동 국도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 노선 승격을 건의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중장기적 계획 없이 단기적인 시야로 행정을 추진하고 문제가 발생한 후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우리가 설계하는 지역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업추진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이라도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는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동 원도심·신도청 활성화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의 소통과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면 지역의 발

전을 기대할 수 없고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어렵다고 봅니다. 경북 북부지역의 주력 산업인 바이오·생명·관광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교통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안동역 이전으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와 연결되는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도로가 확충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출퇴근, 통학, 쇼핑,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 물류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국도 34호선 신도청~안동 국도 확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둘째, 지역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 노선 승격 등 연계 도로망 확충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변해야 산다', '준비해야 이길 수 있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이제는 경북도청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시기입니다. 길이 미래입니다. 길이 열려야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20년 12월 14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김준열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공동주택 전담 부서 신설 및 조직개편 관련≫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과 신설 및 공항교통국 조직개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북에는 60만 6,430 대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숫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경상북도 내 전체 공동주택 2019년 기준 60만 6,430호를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주택팀의 주무관 1명이 홀로 전담하여 맡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 주거 패러다임은 기존 단독주택 중심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전환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러한 주거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우리 경상북도 주거문화 또한 공동주택으로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87.25%로, 2019년 기준 전국 공동주택 중 아파트 비율 80.64%보다

6% 이상 상회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상북도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의존율이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밀한 지원정책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현실은 공동주택을 전담하는 과나 팀도 없이 주무관 1명이 경상북도 내 공동주택 60만 6,430호를 나 홀로 도맡아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담당부서의 부재는 공동주택 지원정책 및 체계적인 관리의 부실을 초래하고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270만 도민에게 전가됩니다.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46.22%가 이미 20년 이상 노후화됐지만 경북도청은 대책 없이 수수방관만 일삼고 있는 것이 이러한 폐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타 시·도는 공동주택 전담부서를 선제적으로 신설하여 공동주택을 이미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58.82%에 달하는 10개 시·도가 공동주택 전담부서를 직제에 두고 있으며, 울산시의 경우 건축주택과 내 공동주택지원팀과는 별도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경상북도 또한 공동주택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 공동주택과의 조속한 신설을 통해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청신도시 1단계 조성 완료를 통해 인구 2만 명을 달성하며 소임을 다한 건설도시국 신도시조성과를 공동주택과로 개편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2만 2,000명인 김천 혁신도시의 경우 건설도시국 도시재생과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팀에서 11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신도시조성과를 공동주택과로 개편하는 것과 함께 경북도청의 부분적인 조직개편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경상북도 직제를 살펴보면 일자리경제와 관련이 없는 교통정책과가 일자리경제실 소속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교통 접근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합신공항과 울릉공항의 성패가 도로와 교통 등 광역교통망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현재 일자리경제실과 건설도시국에 산재해 있는 교통·도로 분야와 통합신공항추진단을 가칭 공항교통국으로 통합하여 개편함으로써 통합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광역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신공항과 울릉공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동주택과 신설과 공항교통국 조직개편을 이철우 도지사님께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0년 12월 18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이수경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동서 3축 고속도로 대구-성주-무주 구간 조기 개통 촉구≫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지난 7일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회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세계적인 공항전문기관 평가에 따른 국토부 결정과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로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정치적 논리로 합의를 저버리는 말도 안 되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집권 여당의 공항 정치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연결과 같은 사안이 진정한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번 신공항 뒤집기에 동원된 14개 시·도의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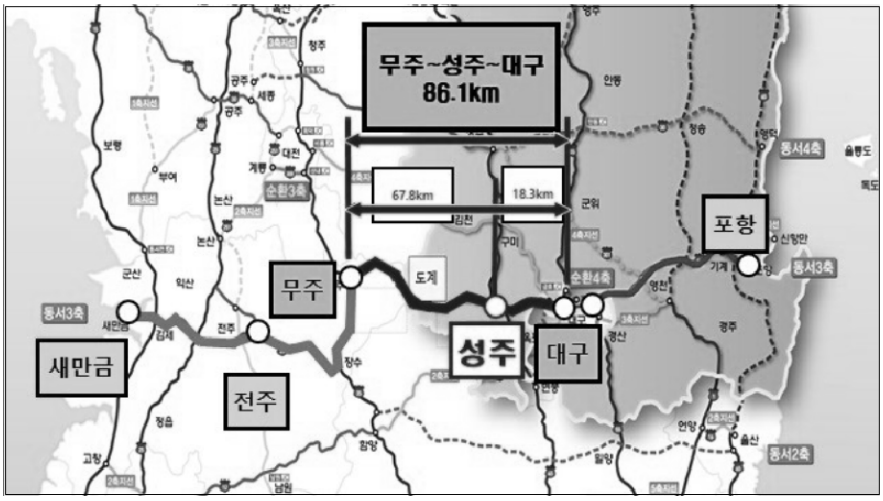

지도에서 보듯 현재 경북도와 전북도가 공동 추진 중인 동서 교통망 구축사업, 즉 동서3축 고속도로는 경북 포항에서 전북 새만금을 연결하는 총 282.8㎞ 구간이며, 총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이미 2004년 포항~대구 구간은 개통되었고, 새만금~전주 구간은 지난 2018년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대구~성주~무주를 잇는 86.1㎞ 구간으로 지난 1999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동서3축 고속도로의 완전개통은 대구~성주~무주 구간의 건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 잣대에 국한되어 상황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서3축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 즉 동서 교통망의 완전한 연결에 대한 중요한 미래 가치를 살펴야 합니다.

동서 교통망의 완전 연결은 경제적 논리를 넘어 동서화합의 상징성과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영호남 상생발전을 의미함과 동시에 교통망 구축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경제 활력이 돌아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도 공공 인프라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환동해, 환서해, 내륙지역을 아우르는 신경제벨트 형성과 양 지역 간의 제조업, 농산물 등의 물동량 증가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며, 현재의 미시적인 경제적 잣대를 넘어 이러한 거시적 큰 틀과 대명제 아래 동서3축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9일 영호남 교류 활성화와 지역화합을 위해 이철우 지사님과 전북도지사, 성주군, 무주군 등 5개 시장·군수가 동서교통망 조기 구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경북과 전북 동서 양 지역 간 교통망 연결이 절실하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성주군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며, 도의회 차원에서 전라북도의회와 상호 협력 결의문 채택을 통해 동서 교통망 연결과 양 지역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온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경북도에서도 현재 동서3축 고속도로 연결의 가장 핵심 구간인 대구~성주~무주 구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의회와 경북·전북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시·군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국토부의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길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대구~성주~무주 구간의 조속한 개통으로 동서화합의 대역사를 넘어 국가 전체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성장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0년 12월 18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박현국 의원(농수산위원회) ◎

≪부단체장 인사관련≫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봉화 출신 박현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부단체장 인사에 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어제 지역구 활동을 하다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부단체장 봉화도 바뀐다며?", "누가 온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지역구의 부단체장이 교체가 되고 하는 것을 아시는 동료의원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알아야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진짜 점잖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는지 진짜 숙맥이어서, 뽑아 가지고 도에 보내 놓았더니만 숙맥이어서 그것도 모르고 있나? 지역 주민들, 그 지역 유지들 출입깨나 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봉화군에는

문화 어디 과장이 온답니다. 나는 모르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저는 이제 재선의원입니다. 10대, 11대지요. 하면서 제가 한 번도, 우리 부단체장님이 발령 나서 오면 적어도 열흘 내지 보름 있어야 누가 왔구나. 보통 우리 시·군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의원님들이. 해서 한 보름 지나면 부임한 부단체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은 아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생소하게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안 되겠다. 적어도 내정, 그러니까 도청에서 어느 정도 시·군과, 시·군 단체장들과 협의 정도가 끝나면 한번, 지사님이 일일이 전화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이고 우리 행정부지사나 이런 분들이 귀띔이라도 해 주시면, "이렇게 보내는데 괜찮겠습니까?"가 아니고 "보내니까 잘 협의해서 시·군과 도의 업무가 원활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올 수 있겠어요, 도의원이?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경북의 3개 단체장, 울진, 군위 두 곳은 오늘 1심 재판입니다. 또 우리 봉화는 TV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해서 우리 봉화군의 부군수가 승진을 하러, 그것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도로 발령이 나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오늘 봉화군정이 그래 되기까지 부단체장이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영장실질심사도 많은 공사를 한 곳에 몰아주었다는 게 주요한 행위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지막 결재하는 자는 부단체장입니다. 많이 갈 때는 단체장한테 직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의 50%의 책임은 부단체장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을 모시는 부단체장 이하 실·국장, 과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 같이 책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까지 우리 이철우 지사님, 이 넓은 경상북도를 오가고 또 중앙부처로 다니면서도 마음껏 도정을 펼치고 있는 게, 또 "감옥소 안 갈 것 같으면 다 해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부지사들을 비롯해서 실·국장님, 우리 모든 도청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지사를 잘 보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냥 부단체장 갔다가 1년, 1년 반 있다가 기회 봐서 본청에 오면 승진하고 그러한 일이 계속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책임 있고, 부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도의원도 부단체장을 통해서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 또 자기의 의정활동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초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는 참 암울합니다. 함께 다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이러한 것을 경험삼아서 우리 경상북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 조 례 안(48건) ····· 149

□ 예 산 안(4건) ····· 385

□ 동 의 안(5건) ····· 403

□ 결 의 안(2건) ····· 475

조 례 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20. 10. 26)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20. 10. 26)

○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김준열 의원('20. 10. 26)

○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창화 의원('20. 10. 26)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 10. 26)

○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 10. 26)

○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석 의원('20. 10. 26)

○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김준열 의원('20. 10. 26)

○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현일 의원('20. 10.26)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한철 의원('20.10.26)

○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칠구 의원('20.10.26)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선희 의원('20.10.26)

○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승오 의원('20.10.26)

○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업 의원('20.10.26)

○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업 의원('20.10.26)

○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곽경호 의원('20.10. 26)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영선 의원('20.10.26)

○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도지사('20.11.20)

○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11.20)

○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20. 11. 20)

○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 11. 20)

○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김준열 의원('20. 11. 20)

○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박정현 의원('20. 11. 20)

○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박영서 의원('20. 11. 23)

○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득환 의원('20. 11. 23)

○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조주홍 의원('20. 11. 23)

○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춘우 의원('20. 11. 23)

○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득환 의원('20. 11. 23)

○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경 의원('20. 11. 23)

○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정근수 의원('20. 11. 23)

○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장경식 의원('20. 11. 23)

○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임미애 의원('20. 11. 23)

○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종열 의원('20. 11. 23)

○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정영길 의원('20. 11. 23)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길 의원('20. 11. 23)

○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박미경('20. 11. 23)

○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박현국 의원('20. 11. 23)

○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세현 의원('20. 11. 23)

○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나기보 의원('20. 11. 23)

○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조 의원('20.11.23)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채아 의원('20.11.23)

○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길 의원('20.11.23)

○ 경상북도 해녀어업문화 전승·보존에 관한 조례안
이재도 의원('20.11.23)

○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차양 의원('20.11.23)

○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재도 의원('20.11.23)

○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박용선 의원('20.11.23)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미경 의원('20.11.23)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위원장('20.12. 14)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모아초등학교모서분교장병설유치원란과 소천초등학교분천분교장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호명라온유치원란 다음에 단샘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단샘유치원	예천군 호명면 행복2길 24

별표 2 중 모아초등학교모서분교장란과 소천초등학교분천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중 기계중학교상옥분교장란을 삭제하고, 율곡중학교란 다음에 운남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운남중학교	김천시 우래1길 7

장곡중학교란 다음에 석적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석적중학교	칠곡군 석적읍 남율로18길 10

별표 4 중 의성공업고등학교 명칭란 중 “의성공업고등학교”를 “의성유니텍고등학교”로 하고, 봉양정보고등학교 명칭란 중 “봉양정보고등학교”를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다지역〉의 기계중학교상옥분교장란을 삭제하고, 〈라지역〉의 소천초등학교분천분교장란을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유치원	【별표 1】 유치원
명 칭 / 위 치 모아초등학교모서분교장병설유치원 / 경주시 강동면 모서안길 99-16 소천초등학교분천분교장병설유치원 / 봉화군 소천면 풍애길 36 〈신 설〉	명 칭 / 위 치 〈삭 제〉 〈삭 제〉 단샘유치원 / 예천군 호명면 행복2길 24
【별표 2】 초등학교	【별표 2】 초등학교
명 칭 / 위 치 모아초등학교모서분교장 / 경주시 강동면 모서안길 99-16 소천초등학교분천분교장 / 봉화군 소천면 풍애길 36	명 칭 / 위 치 〈삭 제〉 〈삭 제〉
【별표 3】 중학교	【별표 3】 중학교
명 칭 / 위 치 기계중학교상옥분교장 /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1860 〈신 설〉 〈신 설〉	명 칭 / 위 치 〈삭 제〉 운남중학교 / 김천시 우래1길 7 석적중학교 / 칠곡군 석적읍 남율로18길 10
【별표 4】 고등학교	【별표 4】 고등학교
명 칭 / 위 치 의성공업고등학교 / 의성군 의성읍 문소1길 164 봉양정보고등학교 / 의성군 봉양면 봉호로 14	명 칭 / 위 치 의성유니텍고등학교 / 의성군 의성읍 문소1길 164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 의성군 봉양면 봉호로 1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332명"을 "5,41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4,923명"을 "4,99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403명"을 "414명"으로 한다.

별표 3 총계의 합계란 중 "5,332"를 "5,417"로 하고, 일반직 계의 합계란 중 "4,904"를 "4,978"로 하며, 5급 이하 소계의 합계란 중 "4,865"를 "4,939"로 하고, 특정직 계의 합계란 중 "403"을 "414"로 하며,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의 합계란 중 "354"를 "36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332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4,923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403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 5,417명---------- ----------. 1. (현행과 같음) 2. ---------- ---------- ---------- --------- 4,997명 3. ---------- 414명

〔별표 3〕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 단위기관별	합계	경상북도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공립각급학교
총 계	5,332	-			
정무직 계	-		-		
교육감	-		-		
일반직 계	4,904	-			
3 급	-		-		
3~4급	-		-		
4 급	-	-	-	-	
5급 이하 소계	4,865	-			
전문경력관 소계	-	-			
연구직 계	-	-			
연구사	-	-			
특정직 계	403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	-	-	-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54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 단위기관별	합계	경상북도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공립각급학교
총 계	5,417	-			
정무직 계	-		-		
교육감	-		-		
일반직 계	4,978	-			
3 급	-		-		
3~4급	-		-		
4 급	-	-	-	-	
5급 이하 소계	4,939	-			
전문경력관 소계	-	-			
연구직 계	-	-			
연구사	-	-			
특정직 계	414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	-	-	-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65	-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말한다.
3. "안전교육기관"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참여) 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안전교육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도지사는 도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과 공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안전교육 진흥에 대한 지원

제7조(도민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험·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의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② (생 략) 〈신 설〉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1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 ---------- ---------- ---------- ---------- ---------- ---------- 2022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1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지역본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후생복지시설"이란 구내식당, 매점, 북다방, 건강증진센터, 휴게실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상북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경상북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생 략) 〈신 설〉 3. ~ 9. (생 략)	**제2조(정의)** ---------- ---- 뜻은 ----------. 1. ---------- 직속기관·지역본부---------- ----------. 2. (현행과 같음) 2의2. "후생복지시설"이란 구내식당, 매점, 북다방, 건강증진센터, 휴게실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 9.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 경상북도 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영 제41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제26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소요비용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견인·급수차량의 지원으로 인한 소요비용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소방활동 지원 개요	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
	소요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소요금액(청구금액) 금 원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산출근거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지 급
청구인		처리기관 (관할 소방서)		처리기관 (관할 소방서)		처리기관 (관할 소방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0. 11. 24.
제 안 자 : 건설소방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제1조 중 「소방기본법」 제27조제1항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한 세부사항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중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과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함.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수정안 본문 : 붙임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과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과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담당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4. 장애 인식개선 교육시간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5.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도·시·군의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역간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
2.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 정책개발 및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5.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2.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운영
3.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
5.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 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1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와 지역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도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

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대학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2. 지역의 경제·역사·문화·관광·교육 등에 대한 협력

3.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

4. 대학과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지식 생태계 구축

5. 지역협력 활동 지원서비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사업의 발굴·선정)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공모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내 대학과의 협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대학협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학협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협력 발굴사업 선정

3. 대학협력 사업 지원

4. 그 밖에 대학협력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대학협력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학의 교수 및 임직원
2. 산업체·연구기관의 임직원
3. 대학 및 지역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협력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 등)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자문 및 연구용역 등) 도지사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문 및 연구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및 사후관리 등) 도지사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대학과의 협력 증진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전통풍속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3. 도 전문예술법인·단체 및 문화사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도 문화시설의 정비·확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은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 수렴 등)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기관·단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통문화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 복원,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교육 활동
2. 지역 역사인물에 대한 고증, 발굴, 조사, 연구, 교육 등 선양사업
3.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경연, 출판 및 연구 활동
4. 중앙,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전통문화와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6. 전통문화·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7. 전통문화·문화예술 지역축제 개최·지원
8.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비종교적 문화활동
9. 홍보 및 기획프로그램 제작·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문화·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과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9조(문화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문화예술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시설의 설치 권장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 문화시설 이용 현황 조사
2. 도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3.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① 도지사는 도내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연·전시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미술작품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의무가 있음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작가경력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대행인경력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5. 별지 제6호서식의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③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서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정·평가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금액)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

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미술작품의 설치금액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백분의 95 × 제1항에 따른 적용비율

제14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과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적절히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도지사는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된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건축디자인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부패행위 전력이 없는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위원은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위원을 회의 때마다 선정하여 소집하며,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선정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의 실명 채점으로 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 위원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의공개)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의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및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경상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별표〕

전통문화·문화예술 진흥사업 대상 및 범위(제8조제3항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전통문화·문화예술 행사 및 사업	1. 전통문화행사(사업) : 문화제, 전통놀이, 전통풍속, 의례재현, 번역, 복원, 인성·가치관 확립 교육, 기술전수, 역사인물선양사업 등 2. 공연 : 문화예술 보호·육성 및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보장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문화예술" 공연 3. 전시 : 문화시설 또는 개방된 공간에서 행해지는 상설 및 기획전시 4. 강좌 : 충효(명륜)교실, 문화학교(교실), 아카데미, 연수(찬)회, 교육사업 등 5. 경연 : 대회(전), 공모, 道 대표 단체(개인) 선정을 위한 사업 6. 출판 : 책자, 도록, 문학집, 사전, 향토사 등 발간사업 7. 연구활동 :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심포지엄, 보고회, 연구집(자료집) 발간, 교재개발 등 8. 국제교류 : 실크로드사업, 교류협력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지역의 전통문화·문화예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사업 9. 종가(고택)문화 전승·보존을 위한 종·고택관리, 학술조사, 연구, 홍보 등 활용사업 10. 그 밖의 전통문화·문화예술행사 :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된 전통문화·문화예술행사 외에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개최 및 지원
문화예술 단 체	1. 지역 연고 문화예술인 2. 문화예술 역량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조직 및 활동하는 단체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단체	지원 및 육성

구 분	내 용	비 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1. 공연시설 : 문화예술회관, 등록공연장, 야외무대, 영화관 등 2.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경북, 기념관, 기념공원 등 3. 도서시설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4. 지역문화복지시설 : 문학(음악)관, 수련원 등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연, 강연, 강좌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 5. 그 밖의 문화시설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문화시설 외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건립·운영 지원
전통문화·문화예술 지역축제	1. 지역 문화단체 또는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전통문화 계승,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도민화합을 위하여 정례화하여 개최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축제 2. 그 밖의 축제 : 제1호에 규정된 축제 외에 도 문화융성을 위하여 개최 또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축제	개최 및 지원
비종교적 문화활동	지역의 종교단체가 종교기념일 등에 지역주민 정서함양 교육, 강연, 예술활동,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포교목적이 아닌 활동	지원
홍보 및 기획 프로그램	1. 홍보 :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문화예술 자원과 활동을 지면, 방송,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 2. 기획프로그램 : 지역의 전통문화·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재, 방송 하는 기획 사업	제작 및 지원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	착공신고일	설계변경허가일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
  ※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을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 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2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5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2부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 건축개요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 미술작품개요
  (6)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 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 작품설명판(표석)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 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 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를 표기할 것(단, 동일작가의 작품 변경시는 변경 전·후의 작품사진과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여 전·후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 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 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경상북도에서 별도요청 시)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	→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	미술작품 감정·평가	→	감정·평가결과 통보	→	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		담당부서 → 심의위원회 회부		감정·평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		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		담당부서

210㎜×297㎜[미색모조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작 가 경 력 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인적사항	성 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작가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일반사항	사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대행책임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행책임자 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위 치	
건축주	

건축물 총연면적 (ⓐ)		계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	㎡	㎡
제외시설 면적 (ⓑ)		소계	㎡	㎡
		주차장		
		기계실		
		변전실		
		공조실		
		전기실		
		발전실		
		기타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			㎡	㎡

미술작품 설치비용		①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② 표준건축비	③ 적용요율	계(①×②×③)
	공동주택	㎡	원	0.1%	원
	공동주택 외	㎡	원	0.5%	원
합 계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	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1. 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2.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	작품명
	크기 / 재질

사용금액 내역	구분		가격	비율	세부사항	
	창작비	작가창작비(Artist Fee)	천원	%		
		모형 및 원형제작비	천원	%	모형제작비	천원
					원형제작비	천원
	제작비	재료비	천원	%		
		인건비	천원	%		
	설치비	작품 운반비	천원	%		
		현장 설치비	천원	%		
		기초 및 부대공사비	천원	%		
	대행수수료		천원	%		
	행정비용		천원	%	심의도서제작비	천원
					모형제작비	천원
					기타	천원
	기타		천원	%	보험료	천원
					조명	천원
					분수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 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table>
<tr><td>신청번호</td><td colspan="2"></td><td colspan="2">신청일자</td></tr>
<tr><td>작 가 명</td><td colspan="2"></td><td>연 락 처</td><td></td></tr>
<tr><td rowspan="2">미술작품</td><td>작품명</td><td></td><td>설치장소</td><td></td></tr>
<tr><td>크 기</td><td></td><td>재 질</td><td></td></tr>
<tr><td>작품이미지</td><td colspan="4"></td></tr>
<tr><td>유지·보전
계획 내용</td><td colspan="4">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전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td></tr>
</table>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미술작품 관리대장

관리번호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건축물	위치		건축 구분 [ ]신축 [ ]증축
	규모 지하 층/지상 층	연면적 ㎡	용도
	건축허가번호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원
	심의일자		설치일자

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

연번	작가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품명	분류	규격	재료	설치위치	작품가액

변동 사항

일자	작품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조치 사항	비고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

심의번호	심의일자

평가기준 및 배점 ＼ 작품명			
가격	(20)	-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	(30)	-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20)	-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	(20)	-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유지·보존	(10)	-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점수계	100		
판 정	가결	70점 이상일 경우	
	부결	70점 미만일 경우	
비 고	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

심의위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2급) 64g/㎡]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1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 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6.·7. (생 략) ② (생 략)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 ①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6.·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경상북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경상북도등록문화재"로 한다.

제2장의2(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도등록문화재

제29조의2(도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법 제74조제3항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등록문화재(이하 "도등록문화재"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경상북도나 시·군이 소유한 문화재를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제29조의3에 따른 신청에 따라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제30조에 따른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도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30조에 따른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30조에 따른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29조의3(도등록문화재의 등록 신청) ①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해당 문화재를 도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도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대상 문화재의 사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대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재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4(등록 사항 등)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및 법 제74조제3항·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도등록문화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도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변경사항 및 법제74조제3항·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의5(기술 지도) ① 법 제74조제3항 및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복원, 이를 위한 실측·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②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법 제74조제3항 및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기술 지도 요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6(도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법 제74조제3항 및 제55조에 따라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7(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74조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가. 교량·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나. 터널·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제29조의8(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74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도등록문화재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도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9조의9(도등록문화재의 말소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부터 제출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도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30조에

따른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의10(준용 규정) ① 도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재"는 "도등록문화재"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② 도등록문화재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도등록문화재"로 본다.

제30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

제31조제3항 본문 중 "세 차례"를 "두 차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의 연임에 관한 특례) 제31조 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경상북도 등록문화재----------.
〈신 설〉	제2장의2 도등록문화재
〈신 설〉	제29조의2(도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법 제74조제3항·제53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등록문화재(이하 "도등록문화재"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현 행	개 정 안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경상북도나 시·군이 소유한 문화재를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제29조의3에 따른 신청에 따라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제30조에 따른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도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30조에 따른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30조에 따른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3(도등록문화재의 등록 신청)** ①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해당 문화재를 도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도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대상 문화재의 사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현 행	개 정 안
	3. 대상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서 4. 대상 문화재의 변형 및 수리 이력 (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4(등록 사항 등)**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및 법 제74조제3항·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도등록문화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도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변경사항 및 법 제74조제3항·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5(기술 지도)** ① 법 제74조제3항 및 제54조제3항에서 "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지도"란 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복원, 이를 위한 실측·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법 제74조제3항 및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기술 지도 요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6(도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법 제74조제3항·제55조에 따라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7(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74조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가. 교량·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나. 터널·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신 설〉	**제29조의8(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74조제3항·제5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도등록문화재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도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9(도등록문화재의 말소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부터 제출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도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30조에 따른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10(준용 규정) ① 도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재"는 "도등록문화재"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② 도등록문화재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도등록문화재"로 본다.
제30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생 략)	제30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3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세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두 차례----------. ----------.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 시행령”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 제9조에 따른 자동차
2.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동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료제출·검사 등)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과 미세먼지등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검사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영업용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⑤ (생 략)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① ----------. 〈단서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 제9조에 따른 자동차 2. 「지방세법」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동차 ③ ~ ⑤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과 장애인선수가 행하는 운동경기인 전문체육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7. “운동경기부”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8. “체육단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를 말한다.
9.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학교체육·노인체육활동(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도지사는 도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경상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3. 도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 체육업무 담당 국장, 경상북도교육청 체육업무 담당 국장, 경상북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사무처장,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사무처장

2. 위촉직 위원 : 경상북도의회 의원, 체육 관련 기관 및 경북 체육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체육진흥 및 지원

제12조(전문체육 진흥) ① 도지사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활체육 진흥) ① 도지사는 도민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4.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6.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7.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8.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장애인체육 진흥)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체육회 등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육성·지원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발굴·양성
7.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장애인 운동경기부 운영
8.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9.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1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11.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노인체육 진흥) ① 도지사는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3.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체육 진흥) 도지사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스포츠복지 진흥) ① 도지사는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2. 스포츠복지 관련 국내외 교류
3.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컨설팅사업
6.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비 보조) 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제19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제1항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제20조(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체육인 발굴·육성 등 도 체육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부단장·간사 각 1명과 경기인(종목별 감독, 코치,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③ 경기부의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간사는 체육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 보좌

3. 간사 : 경기부의 종목 발굴·육성 등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④ 경기부는 각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기인을 둘 수 있고, 종목 및 선수인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단장에게 선수관리 상황의 보고 등

2. 코치 : 감독 보좌, 선수의 체력관리와 경기지도 및 감독 부재시 감독대행

3. 선수 :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참가

제2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기부의 운영을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등의 관리와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기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기부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경기부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선수 등의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제24조(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상담의 실시) ① 도지사는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한 교육·상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5조(사전협의)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개정시,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포상) 도지사는 도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개인, 체육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보고·검사) ① 도지사는 법 제44조에 따라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2.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
3.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경상북도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장 및 학교장의 임무) 경상북도 내의 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여 각 학교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제5조(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시행 계획
2.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적 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 지원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의)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경상북도,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제7조(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문화예술교육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교육청 소관업무 담당과장
3.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 및 학계 전문가
4. 문화예술교육기관,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시설 및 단체 종사자
5. 학부모 중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 교육청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

제10조(진흥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이하 "진흥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 학교에 진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은 설치 기관의 장이 되며, 구성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업무) 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업무 추진
2.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3.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상호 협력체계 위한 연계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장 학교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 및 진흥

제12조(기반 및 환경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과 연계·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진흥 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지속적 문화예술교육 실시
2.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3.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국내·외 교원연수
5.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사·학생·문화예술인 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지역적·국제적인 문화예술교육 교류행사
3.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제14조(경비 지원)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에 사업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비를 지원받은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각각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

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3. 그 밖의 수입금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회계의 전출

4.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며, 통합기금의 보유자산을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 예산 담당 부서의 장
3.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예수금 및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이하 "융자금"이라 한다)한 융자금의 이자율,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유사 중복기금의 통·폐합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기금과 관련한 주요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종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그 밖에 기금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3항제1호에서 정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통합기금에의 예탁 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개별 기금 관련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예탁금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8조에 따른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매년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통합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율) ①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매년 예탁금의 이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결손의 보전) 통합기금의 운용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년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조성된 경상북도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관리기금에서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상환한다.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설치하는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조정실장
2.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3. 기금출납원 : 해당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지시할 수 있다.

④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②「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20조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를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③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경상북도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⑦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0. 12. 14.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2020년 11월 30일 기획경제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의 거쳐 2020년 12월 17일 공포될 예정이고,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련 조례와 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해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안 부칙 제2조제3항 및 제1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6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수정안 본문 : 붙임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제3항 및 제1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6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 제〉
제5조제3항 중 "『경상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④ (생 략)	③ (개정안 제4항과 같음)
⑤「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
제5조제4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4호 ----------.
⑥ (생 략)	⑤ (개정안 제6항과 같음)
⑦「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경상북도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⑧ ~ ⑫ (생 략) ⑬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7조제2항 ---------- ---------- ---------- ---------- ---------- ----------. ---------- ---------- ---------- ---------- ----------. ⑦ ~ ⑪ (개정안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삭 제〉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1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그 밖에 수탁기관이 약정서 위반 및 도의 행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를 "그 밖에 수탁기관이 약정서를 위반했을 때"로 한다.

제20조제10호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경상북도육아종합

지원센터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구성 및 자격, 직무) ①·② (생 략) ③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및 자격,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 5년-------- ----------.
제13조(운영의 위탁) ①·② (생 략)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이 만료된 때에는 보육에 관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5년-------- ---------- ---------- ----------.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수탁기관이 약정서 위반 및 도의 행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② (생 략)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약정서를 위반했을 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입소우선순위)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시행령이 정하는 어린이집의 입소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 9 . (생 략) 10. 그 밖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자의 자녀	**제20조(입소우선순위)**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상북도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3. "소방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인적·물적 손실(이하 "손실"이라 한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

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 소속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 및 기록유지)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도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본부장 등으로 하여금 사실조사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도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6조(소송비용 등의 지원)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소방·재난

현장 활동 중 발생된 손실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법률상담, 변호인 선임 비용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지 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요건과 절차의 흠결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8조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 여부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와 손실보상 지급 여부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심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 금액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및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손실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심의	→	결정 내용 통지
청구인		처리기관 (관할 소방서)		처리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처리기관 (소방본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제4조(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2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 및 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
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 방안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지체 없이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5. 방문간호서비스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
7.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고독사위험자의 권리보호)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실수요 검증)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7조(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예산 절감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규모어항"이란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이외에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소규모 항포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여건의 개선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내용) ①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규모어항 개발
2. 소규모어항 시설의 보수 및 보강

3. 소규모어항의 현황과 실태조사

4. 소규모어항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이 되는 소규모어항의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0년 12월 14일
제 안 자 : 농수산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목적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를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로 수정함.

3. 수 정 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수정안 본문 : 붙임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를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	예산 절감의 효과를 명시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부품"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을 말한다.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말한다.
4.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을 말한다.
5.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조성, 기업경쟁력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발전 전망
3.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수급 동향
4.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부품·장비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재·부품·

장비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기술창업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4.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5.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6. 국내·외 세미나·전시회·박람회 등의 개최·유치·참여
7.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9.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육성
10. 소재·부품·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① 도지사는 기업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입지지원 등)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입지

공급, 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상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경상북도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5.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경상북도 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실, 농축산유통국, 건설도시국, 해양수산국의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물류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 또는 시민대표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1조에 따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격요건 및 선발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생 략) 〈신 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격요건 및 선발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5조(지원 사업) ---------- ---------- ---------- --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액비 생산 및 에너지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 등 연관 산업 육성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말한다.
3.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퇴·액비화조직체"란 퇴비·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숙도 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초지·농경지등에 퇴비·

액비를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 퇴비·액비 유통센터를 말한다.

5. "에너지화조직체"란 축분을 활용하여 고체, 액체, 기체 형태 바이오연료 및 원료물질을 생산, 가공, 유통하여 소비처에 납품하거나 바이오연료를 자체 생산 및 활용하는 단체, 법인 등을 말한다.

6.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장·군수, 축산농가, 자원순환조직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퇴·액비화조직체 및 에너지화조직체 등의 자원순환조직체는 고품질의 퇴액비 및 바이오연료 생산과 활용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
3. 연도별·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과 보관·수집·운반 및 가공 처리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및 소요 재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자원순환조직체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퇴·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 연료를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퇴비는「비료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 공정규격으로 생산할 것

2. 액비는「비료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으로 생산할 것 (다만, 질소 전량의 최소 함유량은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3.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할 때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2에 따라 고시한 공정규격으로 생산할 것

③ 자원순환조직체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자원화시설 출입구에「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의 소독설비 및 실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지도 점검하고 기준 미달 고체연료나 원료물질에 대해서는 퇴비로 전환 활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비료화, 에너지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의 개발·보급 등)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 보급하거나 연구하는 사람
2.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 농장 및 자원화조직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퇴·액비 및 바이오 연료 생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실적이 우수한 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생산, 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실적이 우수한 농가, 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바이오에너지의 생산과 가공, 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9조(경영안정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고품질의 퇴·액비 및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원순환조직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자원화 조직체 등의 경영 컨설팅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적 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순환 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퇴·액비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 자원순환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축산농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

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의료인력 DB구축을 통한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
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 통계 관리 및 모니터링
6.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도의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
8. 도민 교육 프로그램, 연구조사 등을 통한 도민 참여 기반 구축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단의 구성 및 인력) ① 지원단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연구원 등 전문인력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단의 위탁 운영 등)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단 운영의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요청 등) 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단장은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의 분리)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

하고 이를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고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4조(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과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
2. "김치재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김치재료를 말한다.
3.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4.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사업자를 말한다.
5. "제조기술등"이란 김치의 품질향상·포장·저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여건 조성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김치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치산업의 목표와 방향
2.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통계조사)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과 김치산업 발전을 위하여 김치(수입김치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북김치의 정체성·차별성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북김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김치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김치유통센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기능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 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무농약 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김치재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도내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품질 등급화 및 안정화)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생산 및 품질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김치 맛 표준지표 개발 및 등급화
2. 김치 우수종균 보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반시설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김치재료가공시설의 신·증설
2. 김치가공시설의 신·증설

3. 저온저장시설 확충

4.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지원

5. 기반시설장비 임차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전통김치 복원 및 기술개발 지원) 도지사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전문연구기관,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김치재료 공급과 소비촉진) 도지사는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글로벌 인증 기준에 맞춘 생산시스템 개선

2. 수출용 기능성 김치 연구개발

3. 소비 트랜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

4. 김치의 우수성을 강조한 마케팅

5. 수출 컨설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품평회 등)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매년 김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에서 선정된 우수한 김치에 대하여 산업화 및 브랜드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김치사업자 브랜드 제고) ① 도지사는 김치사업자의 김치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우수농산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우수농산물로 지정된 김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포장재, 입간판 지원
2. 창업보육 및 경영 등 지원
3. 제조기술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우선구매 권장)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도내 공공기관이 경상북도우수농산물로 지정된 김치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김치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사업
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 취득
3.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설치·운영
4. 김치 제조기술과 식문화 보급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김치의 날 관련 행사

6. 그 밖에 김치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원산지표시 지원) 도지사는 김치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김치재료 원산지 표시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학교, 김치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경상북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신뢰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농산물의 생산·유통 정보(이하 “농산물 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기반 구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의 수집·관리체계의 구축과 이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품목·시기별 농산물 정보 조사 사업
2. 농산물 정보의 기반 구축 및 체계 지원 사업
3. 농산물 정보 수집과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4. 농산물 정보를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협조 등) ①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 기반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례 발굴)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기반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사례가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품목별수출협의회”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농어촌 투·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

3. 제4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기금운용수익금

③ 도지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금은 농어촌진흥계정과 농산물수출진흥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도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기금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② 도지사는 기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수탁기관에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기금관리 수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위탁사무 취급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 취급수수료는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및 대상사업) ① 기금의 계정별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진흥계정

   가.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융자사업

   나. 이 호 가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보조사업 지원

   다.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지출

2. 농산물수출진흥계정

   가. 농산물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나. 이 호 가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보조사업 지원

② 기금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진흥계정

   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나.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다.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 사업

   라.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마.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사업

   바.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

   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 사업

   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자.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차. 농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카.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

2. 농산물수출진흥계정

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나. 신규시장 개척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축산유통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농어촌진흥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농어촌진흥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2.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

3. 농수산식품경영체

4.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5. 품목별수출협의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 중 "제8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을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으로, "연체이자율"을 "연체이자율, 융자금의 상환방법"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 관리 수탁기관"을 "기금관리 수탁기관"으로, "상환기일전"을 "상환기일 전"으로, "회수 할"을 "회수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경상북도"를 각각 "도"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융자금의 배분) 시군 및 기관·단체별 융자금의 배분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감안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어촌진흥계정의 운용 시 상환불능자금의 대손에 충당하고자 해당 연도 기금운용수익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농어촌진흥계정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농산물수출진흥계정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1. ~ 11. (현행과 같음) 12. "품목별수출협의회"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농어촌 투·융자 재원 등 국고 지원금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도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농어촌 투·융자 재원 등 국고 지원금 3. 제4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기금운용수익금

현 행	개 정 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 〈신 설〉 (생 략)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농어촌진흥계정과 농산물수출진흥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6조(기금의 관리)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경상북도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기금관리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②도지사는 기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	**제6조(기금의 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도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기금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② 도지사는 기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

현 행	개 정 안
관리 수납기관에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총괄 회계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 대상 업무와 수수료율 및 지급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기금은 기금관리 수납기관에 예치하며, 기금의 융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 (이하 "기금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관리 수탁기관에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기금관리 수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위탁사무 취급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 취급수수료는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한다.
제7조 (기금계정의 설치) 기금관리 수탁기관은 운용·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 (기금의 용도 및 대상사업)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및 대상사업)** ① 기금의 계정별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1.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융자사업 2. 융자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사업 지원 3.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출 ②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2.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3.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 사업 4.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5.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사업 6.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 7.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 조직화 지원 사업 8.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9.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1. 농어촌진흥계정 가.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융자사업 나. 이 호 가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보조사업 지원 다.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지출 2. 농산물수출진흥계정 가. 농산물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나. 이 호 가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보조사업 지원 ② 기금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진흥계정 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나.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다.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 사업 라.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현 행	개 정 안
10. 농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11.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마.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사업 바.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 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 조직화 지원 사업 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자.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차. 농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카.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 2. 농산물수출진흥계정 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나. 신규시장 개척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금운용심의회)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10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축산유통 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 사무관 ②(생 략)	**제11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농축산유통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농어촌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농어촌진흥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②(현행과 같음)
제12조 (융자대상자선정) ①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2.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	**제12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2.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 3. 농수산식품경영체 4.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 유치기업 5. 품목별수출협의회

현 행	개 정 안
3. 농수산식품경영체 4.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 기업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도지사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한도,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 연체이자율, 융자금의 상환방법 ----------.
제15조 (융자금의 회수) 기금 관리 수탁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제15조(융자금의 회수)** 기금관리 수탁기관 ----------상환기일전---------- 회수할 ------.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4. 농어업인이 경상북도 외 지역으로 전출할 때 5. 생산자단체, 농수산식품경영체 또는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이 경상북도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때 6. · 7.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 도 ---------- 5. ---------- 도 ----------
제16조 (기금의 배분)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군 및 기관·단체별 사업기금의 배분은 시·군 및 기관·단체의 기금 출연 및 기부실적을 감안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6조(융자금의 배분)** 시군 및 기관·단체별 융자금의 배분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감안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7조 (대손충당금 적립) ①기금의 운용시 상환불능기금의 대손에 충당하고자 당해 연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10퍼센트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7조(대손충당금 적립)** ① 농어촌진흥계정의 운용 시 상환불능자금의 대손에 충당하고자 해당 연도 농어촌진흥계정 운용수익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 (융자의 금지) ① (생 략)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융자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경북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등"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상북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의 법정후견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자원봉사로써 신상보호 등 각종 성년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견이 필요한 경상북도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민법」 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 교육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3.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등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도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의 부속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경상북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도지사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

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 · 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행안전 보조장치 및 정류시설 등) ① 도지사는 시장 · 군수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안전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 · 군수, 초등학교등의 장의 요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로, 교육시설 등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의 등 · 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한 등 · 하교 길 교통지도 사업
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3.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피해자를 위한 복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피해자 실태조사와 자료 정리
4. 피해자 의료·상담 지원 및 교육
5. 피해자 추모 사업
6. 일본 피해자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회
7. 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하여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6조(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①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피해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① 도지사가 법 제34조 및 영 제36조에 따라 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묘지 또는 분묘

4. 그 밖에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묘지 또는 분묘

② 제1항에 따라 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도보존묘지등의 지정 절차는 묘지 또는 분묘의 가치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① 도지사가 법 제34조 및 영 제36조에 따라 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묘지 또는 분묘 4. 그 밖에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묘지 또는 분묘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라 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도보존묘지등의 지정 절차는 묘지 또는 분묘의 가치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만15세"를 "19세"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신설한다.

6.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

획"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를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청년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의 생활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경상북도 청년통계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목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의결한다"를 "심의·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⑪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와 자료 검토 및 위임된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⑬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따른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청년의 날) 도지사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 중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를 "법 제26조에 따라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 5.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 19세---------- ----------. 〈단서 삭제〉 2. ~ 5. (현행과 같음) 6.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3. 청년의 능력개발 4.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의 생활안정 6.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7. 청년의 권리보호 8. 청년의 지역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10.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11.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 ② ---------- ---------- ----------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7조(청년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년의 고용·생활·교육·문화·여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때 성별 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한 정보를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의 생활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경상북도 청년통계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현 행	개 정 안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6. (생 략) ③ ~ ⑨ (생 략) ⑩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② ---------- 심의·조정한다. 1. 시행계획----------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⑪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와 자료 검토 및 위임된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⑬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2(청년의 날)** 도지사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도지사는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포상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 법 제26조에 따라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을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로 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사육밀도 기준 준수, 악취방지 시스템 설치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군 및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

제3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안전관리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확대 방안

제6조제1항 중 “인증”을 “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

“우수”로, “우선 할 수 있도록 노력 공급하여야 하며”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속 하에”를 “소속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을 “친환경축산업”으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
제2조(정의) (생 략) 1. ~ 7.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사육밀도 기준 준수, 악취방지시스템 설치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군 및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친환경축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마련----------.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생 략) 1. ~ 6. (생 략)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7. 안전관리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확대 방안	7. 안전관리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확대 방안
8. · 9. (생 략)	8. · 9. (현행과 같음)
제6조(소비촉진)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가공한 인증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증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친환경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할 수 있도록 노력 공급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된 인증축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소비촉진)** ① ----------우수----------. ②-------우수----------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1. ~ 4. (생 략) ③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소속으로----------.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친환경축산업 농장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인증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안전관리인증농장과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거쳐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0조(친환경축산업 농장 지정 등)** ① ---------- ---------- ---------- ---------- ---------- ----------친환경축산업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친환경축산업 농장의 지원) (생 략) 1. ~ 4. (생 략)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친환경축산업 농장의 지원)**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촌문화유산인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승 및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안의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한다.
2. "해녀문화"란 도내의 해녀들이 물질과 함께한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물질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생활양식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녀문화의 전승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
2. 해녀어장 보호 및 관리
3.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4. 청년해녀 유입 정책 및 사업 추진
5. 그 밖에 해녀 관련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녀문화전승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동해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녀문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해녀문화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6조(해녀문화사업)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녀 관련 어촌마을 행사 및 축제 개최
2. 해녀 관련 학술대회 및 연구 기록·보존 사업
3. 해녀 전통음식문화 전승 및 보전
4. 해녀 관련 이미지 및 콘텐츠 제작·배포 사업

5. 해녀증 발급 및 해녀학교교육 사업

6. 해녀 육성 및 해녀문화 사업

7. 그 밖에 해녀문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발굴과 전승·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해녀문화교육 등)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녀의 삶과 사회·문화·역사적 가치 등을 조명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전시 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국내외 해녀문화지역이나 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도지사는 해녀문화 전승 및 보전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해양레저와 해양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관광”이란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과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해양레저관광 육성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관광 정책방향
2.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육성 시책
3.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 등의 개발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 관련시설 조성
2. 해양레저관광 특화지역 조성
3. 해양레저관광 자원 조사·연구 및 산업화
4. 해양레저관광 교육·체험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 양성
5. 해양레저관광 관련 문화 확산 및 저변 확대
6. 해양레저관광 홍보 및 마케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레저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레저관광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3. 해양레저관광 관련 학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홍보위원의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제6호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홍보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위원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경상북도 연안해역에서 발생되는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해양 환경을 개선 및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3.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해양폐기물의 발생 방지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정화 등 처리를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폐기물의 유입 차단 및 수거·정화 등 처리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4. 해양폐기물 발생 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5. 해양폐기물 수거·정화 등 처리 사업 지원
6. 해양폐기물 발생예방 교육
7.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정화 등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2.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운영
3.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운영

4.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연구

5.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홍보

제7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 방문조사 등의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8조(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해양폐기물 유입 차단 등 사전 방지

3. 해양폐기물 수거·정화 등 처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폐기물 처리 및 해양 관련 대학교수

2. 하천 및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3.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방제 및 해안관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시·군 및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정화 등 처리에 관한 사무를 해양폐기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내 각급 학교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통일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위해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배려,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태도 함양
4. 평화·공존의 관점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증진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상호 이해와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4.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 인력 활용 방안
5. 그 밖에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 단체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사업비를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교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향상시키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 재생에너지 체험, 환경재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환경교육담당 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회장 및 환경교육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기존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환경교육 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환경교육 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10조(수당 지급)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교육감은 질 높은 환경교육 및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지정) ①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가치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민수당의 지급) ① 도지사는 농어민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어민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도지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 연도 이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정한다.

② 농어민수당은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 절차) ① 농어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농어민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급 중지) ①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5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0조(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평가

4.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은 도의회의 동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농축산유통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4.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단체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시·군과의 협력) 도지사는 농어민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예산분담 등은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농어민수당 지급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예 산 안 〓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교육감('20. 11. 10)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지사('20. 11. 11)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지사('20. 11. 13)

○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교육감('20. 12. 02)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4일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총괄

○ 예산

(단위 : 천원, %)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4,405,661,950	4,576,114,197	△170,452,247	△3.7

○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항 목						지 출 항 목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511,686,373	6,000,000	4,200,000	494,862,468	6,620,905	3,000	511,686,373	138,207,072	5,000,000	10,000	368,469,301

□ 예산

○ 세입(관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4,405,661,950**	**100.0**	**4,576,114,197**	**100.0**	**△170,452,247**	**△3.7**
1. 이전수입	**4,204,740,874**	**95.4**	**4,463,920,223**	**97.5**	**△259,179,349**	**△5.8**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3,814,822,033	86.6	4,085,206,436	89.3	△270,384,403	△6.6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87,946,741	8.8	377,060,287	8.2	10,886,454	2.9
다. 기타이전수입	1,972,100	0.0	1,653,500	0.0	318,600	19.3
2. 자체수입	**12,421,076**	**0.3**	**27,193,974**	**0.6**	**△14,772,898**	**△54.3**
가. 교수-학습활동수입	65,100	0.0	7,141,205	0.2	△7,076,105	△99.1
나. 행정활동수입	532,742	0.0	750,598	0.0	△217,856	△29.0
다. 자산수입	886,166	0.0	3,927,878	0.1	△3,041,712	△77.4
라. 이자수입	3,755,450	0.1	6,214,626	0.1	△2,459,176	△39.6
마. 기타수입	7,181,618	0.2	9,159,667	0.2	△1,978,049	△21.6
3. 기타	**75,000,000**	**1.7**	**85,000,000**	**1.9**	**△10,000,000**	**△11.8**
가. 전년도이월금	75,000,000	1.7	85,000,000	1.9	△10,000,000	△11.8
4. 내부거래	**113,500,000**	**2.6**	**0**	**0.0**	**113,500,000**	**순증**
가. 전입금	113,500,000	2.6	0	0.0	113,500,000	순증

○ 세출(정책사업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4,405,661,950**	**100.0**	**4,576,114,197**	**100.0**	**△170,452,247**	**△3.7**
1. 유아및초중등교육	**4,224,835,555**	**95.9**	**4,376,168,974**	**95.6**	**△151,333,419**	**△3.5**
가. 인적자원운용	2,204,439,910	50.0	1,992,960,558	43.6	211,479,352	10.6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306,805,744	7.0	339,739,884	7.4	△32,934,140	△9.7
다. 교육복지지원	340,680,979	7.7	421,978,997	9.2	△81,298,018	△19.3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49,278,736	1.1	34,108,824	0.7	15,169,912	44.5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950,956,354	21.6	1,068,866,404	23.4	△117,910,050	△11.0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72,673,832	8.5	518,514,307	11.3	△145,840,475	△28.1
2. 평생·직업교육	**14,470,871**	**0.3**	**17,040,743**	**0.4**	**△2,569,872**	**△15.1**
가. 평생교육	7,891,038	0.2	7,750,733	0.2	140,305	1.8
나. 직업교육	6,579,833	0.1	9,290,010	0.2	△2,710,177	△29.2
3. 교육일반	**133,896,046**	**3.0**	**126,836,639**	**2.8**	**7,059,407**	**5.6**
가. 교육행정일반	51,425,478	1.2	43,948,553	1.0	7,476,925	17.0
나. 기관운영관리	53,340,862	1.2	53,442,859	1.2	△101,997	△0.2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	29,129,706	0.7	29,445,227	0.6	△315,521	△1.1
4. 예비비	**32,459,478**	**0.7**	**56,067,841**	**1.2**	**△23,608,363**	**△42.1**
가. 예비비및기타	32,459,478	0.7	56,067,841	1.2	△23,608,363	△42.1

□ 기금운용계획

○ 수입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항 목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511,686,373	6,000,000	4,200,000	494,862,468	6,620,905	3,000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231,459,201	0	0	229,099,201	2,360,000	0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275,096,007	6,000,000	0	264,855,102	4,240,905	0
공무원주택 임차기금	5,131,165	0	4,200,000	908,165	20,000	3,000

○ 지출

(단위 : 천원)

기금명	지 출 항 목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합 계	511,686,373	138,207,072	5,000,000	10,000	368,469,301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231,459,201	113,500,000	0	0	117,959,201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275,096,007	24,707,072	0	10,000	250,378,935
공무원주택 임차기금	5,131,165	0	5,000,000	0	131,165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단위 : 천원)

예산서쪽	소관부서	내 용	조정내역			비 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감액조서	30건	16,913,648	4,496,170	△12,417,478	
416	교육복지과	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소급)	145,000	0	△145,000	나. 교원노조활동지원
496	학생생활과	다. 지원단협의회운영	14,200	0	△14,200	4. 민주시민교육운영지원
497	학생생활과	11) 교사학습공동체지원	30,000	0	△30,000	4. 민주시민교육운영지원
787	창의인재과	5) 녹색교실가꾸기	1,262,300	0	△1,262,300	1.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
832	재무정보과	1. 미래형컴퓨터교육실환경개선	2,067,812	0	△2,067,812	
832	재무정보과	1) 텔레비전	1,408,960	0	△1,408,960	2. 학교정보화장비보급
838	창의인재과	1) 공립학교	630,000	250,000	△380,000	다. 소프트웨어교육체험교실구축
838	창의인재과	2) 사립학교	420,000	250,000	△170,000	다. 소프트웨어교육체험교실구축
950	학생생활과	1) 녹색어머니회운영지원	15,000	0	△15,000	6. 학생생활지도
1082	중등교육과	다. 가족사랑및우리마을체험학습	1,293,520	0	△1,293,520	1. 진로교육사업
1188	교육복지과	가. 공립초등학교	3,526,740	1,763,370	△1,763,370	1. 저소득층자유수강권지원
1188	교육복지과	다. 공립중학교	1,543,080	771,540	△771,540	1. 저소득층자유수강권지원
1188	교육복지과	마. 공립고등학교	1,192,380	596,190	△596,190	1. 저소득층자유수강권지원
1188	교육복지과	바. 사립고등학교	1,330,140	665,070	△665,070	1. 저소득층자유수강권지원
1425	포항교육지원청	바) 다목적강당기계설비	19,760	0	△19,760	가. (가칭)장량유치원
1426	포항교육지원청	거) 수변전시설	51,950	0	△51,950	가. (가칭)장량유치원
1426	포항교육지원청	너) 전기간선용량증설	38,625	0	△38,625	가. (가칭)장량유치원
1426	포항교육지원청	러) 전기용량증설	14,350	0	△14,350	가. (가칭)장량유치원
1487	청도교육지원청	1) 청도중학교	59,400	0	△59,400	3. 교사도색
1504	학교지원과	10) 유성여자고등학교	150,660	0	△150,660	8. 창문개체
1507	청도교육지원청	1) 청도중학교	33,480	0	△33,480	8. 창문개체
1512	학교지원과	18) 유성여자고등학교	327,241	0	△327,241	9. 천장개체
1526	학교지원과	17) 유성여자고등학교	71,830	0	△71,830	12. 냉난방시설개선
1527	포항교육지원청	1) 대동중학교	293,850	0	△293,850	12. 냉난방시설개선
1533	포항교육지원청	가) LED조명시설	210,210	0	△210,210	2) 대동중학교
1546	학교지원과	가) 전관방송영상장비	47,000	0	△47,000	4) 오천고등학교
1571	학교지원과	15) 유성여자고등학교	295,040	0	△295,040	23. 화장실개선
1579	학교지원과	2) 오천고등학교	21,120	0	△21,120	25. 학생용사물함교체
1763	창의인재과	1) 공립학교	240,000	120,000	△120,000	2. 기술가정교과현대화지원
1763	창의인재과	2) 사립학교	160,000	80,000	△80,000	2. 기술가정교과현대화지원

명세서쪽	소관부서	내 용	조정내역			비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증액조서	1건	20,000,000	32,417,478	12,417,478	
2287	정책기획관	예비비	20,000,000	32,417,478	12,417,478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4일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세입·세출 예산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0,654,809,000	100.00%	9,635,500,000	100.00%	1,019,309,000	10.58%
일반회계	9,332,000,000	87.58%	8,445,000,000	87.64%	887,000,000	10.50%
특별회계	1,322,809,000	12.42%	1,190,500,000	12.36%	132,309,000	11.11%
기타특별회계	1,322,809,000	12.42%	1,190,500,000	12.36%	132,309,000	11.11%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639,329,000	6.00%	613,450,000	6.37%	25,879,000	4.22%
치수사업특별회계	8,702,000	0.08%	4,910,000	0.05%	3,792,000	77.2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010,000	0.11%	7,020,000	0.07%	4,990,000	71.08%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87,082,000	0.82%	93,340,000	0.97%	△6,258,000	△6.7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8,126,000	0.64%	49,290,000	0.51%	18,836,000	38.21%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5,700,000	0.05%	7,000,000	0.07%	△1,300,000	△18.57%
소방안전특별회계	501,860,000	4.71%	415,490,000	4.31%	86,370,000	20.79%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장·관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0,654,809,000	100.00 %	9,635,500,000	100.00 %	1,019,309,000	10.58%
100 지방세수입	2,425,000,000	22.76 %	2,520,000,000	26.15 %	△95,000,000	△3.77%
110 지방세	2,425,000,000	22.76 %	2,520,000,000	26.15 %	△95,000,000	△3.77%
200 세외수입	182,561,030	1.71 %	154,196,112	1.60 %	28,364,918	18.40%
210 경상적세외수입	31,321,791	0.29 %	36,292,095	0.38 %	△4,970,304	△13.70%
220 임시적세외수입	128,540,816	1.21 %	101,322,419	1.05 %	27,218,397	26.86%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698,423	0.21 %	16,581,598	0.17 %	6,116,825	36.89%
300 지방교부세	1,264,095,000	11.86 %	1,176,757,400	12.21 %	87,337,600	7.42%
310 지방교부세	1,264,095,000	11.86 %	1,176,757,400	12.21 %	87,337,600	7.42%
500 보조금	5,845,443,944	54.86 %	4,867,964,675	50.52 %	977,479,269	20.08%
510 국고보조금등	5,845,443,944	54.86 %	4,867,964,675	50.52 %	977,479,269	20.08%
600 지방채	130,000,000	1.22 %	0	0.00 %	130,000,000	순증
610 국내차입금	130,000,000	1.22 %	0	0.00 %	130,000,000	순증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7,709,026	7.58 %	916,581,813	9.51 %	△108,872,787	△11.88%
710 보전수입등	105,518,632	0.99 %	133,451,000	1.38 %	△27,932,368	△20.93%
720 내부거래	702,190,394	6.59 %	783,130,813	8.13 %	△80,940,419	△10.34%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0,654,809,000	100.00 %	9,635,500,000	100.00 %	1,019,309,000	10.58 %
010 일반공공행정	986,837,971	9.26 %	967,960,080	10.05 %	18,877,891	1.95 %
020 공공질서및안전	936,747,139	8.79 %	606,399,343	6.29 %	330,347,796	54.48 %
050 교육	96,860,694	0.91 %	107,839,953	1.12 %	△10,979,259	△10.18 %
060 문화및관광	465,444,242	4.37 %	558,933,058	5.80 %	△93,488,816	△16.73 %
070 환경	787,871,981	7.39 %	624,652,271	6.48 %	163,219,710	26.13 %
080 사회복지	3,892,786,141	36.54 %	3,679,116,582	38.18 %	213,669,559	5.81 %
090 보건	172,943,754	1.62 %	149,097,705	1.55 %	23,846,049	15.99 %
100 농림해양수산	1,302,769,500	12.23 %	1,114,987,667	11.57 %	187,781,833	16.84 %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08,824,546	2.90 %	237,678,505	2.47 %	71,146,041	29.93 %
120 교통및물류	298,760,278	2.80 %	273,286,196	2.84 %	25,474,082	9.32 %
140 국토및지역개발	657,465,814	6.17 %	584,672,278	6.07 %	72,793,536	12.45 %
150 과학기술	37,480,353	0.35 %	51,701,804	0.54 %	△14,221,451	△27.51 %
160 예비비	68,989,215	0.65 %	68,514,930	0.71 %	474,285	0.69 %
900 기타	641,027,372	6.02 %	610,659,628	6.34 %	30,367,744	4.97 %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비 고
합 계	1,115,996,307 (926,998,034)	1,115,996,307 (926,998,034)	
남북교류협력기금	603,800	603,800	
양성평등기금	3,540,991	3,540,991	
다문화가족지원기금	6,667,333	6,667,333	
청소년육성기금	3,175,298	3,175,298	
통합관리기금	188,998,273	188,998,273	
지역개발기금	576,467,525	576,467,525	
재난관리기금	44,337,606	44,337,606	
재해구호기금	17,999,803	17,999,803	
중소기업육성기금	107,230,168	107,230,168	
공무원주거안정기금	7,317,000	7,317,000	
문화진흥기금	182,075	182,075	
관광진흥기금	13,590,552	13,590,552	
체육진흥기금	253,248	253,248	
농어촌진흥기금	98,217,423	98,217,423	
농식품수출진흥기금	9,143,000	9,143,000	
환경에너지종합타운주민지원기금	5,312,585	5,312,585	
포플라장학기금	30,024	30,024	
사회복지기금	670,245	670,245	
식품진흥기금	7,475,435	7,475,435	
에너지사업육성기금	11,360,287	11,360,287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40,014	40,014	

* 합계란의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단위 : 천원)

명세서쪽	실국명	내용	조정내역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감액조서> 일반회계		35건	13,401,515	8,012,300	△5,389,215
31	대변인	유튜브및SNS콘텐츠제작운영	1,360,000	1,260,000	△100,000
48	청년정책관	도시청년지역상생고용사업(주민참여)	420,000	320,000	△100,000
70	기획조정실	경북도청신도시권역발전포럼	100,000	0	△100,000
87	기획조정실	도정혁신박람회	100,000	0	△100,000
138	일자리경제실	교통안전시설보급사업	1,227,300	1,127,300	△100,000
178	과학산업국	친환경섬유E모빌리티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300,000	150,000	△150,000
197	환동해지역본부	국립지진지구과학교육관건립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	70,000	0	△70,000
240	아이여성행복국	출산장려캠페인	300,000	200,000	△100,000
240	아이여성행복국	경상북도와함께하는결혼문화축제	100,000	0	△100,000
242	아이여성행복국	천년숲다목적웨딩가든조성	400,000	0	△400,000
242	아이여성행복국	이웃사촌시범마을발전포럼	10,000	0	△10,000
243	아이여성행복국	이웃사촌시범마을청년유치마케팅	20,000	0	△20,000
307	자치행정국	직원휴양시설회원권구입	100,000	0	△100,000
311	자치행정국	명예퇴직수당	1,500,000	1,000,000	△500,000
313	자치행정국	교육거버넌스구축및정책포럼	15,000	0	△15,000
314	자치행정국	도민대학운영	552,000	500,000	△52,000
318	자치행정국	글로벌청년새마을지도자선발및파견	500,000	300,000	△200,000
371	복지건강국	노인복지시설이동형음압장비설치지원	300,615	0	△300,615
377	복지건강국	경북초고령사회극복시책홍보	100,000	0	△100,000
389	복지건강국	장애인행복만들기국내여행	40,000	0	△40,000
390	복지건강국	중증장애인승년위안행사	30,000	0	△30,000
475	문화관광체육국	경주브랜드상설공연지원	400,000	300,000	△100,000
477	문화관광체육국	대구경북문화의힘최고보물전개최	500,000	0	△500,000
477	문화관광체육국	달리는예술트럭운영(주민참여)	200,000	170,000	△30,000
490	문화관광체육국	한복어울림한마당(주민참여)	100,000	50,000	△50,000
522	문화관광체육국	대구경북상생관광	500,000	450,000	△50,000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단위 : 천원)

명세서쪽	실국명	내용	조정내역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522	문화관광체육국	주한미군경북관광상품판매지원	100,000	0	△100,000
619	환경산림자원국	도시숲생육환경개선	45,000	0	△45,000
757	농축산유통국	외국인농촌체험관광활성화	50,000	0	△50,000
797	농축산유통국	사무실꽃생활화지원	93,600	0	△93,600
1029	해양수산국	안동호민물낚시테마파크조성사업	1,300,000	1,000,000	△300,000
1041	해양수산국	우리땅독도밟기	180,000	0	△180,000
1042	해양수산국	사이버독도홈페이지유지관리	18,000	0	△18,000
1059	해양수산국	배합사료지원	1,474,000	737,000	△737,000
1071	해양수산국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사업	896,000	448,000	△448,000

명세서쪽	실국명	내용	조정내역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증액조서> 일반회계		1건	0	5,389,215	5,389,215
	기획조정실	내부유보금	0	5,389,215	5,389,215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단위 : 천원)

명세서쪽	실국명	내용	조정내역			비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감액조서> 특별회계		3건	7,600,000	5,950,000	△1,650,000	
220	환동해지역본부	경상북도원전해체기술아카데미	50,000	0	△50,000	발전소
704	환경산림자원국	맑은누리타워위탁운영비	550,000	450,000	△100,000	발전소
705	환경산림자원국	맑은누리파크주민편익시설설치사업	7,000,000	5,500,000	△1,500,000	발전소

명세서쪽	실국명	내용	조정내역			비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증액조서> 특별회계		2건	0	1,650,000	1,650,000	
	환동해지역본부	내부유보금	-	50,000	50,000	발전소
	환경산림자원국	내부유보금	0	1,600,000	1,600,000	발전소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1월 30일

□ 세입·세출 예산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1,489,940,000	100.00%	10,960,000,000	100.00%	529,940,000	4.84%
일반회계	10,235,900,000	89.09%	9,713,300,000	88.62%	522,600,000	5.38%
특별회계	1,254,040,000	10.91%	1,246,700,000	11.38%	7,340,000	0.59%
기타특별회계	1,254,040,000	10.91%	1,246,700,000	11.38%	7,340,000	0.59%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631,955,864	5.50%	613,450,000	5.60%	18,505,864	3.02%
치수사업특별회계	7,630,542	0.07%	9,003,511	0.08%	△1,372,969	△15.2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065,635	0.11%	12,065,635	0.11%	0	0.00%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97,103,606	0.85%	97,090,251	0.89%	13,355	0.0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1,290,000	0.36%	49,290,000	0.45%	△8,000,000	△16.23%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8,582,123	0.07%	7,162,464	0.07%	1,419,659	19.82%
소방안전특별회계	455,412,230	3.96%	458,638,139	4.18%	△3,225,909	△0.70%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장·관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1,489,940,000	100.00 %	10,960,000,000	100.00 %	529,940,000	4.84%
100 지방세수입	2,425,200,000	21.11 %	2,500,000,000	22.81 %	△74,800,000	△2.99%
110 지방세	2,425,200,000	21.11 %	2,500,000,000	22.81 %	△74,800,000	△2.99%
200 세외수입	193,656,706	1.69 %	185,734,585	1.69 %	7,922,121	4.27%
210 경상적세외수입	35,830,851	0.31 %	39,056,505	0.36 %	△3,225,654	△8.26%
220 임시적세외수입	157,825,855	1.37 %	146,678,080	1.34 %	11,147,775	7.60%
300 지방교부세	1,250,665,023	10.88 %	1,286,413,599	11.74 %	△35,748,576	△2.78%
310 지방교부세	1,250,665,023	10.88 %	1,286,413,599	11.74 %	△35,748,576	△2.78%
500 보조금	6,515,009,159	56.70 %	6,029,728,855	55.02 %	485,280,304	8.05%
510 국고보조금등	6,515,009,159	56.70 %	6,029,728,855	55.02 %	485,280,304	8.05%
600 지방채	80,000,000	0.70 %	0	0.00 %	80,000,000	순증
610 국내차입금	80,000,000	0.70 %	0	0.00 %	80,000,000	순증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25,409,112	8.92 %	958,122,961	8.74 %	67,286,151	7.02%
710 보전수입등	117,397,098	1.02 %	111,682,792	1.02 %	5,714,306	5.12%
720 내부거래	908,012,014	7.90 %	846,440,169	7.72 %	61,571,845	7.27%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1,489,940,000	100.00 %	10,960,000,000	100.00 %	529,940,000	4.84 %
010 일반공공행정	1,031,951,223	8.98 %	1,013,990,417	9.25 %	17,960,806	1.77 %
020 공공질서및안전	638,835,217	5.56 %	616,912,107	5.63 %	21,923,110	3.55 %
050 교육	106,512,273	0.93 %	110,380,384	1.01 %	△3,868,111	△3.50 %
060 문화및관광	575,339,380	5.01 %	591,742,074	5.40 %	△16,402,694	△2.77 %
070 환경	651,844,492	5.67 %	650,598,926	5.94 %	1,245,566	0.19 %
080 사회복지	4,812,719,718	41.89 %	4,698,964,611	42.87 %	113,755,107	2.42 %
090 보건	201,218,314	1.75 %	185,518,463	1.69 %	15,699,851	8.46 %
100 농림해양수산	1,393,874,491	12.13 %	1,149,188,719	10.49 %	244,685,772	21.29 %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17,523,572	3.63 %	374,050,049	3.41 %	43,473,523	11.62 %
120 교통및물류	338,389,667	2.95 %	284,657,995	2.60 %	53,731,672	18.88 %
140 국토및지역개발	630,564,062	5.49 %	584,184,331	5.33 %	46,379,731	7.94 %
150 과학기술	59,543,770	0.52 %	59,101,224	0.54 %	442,546	0.75 %
160 예비비	23,970,576	0.21 %	24,080,869	0.22 %	△110,293	△0.46 %
900 기타	607,653,245	5.29 %	616,629,831	5.63 %	△8,976,586	△1.46 %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조 성 액	2020년도 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당초		변경		
		수 입	지출	수 입	지 출	
통합관리기금	134,011	10,513	42,272	**10,355**	**47,153**	97,213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	3,872	57	80	**57**	**3,929**	0
국제협력기금	1,086	16	25	**16**	**1,102**	0

○ 기금운용계획세부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기금명	변경액	기정액	증감	변경내역	
				수입	지출
통합관리 기 금	144,366	144,524	Δ158	· 예수금 **감520백만원** · 이자수입 **증362백만원**	· 예수금원리금상환 **증4,881백만원** · 예치금 **감5,039백만원**
중소기업 근 로 자 자 녀 장학기금	3,929	102	3,827	· 예치금회수 **증23백만원** · 예탁금원금회수 **증3,804백만원**	· 일반보전금 **감53백만원** · 예치금 **감2백만원** · 예탁금 **감20백만원** · 기타회계전출금 **증3,902백만원**
국제협력 기 금	1,102	26	1,077	· 예탁금원금회수 **증1,077백만원**	· 기타회계전출금 **증1,077백만원**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

□ 세입·세출 예산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증감	증감률	기정예산	구성비	합계	구성비
합 계	74,507,483	1.6	4,671,025,137	100.0	4,745,532,620	100.0
1. 이전수입	71,851,442	1.6	4,508,910,914	96.5	4,580,762,356	96.5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60,004,865	1.5	4,095,227,326	87.7	4,155,232,191	87.6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511,471	2.3	410,191,070	8.8	419,702,541	8.8
다. 기타이전수입	2,335,106	66.9	3,492,518	0.1	5,827,624	0.1
2. 자체수입	2,656,041	3.7	72,381,884	1.5	75,037,925	1.6
가. 교수-학습활동수입	Δ50,203	Δ0.7	7,057,905	0.2	7,007,702	0.1
나. 행정활동수입	Δ4,336	Δ0.5	824,005	0.0	819,669	0.0
다. 자산수입	1,588,756	9.3	17,136,630	0.4	18,725,386	0.4
라. 이자수입	Δ1,166,487	Δ18.8	6,214,736	0.1	5,048,249	0.1
마. 금융자산회수	0	0.0	100,000	0.0	100,000	0.0
바. 기타수입	2,288,311	5.6	41,048,608	0.9	43,336,919	0.9
3. 기타	0	0.0	89,732,339	1.9	89,732,339	1.9
가. 전년도이월금	0	0.0	89,732,339	1.9	89,732,339	1.9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증감	증감률	기정예산	구성비	합계	구성비
합 계	74,507,483	1.6	4,671,025,137	100.0	4,745,532,620	100.0
1. 유아및초중등교육	16,131,430	0.4	4,479,635,150	95.9	4,495,766,580	94.7
가. 인적자원운용	Δ167,513	Δ0.0	1,944,543,850	41.6	1,944,376,337	41.0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10,121,156	2.7	380,139,299	8.1	390,260,455	8.2
다. 교육복지지원	28,179,806	6.3	448,647,397	9.6	476,827,203	10.0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Δ583,461	Δ1.1	50,889,692	1.1	50,306,231	1.1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Δ3,383,321	Δ0.3	1,067,364,548	22.9	1,063,981,227	22.4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Δ18,035,237	Δ3.1	588,050,364	12.6	570,015,127	12.0
2. 평생·직업교육	Δ156,722	Δ0.9	18,019,100	0.4	17,862,378	0.4
가. 평생교육	Δ139,059	Δ1.9	7,377,590	0.2	7,238,531	0.2
나. 직업교육	Δ17,663	Δ0.2	10,641,510	0.2	10,623,847	0.2
3. 교육일반	58,532,775	33.8	173,370,887	3.7	231,903,662	4.9
가. 교육행정일반	86,964,143	202.5	42,937,593	0.9	129,901,736	2.7
나. 기관운영관리	Δ886,126	Δ2.1	42,812,743	0.9	41,926,617	0.9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	0	0.0	28,975,212	0.6	28,975,212	0.6
라. 예비비및기타	Δ27,545,242	Δ47.0	58,645,339	1.3	31,100,097	0.7

□ 기금운용 변경계획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

기금명	변경	당초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16,262,478	523,165,578	93,096,900	17.8
공무원주택임차기금	6,063,678	6,063,678	0	0.0
통폐합학교지원기금	290,099,599	290,099,599	0	0.0
교육재정안정화기금	320,099,201	227,002,301	93,096,900	41.0
전입금	91,000,000	0	91,000,000	순증
예치금회수	227,002,301	227,002,301	0	0.0
이자수입	2,096,900	0	2,096,900	순증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

기금명	변경	당초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16,262,478	523,165,578	93,096,900	17.8
공무원주택임차기금	6,063,678	6,063,678	0	0.0
통폐합학교지원기금	290,099,599	290,099,599	0	0.0
교육재정안정화기금	320,099,201	227,002,301	93,096,900	41.0
예치금	320,099,201	227,002,301	93,096,900	41.0

〓 동 의 안 〓

○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교육감('20. 10. 26)

○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20. 10. 26)

○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도지사('20. 11. 20)

○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20. 11. 20)

○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20. 11. 20)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일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학년도 중학교 배정 시부터 적용한다.

【별 지】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포항시	(1) 포항시 제1학교군	포항 포항중앙 포항영흥 포항남부 포항동부 포항항도 포항송도 신흥 청림 대해 송림 대도 인덕 효자 두호 두호남부 양학 이동 죽도 대잠 상대 항구 포항대흥 용흥 장성 창포 장량 포항장흥 포항장원 포항양덕 양서 대이 포항송곡 포항해맞이 달전 학천 초곡 죽천 유강 강동 (경주)	-왕신3리 중 사라는 경주시 중학교군 (경주)	포항중 대도중 동지중 대동중 포항영신중 장흥중 포항항도중 상도중 송도중 대흥중 양학중 창포중 포항이동중 유강중 양덕중	포항여중 환호여중 동지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회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1) 효자초는 포항시 제1학교군 및 제철중학구와 추첨에 의한 배정 2) 초곡초는 흥해중학구 회망에 의한 선배정 후 나머지 인원은 포항시 제1학교군 배정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포항시	(2) 포항시 제2학교군	청림 인덕		상도중 송도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졸업생의 희망에 의한 선배정
포항시	(3) 오천	오천 구정 문충 문덕 포항원동 장기 인덕	- 죽정리, 정천리 (기타는 장기중학구)	신흥중 포항포은중 오천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포항시	(4) 연일	연일 연일형산 대송 남성		영일중 대송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1) 연일초, 연일형산초 졸업생중 영일중은 희망에 의한 선배정 2) 대송초, 남성초 졸업생 중 대송중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청림초등학교 인덕초등학교		남·여 남·여	상도중학교 송도중학교	
연일초등학교 연일형산초등학교		남·여	영일중학교	
대송초등학교 남성초등학교		남·여	대송중학교	
초곡초등학교		남·여	홍해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경주시	(5) 경주시	계림 월성 황남 경주 동방 서라벌 황성 화랑 흥무 신라 동천 유림 용강 용황 사방 모량 내남 현곡 나원 금장 강동 천북 모아 모서분교	- 모량1리, 광명1,2동 (기타는 무산중학구) - 왕신3리 중 사라 [기타는 포항시제1학교군(포항)]	신라중 경주중 문화중 월성중 계림중 화랑중	경주여중 서라벌여중 근화여중 선덕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회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고
사방초등학교 현곡초등학교		남 여 남·여	신라중학교 서라벌여자중학교 화랑중학교	
나원초등학교 금장초등학교		남·여	화랑중학교	
강동초등학교 천북초등학교 모아초등학교 모아초모서분교장		남 여 여	신라중학교 서라벌여자중학교 근화여자중학교	
내남초등학교 월성초등학교	- 황남동 12~16통, 18통(2,3반), 월성동 7통, 내남면 용장4리	남 여	경주중학교 경주여자중학교	
용강초등학교		여	근화여자중학교	
동방초등학교 서라벌초등학교 화랑초등학교	- 보덕동 4통, 월성동 21~23통, 24통(2반)	남 여	경주중학교 선덕여자중학교	
경주초등학교 모량초등학교	- 모량1리, 광명1,2동	남 남 여	문화중학교 월성중학교 경주여자중학교	
황남초등학교	(구 황남초등학교 학구) - 황남동 : 21-24통, 26통 (3반 서편제외), 27통 - 월성동 : 2통(1반, 2반(서편), 4반), 3통, 5통, 7통(3반) - 황오동: 25통(3-4반), 27-28통 - 중부동 : 12통(2,3반)	남 여 여	경주중학교 경주여자중학교 선덕여자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군 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김천시	(6) 김천시	김천 김천중앙 김천서부 금릉 김천다수 김천모암 김천동부 김천신일 김천부곡 김천동신 개령서부 아천 봉계 태화분교 직지 대룡 감천 조마	- 대신동26통, 27통 중 모광, 다남2리 (기타는 개령중학구) - 남산3리 (기타는 어모중학구) - 추풍령중(충북)과 자유학구 - 대성리, 주례리, 상거2리는 지품천중학구와 자유학구	김천중앙중 김천중 성의중 석천중 문성중	김천여중 성의여중 한일여중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김천시	(7) 율곡	농소 운곡 율곡 아포	 - 봉천1리는 아포중학구와 자유학구 - 부상2리는 약목중학구 (칠곡) - 대신1~3리, 봉산1~3리는 아포중학구와 자유학구 - 대신1~3리, 봉산1~3리는 아포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아포중학구)	율곡중 운남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봉계초등학교		남	김천중앙중학교	희망학교(택1)
봉계초태화분교장		여	한일여자중학교	선배정
조마초등학교		남	석천중학교	
		남	문성중학교	
		여	김천여자중학교	
		여	성의여자중학교	
감천초등학교		남	성의중학교	
		여	김천여자중학교	
		여	성의여자중학교	
	(구 농남중학구)	남·여	율곡중학교	희망 시 선배정
농소초등학교	- 농소면 (신촌리, 월곡 2,3리 중 용시, 남곡, 월곡4리 제외)			
	- 남면 : 운남1리 중 1192번지 및 1200번지			
운곡초등학교	- 남면 : 운곡리, 송곡1~리, 운남1~2리, 부상1리, 월명1~2리, 옥산1~2리, 봉천1~리, 오봉1~리			
율곡초등학교	- 남면 : 초곡1리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안동시	(8) 안동시	교대부설 안동 안동서부 안동동부 안동송현 복주 안동용상 길주 안동강남 영가 안동영호 영남 송천 서선 와룡 북후 서후 대흥분교 남후 남선 임하	- 수1, 2리는 풍산중학구와 자유학구 - 망천1리 중 안마·망지네, 망천2리 중 숲당, 마리는 응부중학구와 자유학구 - 산야리, 중가구리, 서지리는 응부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응부중학구) - 도진리중 아랫마사 (기타는 북후중학구) - 광평1리는 북후중학구 - 고하리, 고상리는 일직중학구와 자유학구 - 하아리는 풍산중학구와 자유학구 - 금소1,2리, 고곡리, 오대2리 중 배일·어덕은 길안중학구와 자유학구	안동중 경안중 경덕중 길주중	안동여중 복주여중 경안여중 (남녀공학)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길주초등학교 송천초등학교 남선초등학교 임하초등학교	- 임동면: 망천1리중 안마·망지네, 망천2리중 숲당, 마리 - 임하면: 노산리, 천전1, 2리, 임하1리	남·여	길주중학교	선배정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초등학교 안동용상초등학교 길주초등학교	- 송천초등학교·남선초등학교·임하초등학교·길주초등학교·안동용상초등학교 학구내 거주자	남·여	길주중학교	위 선배정을 제외한 정원 범위내에서 추첨에 의한 배정
남후초등학교		남 여	안동중학교 복주여자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군 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구미시	(9) 구미시	구미 광평 상모 선주 금오 인동 옥계 구평 구미신평 도산 비산 송정 지산	- 문성7리, 문성8리는 현일중학구와 자유학구(단, 구미문성초 통학구역 거주자 포함)	구미중 금오중 경구중 인동중 형곡중 형남중 구미신평중 진평중 도송중 옥계중 상모중 봉곡중 선주중 천생중 오태중 광평중 옥계동부중 해마루중	구미여중 송정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신기 형곡 황상 형일 도량 형남 양포 인의 아은 오태	- 북삼중학교군(칠곡)과 자유학구 [북삼읍 인평리는 북삼중학교군(칠곡)]			
		원남 구평남부 구미사곡 도봉 진평 구미오산 천생 구미왕산 구미봉곡 정수 옥계동부 해마루 구운 원호	- 금전2동은 오상중학구와 자유학구 - 현일중학구와 자유학구 - 원호1리, 원호10리는 현일중학구와 자유학구(단, 구미문성초 통학구역 거주자 포함)			
		문장 구미문성 구미원당	- 현일중학구와 자유학구 - 산동중학구와 자유학구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선주초등학교 구미봉곡초등학교		남·여 남	봉곡중학교 경구중학교	
구운초등학교		남	구미중학교	
원호초등학교	- 고아읍 원호1,2리 (원호3~7리인 택지개발 지구는 제외)	남	구미중학교	
지산초등학교	- 고아읍 문성리, 괴평리, 송림리	남	구미중학교	
구미초등학교	- 선기동(대성지 아랫마을, 21통 제외) - 수점동(대성지 안쪽마을) -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남	구미중학교	
원남초등학교	- 선기동 21통	남	구미중학교	
상모초등학교 오태초등학교 구미오산초등학교 구미왕산초등학교	- 임오동	남	금오중학교	
신기초등학교	- 양호동	남·여	구미신평중학교	
인동초등학교 구평초등학교 황상초등학교 인의초등학교 구평남부초등학교 진평초등학교 천생초등학교		남·여 남·여 남·여	인동중학교 진평중학교 천생중학교	추첨배정
옥계초등학교 양포초등학교 옥계동부초등학교 해마루초등학교 구미원당초등학교	- 금전2동은 오상중학구와 자유학구	남·여 남·여 남·여	옥계중학교 옥계동부중학교 해마루중학교	추첨배정
금오초등학교	- 남통동 남통마을 (금오산 식당 주변)	여	구미여자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군 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주시	(10) 영주시	영주 영주동부 영주중앙 영주남부 영주서부 영일 남산 영주가흥 이산 평은 문수 장수 안정 옥대 감천(예천) 도촌(봉화) 봉화(봉화) 물야(봉화)	- 두월리는 청량중학구(봉화)와 자유학구 - 강동1리 중 왕류는 북후중학구(안동) - 천본1리 중 윗두들은 청량중학구(봉화) - 옹암리, 단촌2리는 풍기중학교군 - 동원리, 사천1리 - 사천2리는 소수중학구 (기타는 단산중학구) - 기곡2리 중 한밤실은 감천중학구(예천)와 자유학구 〔기타는 감천중학구(예천)〕 - 문단1, 2리, 화천리, 도촌리는 봉화중학구(봉화)와 자유학구 〔기타는 봉화중학구(봉화)〕 - 물야면 수식리는 봉화중학구(봉화)와 자유학구 〔기타는 봉화중학구(봉화)〕 - 물야면 수식리는 봉화중학구(봉화)와 자유학구 〔기타는 물야중학구(봉화)〕	영주중 영광중 대영중	영주여중 영광여중 동산여중	
영주시	(11) 풍기	풍기 풍기북부 안정 봉현	 - 옹암리, 단촌2리 (기타는 영주시중학교군)	풍기중 금계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천시	(12) 영천시	영천	- 호남리, 대곡리는 금호중학구와 자유학구 - 송포리는 영안중학구와 자유학구	영천중 영동중	영천여중 성남여중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영천중앙 화남분교	- 매산1동 (기타는 산동중학구와 자유학구)			
		영천동부 영화 포은				
		단포	- 상리리, 학리는 별빛중학구와 자유학구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영천중앙초등학교 영천중앙초화남분교장 영화초등학교	(구 영북초등학교 학구) - 녹전동 : 24, 25, 26통 - 도림동 : 27, 28통 - 매산동 : 30통 - 오미동 : 22통, 23통 (2,3반) - 대전동 : 19통 (구 호당초등학교 학구) - 서산동 : 21통 - 청통면 : 호당1,2리, 우천2리 - 화산면 : 삼부리(삼거리), 대기리(대동리)	여	영천여자중학교	
영천초등학교	(구 영도초등학교 학구) - 본촌동 : 1통 - 채신동 : 2통 - 괴연동 : 3통 - 북안면 : 유상1,2리 (구 영천남부초등학교 학구) - 범어동 : 9통 - 작산동 : 10, 11통 - 봉동 : 12통 - 북안면 : 송포1,2리, 유하리	여	성남여자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상주시	(13) 상주시	상주	- 신촌1, 2리, 고곡1, 2리 (둔더기 제외), - 북장리는 내서중학구와 자유학구	상주중 남산중	상주여중 성신여중	회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상산				
		상주중앙				
		상영				
		상주동부				
		상주남부				
		성동				
		중동	- 회상2리 중 갈밭은 풍양중학구(예천)와 낙동중학구의 자유학구			
		사벌				
		낙동	- 신상1, 2리, 분황리 중 구촌 (기타는 낙운중학구)			
		외남	- 지사리, 소은리 (기타는 청리중학구)			
		외서	- 우산1, 2리, 이촌리, 대전1리, 서만2리, 하흘2리는 은척중학구 - 대전2리, 예의1리는 화령중학구			
		공검	- 함창중학구와 자유학구			
		백원	- 연봉1, 2리는 함창중학구와 자유학구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사벌초등학교		남	상주중학교	
중동초등학교		남	남산중학교	
		여	상주여자중학교	
		여	성신여자중학교	
공검초등학교		남	상주중학교	
백원초등학교	- 연봉1, 2리 (기타는 상주시 중학교군)	여	성신여자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군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문경시	(14) 문경시	호서남 점촌북 점촌 신기 점촌중앙 모전 산양 호계 농암 청화분교 영순	- 평지2리 - 위만1리, 우본리 중 감실은 용궁중학구(예천) (기타는 산양중학구) - 지동리, 선곡리는 은척중학구(상주) (기타는 가은중학구와 자유학구) - 내서3리는 화령중학구(상주) (기타는 가은중학구와 자유학구) - 왕태1리는 용궁중학구(예천)	문경중 점촌중		
경산시	(15) 경산시	경산 경산중앙 임당 경산동부 남성 장산 경산서부 정평 사동 성암 옥곡 평산 삼성현 현흥 남산 남천	- 강서리, 백안리, 당리리는 자인중학구와 자유학구 - 금구리, 용암리, 현흥1리, 신촌리(기타는 진량중학교군) - 전지리, 반곡리, 상대리, 하대리, 인흥리는 자인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자인중학구)	경산중 장산중 사동중 삼성현중 문명중	경산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회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는 (별지)와 같다.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경산시	(16) 진량	진량 진성 다문 부림 봉황 현홍 하양초 화성분교	- 평(坪)사리 및 평(平)사1, 2리는 하양중학구와 자유학구 - 마곡리, 현내리는 자인중학구와 자유학구 - 보인2리, 북1, 2리, 부기1, 2리, 양기리, 문천2리, 상림리, 내리리는 하양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하양중학구) - 금구리, 용암리, 현홍1리, 신촌리는 경산시중학교군 - 하양중학구와 자유학구	진량중 신상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남성초등학교		남	경산중	
현흥초등학교	- 금구리, 용암리,	여	경산여중	
	현흥1리, 신촌리	남·여	장산중	
남산초등학교	- 전지리, 반곡리, 상대리,	남·여	사동중	
	하대리, 인흥리	남·여	삼성현중	
		남·여	문명중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의성군	(17) 안계	안계 이두	- 안사1, 2리, 중하1, 2, 3리, 만리1, 2리, 신수1, 2리, 월소1, 2, 3리, 쌍호1, 2리는 경북중부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경북중부중학구)	안계중 삼성중	(남녀공학)	남학생 (여학생은 안계중)
청도군	(18) 청도	청도 유천 청도중앙 화양 남성현	 - 유등1, 3리, 서상2리는 이서중학구와 자유학구 - 유등2리는 이서중학구	모계중 청도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칠곡군	(19) 왜관	왜관 왜관중앙 왜관동부 낙산 매원 신동 관호 약동 도원 (성주)	 - 금남리 중 바우는 달서중(대구) - 삼청2리 - 연호2리는 칠곡중(대구) (기타는 신동중학구) - 관호2, 3, 4, 5리 (기타는 약목중학구) - 선남면 용신1, 2, 3리는 명인중학구(성주)와 자유학구 (기타는 명인중학구)	왜관중 석전중 순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순심여중	
칠곡군	(20) 북삼	북삼 숭산 인평 오태	 - 약목중학구와 자유학구 - 인평리 (기타는 구미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북삼중 인평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시군명	중학교군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예천군	(21) 예천	예천 예천동부 예천남부	- 황산리, 입암리는 용궁중학구와 자유학구	예천중 대창중		
		호명	- 풍천중학구(안동)와 자유학구			
		풍천풍서(안동)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내 A-1, B-5, B-6-1/2, B-7, B-8-1/2, D-3, D-4, D-5, D-6은 풍천중학구(안동)와 자유학구			
		유천	- 노사2리는 용문중학구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포항시	(1) 구룡포	구룡포		구룡포중	(남녀공학)	
포항시	(2) 대보	대보	- 발산2리, 대동배1리는 동해중학구와 자유학구	대보중	(남녀공학)	
포항시	(3) 신광	신광		신광중	(남녀공학)	
포항시	(4) 송라	송라	- 지경1, 3리는 남정중학구(영덕)	송라중	(남녀공학)	
포항시	(5) 기계	기계 죽장초 상옥분교	- 기계중기북분교중학구와 자유학구	기계중	(남녀공학)	
포항시	(6) 기계중 기북분교	기북 죽장초 상옥분교	- 기계중학구와 자유학구	기계중 기북분교	(남녀공학)	
포항시	(7) 제철	제철 제철지곡 효자		포항제철중	(남녀공학)	효자초는 포항시제1 학교군 및 제철중학구와 추첨에 의한 배정
포항시	(8) 청하	청하 월포		청하중	(남녀공학)	
포항시	(9) 동해	동해 대보	- 대동배1리, 발산2리는 대보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대보중학구)	포항동해중	(남녀공학)	
포항시	(10) 장기	장기 모포분교 양포	- 죽정리, 정천리는 오천중학교군	장기중	(남녀공학)	
포항시	(11) 죽장	죽장	- 상사리, 하사리는 현동중학구(청송)와 자유학구	서포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포항시	(12) 흥해	흥해 흥해남산 흥해서부 곡강 초곡		흥해중	(남녀공학)	초곡초는 흥해중학구 희망에 의한 선배정 후 나머지 인원은 포항시제1 학교군 배정
경주시	(13) 불국	불국사 영지 괘릉		불국중	(남녀공학)	
경주시	(14) 안강	안강제일 안강 옥산 산대 양동		안강중	안강여중	
경주시	(15) 외동	입실 연안 모화 석계 양남	- 효동리 - 죽전리 중 남전은 양북중학구 (기타는 양남중학구)	외동중	(남녀공학)	
경주시	(16) 산내	의곡 일부분교	- 우라리는 아화중학구	산내중	(남녀공학)	
경주시	(17) 양남	양남 나산 양북	- 죽전리 중 남전은 양북중학구 - 효동리는 외동중학구 - 봉길리 중 하봉 (기타는 양북중학구)	양남중	(남녀공학)	
경주시	(18) 아화	아화 의곡	- 우라리 (기타는 산내중학구)	아화중	(남녀공학)	
경주시	(19) 감포	감포	- 팔조리는 양북중학구	감포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경주시	(20) 양북	양북 감포 양남	- 봉길리 중 하봉은 양남중학구 - 팔조리 (기타는 감포중학구) - 죽전리 중 남전 - 효동리는 외동중학구 (기타는 양남중학구)	양북중	(남녀공학)	
경주시	(21) 무산	건천 천포 모량	- 모량1리, 광명1, 2동은 경주시중학교군	무산중	(남녀공학)	
김천시	(22) 아포	아포 운곡 율곡 고아(구미)	- 대신1~3리, 봉산1~3리는 율곡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봉천1리는 율곡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율곡중학교군) - 대신1~3리, 봉산1~3리는 율곡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율곡중학교군) - 황산리, 외예리, 내예리는 현일중학구(구미)와 자유학구 - 황산리중 물목은 선산중학구 (구미)와 현일중학구(구미)의 자유학구 〔기타는 현일중학구(구미)〕	아포중	(남녀공학)	
김천시	(23) 개령	개령 개령서부	- 대신동26통, 27통 중 모광, 다남2리는 김천시중학교군	개령중	(남녀공학)	
김천시	(24) 감문	위량		감문중	(남녀공학)	
김천시	(25) 어모	아천 능치분교	- 남산3리는 김천시중학교군 - 공성면 영오리는 용운중학구 (상주)	어모중	(남녀공학)	
김천시	(26) 지품천	지례 부항분교 구성 대덕 증산 직지	- 대성리, 주례리, 상거2리는 김천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김천시중학교군)	지품천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안동시	(27) 북후	북후 서후 녹전 평은(영주)	- 도진리 중 아랫마사는 안동시중학교군 - 광평1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 서삼리 중 새마·상이전·하이전, 사산리 중 어석·태봉· 안지는 응부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응부중학구) - 강동1리 중 왕류 - 천본1리 중 윗두들은 청량중학구 (봉화) 〔기타는 영주시중학교군(영주)〕	북후중	(남녀공학)	
안동시	(28) 길안	길안 길송분교 임하	- 황목리, 병부리는 청송중학구(청송) - 송사1리 〔기타는 현서중학구(청송)〕 - 금소1, 2리, 고곡리, 오대2리 중 배일·어덕은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길안중	(남녀공학)	
안동시	(29) 풍천	풍천풍서 신성 호명(예천)	단,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내 A-1, B-5, B-6-1/2, B-7, B-8-1/2, D-3, D-4, D-5, D-6은 【남】 예천중학교군(예천)과 자유학구 【여】 예천중학구(예천)와 자유학구 【남】 예천중학교군(예천)과 자유학구 【여】 예천중학구(예천)와 자유학구	풍천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안동시	(30) 웅부	와룡 녹전 원천분교 월곡 삼계분교 온혜 임동 길주 상운(봉화)	- 산야리, 중가구리, 서지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서삼리 중 새마·상이전·하이전, 사신리 중 어석·태봉·안지는 북후중학구와 자유학구 - 원천1, 2리, 매정리는 청량중학구(봉화)와 자유학구 - 지리, 기곡리, 후평리, 어천리는 진보중학구(청송) - 임동면 망천1리중 안마·망지네, 망천2리 중 숲당, 마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 신라1,2리는 청량중학구(봉화)와 자유학구 - 하늘2리중 배골은 봉화중학구(봉화) 〔기타는 청량중학구(봉화)〕	웅부중	(남녀공학)	
안동시	(31) 풍산	풍산 풍북 안동송현 남후	 - 수1, 2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 하아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고하리, 고상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일직중학구의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풍산중	(남녀공학)	
안동시	(32) 일직	일직 남후 단촌(의성)	 - 고하리, 고상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하아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풍산중학구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 세촌2리 중 본동·동내개골 〔기타는 의성중학구(의성)〕	일직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구미시	(33) 선산	선산 옥성 덕촌 고아	- 생곡리, 신기리는 도개중학구와 자유학구 - 산촌리, 구봉리, 옥관리는 낙동중학구(상주)와 자유학구 - 황산리 중 물목은 현일중학구와 자유학구 - 황산리, 외예리, 내예리는 현일중학구와 아포중학구(김천)의 자유학구 (기타는 현일중학구)	선산중	(남녀공학)	
구미시	(34) 무을	무을		무을중	(남녀공학)	
구미시	(35) 해평	해평	- 낙산리, 일선리는 도개중학구와 자유학구	해평중	(남녀공학)	
구미시	(36) 산동	산동 구미인덕 구미신당 구미원당	-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 산동면(신당리, 인덕리)은 구미인덕중학구와 자유학구 - 구미인덕중학구와 자유학구 - 구미인덕중학구와 자유학구 - 구미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산동중	(남녀공학)	
구미시	(37) 구미인덕	구미인덕 산동 구미신당	- 산동중학구와 자유학구 -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 산동면(신당리, 인덕리)은 산동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산동중학구) - 산동중학구와 자유학구	구미인덕중	(남녀공학)	
구미시	(38) 오상	장천 해마루 학림(칠곡) 가산(칠곡)	 - 금전2동은 구미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구미시중학교군) - 금화리는 동명중학구(칠곡)	오상중	(남녀공학)	
구미시	(39) 도개	도개 해평 선산	 - 낙산리, 일선리는 해평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해평중학구) - 생곡리, 신기리는 선산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선산중학구)	도개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구미시	(40) 현일	고아	- 황산리, 외예리, 내예리는 아포중학구(김천)와 자유학구 - 황산리 중 물목은 선산중학구와 자유학구	현일중	(남녀공학)	
		구운 남계 지산	- 구미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문성7리, 문성8리는 구미시 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구미시중학교군)			
		원호	- 원호1리, 원호10리는 구미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구미시중학교군)			
		구미문성	- 구미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영주시	(41) 부석	부석 봉화(봉화)	- 보계리는 단산중학구 - 물야면 수식리는 영주시중학교군과 봉화중학구(봉화)의 자유학구	부석중	(남녀공학)	
		물야(봉화)	〔기타는 봉화중학구(봉화)〕 - 물야면 수식리는 영주시중학교군과 봉화중학구(봉화)의 자유학구 〔기타는 물야중학구(봉화)〕			
영주시	(42) 단산	옥대 부석	- 사천2리는 소수중학구 - 동원리, 사천1리는 영주시 중학교군 - 보계리 (기타는 부석중학구)	단산중	(남녀공학)	
영주시	(43) 소수	순흥 옥대	- 사천2리 - 동원리, 사천1리는 영주시 중학교군 (기타는 단산중학구)	소수중	(남녀공학)	
영천시	(44) 청통	청통		청통중	(남녀공학)	
영천시	(45) 신녕	신녕		신녕중	(남녀공학)	
영천시	(46) 화산	화산	- 화산1리(곽산제외), 화산2리 중 효지미는 산동중학구와 자유학구	화산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천시	(47) 별빛	자천 보현분교 지곡 임고 평천 고경 단포 대창 금호 용성(경산)	- 오산1리는 산동중학구 - 용계리(달산 제외) (기타는 산동중학구) - 상리리, 학리는 영천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영천시중학교군) - 강회리 (기타는 금호중학구) - 매남4리는 용성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용성중학구(경산)〕	별빛중	(남녀공학)	
영천시	(48) 영안	북안 영천	- 송포리는 영천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영천시중학교군 및 금호중학구)	영안중	(남녀공학)	
영천시	(49) 금호	영천 금호 거여	- 호남리, 대곡리는 영천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영천시중학교군 및 금호중학구) - 강회리는 별빛중학구	금호중	금호여중	
영천시	(50) 산동	자천 지곡 화산 영천중앙초 화남분교	- 오산1리 (기타는 별빛중학구) - 용계리(달산 제외)는 별빛중학구 - 화산1리(곽산제외), 화산2리 중 효지미는 화산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화산중학구) - 매산1동은 영천시중학교군 (기타는 영천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산동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상주시	(51) 낙동	낙동동부 옥성(구미) 중동	 - 산촌리, 구봉리, 옥관리는 선산중학구(구미)와 자유학구 〔기타는 선산중학구(구미)〕 - 회상2리 중 갈밭은 풍양중학구(예천)와 상주시중학교군의 자유학구 (기타는 상주시중학교군)	낙동중	(남녀공학)	
상주시	(52) 낙운	낙동	- 신상1, 2리, 분황리 중 구촌은 상주시중학교군	낙운중	(남녀공학)	
상주시	(53) 청리	청리 외남	 - 지사리, 소은리는 상주시중학교군	청리중	(남녀공학)	
상주시	(54) 내서	상주 낙서	- 신촌1, 2리, 고곡1, 2리(둔더기 제외), 북장리는 상주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상주시중학교군)	내서중	(남녀공학)	
상주시	(55) 중모	중모 모동		중모중	(남녀공학)	
상주시	(56) 모서	모서 화동	 - 화현1리 (기타는 화동중학구)	모서중	(남녀공학)	
상주시	(57) 화동	화동 화령	- 화현1리는 모서중학구 - 소곡2리 중 배실 (기타는 화령중학구)	화동중	(남녀공학)	
상주시	(58) 화령	화령 외서 농암초청화 분교(문경) 수정(충북)	- 소곡2리 중 배실은 화동중학구 - 대전2리, 예의1리 - 우산1, 2리, 이촌리, 대전1리, 서만2리, 하흘2리는 은척중학구 (기타는 상주시중학교군) - 내서3리 〔기타는 문경시중학교군(문경) 및 문경중학구(문경)와 가은중학구(문경)의 자유학구〕 - 동관2리(갈골, 동관음, 절골)	화령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상주시	(59) 은척	외서	- 우산1, 2리, 이촌리, 대전1리, 서만2리, 하흘2리 - 대전2리, 예의1리는 화령중학구 (기타는 상주시중학교군)	은척중	(남녀공학)	
		은척 무릉분교	- 함창중학구와 자유학구			
		이안	- 양범3리, 대현리(한틔제외), 아천리는 함창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함창중학구)			
		농암(문경)	- 지동리, 선곡리 〔기타는 문경시중학교군(문경) 및 문경중학구(문경)와 가은중학구(문경)의 자유학구〕			
상주시	(60) 화북	화북 입석분교	- 입석1리는 송면중(충북)과 자유학구 〔기타는 송면중(충북)〕	화북중	(남녀공학)	
		용화분교	- 보은중(충북)과 자유학구			
상주시	(61) 용운	옥산 아천초능치 분교(김천)	- 영오리 〔기타는 어모중학구(김천)〕	용운중	(남녀공학)	
상주시	(62) 함창	공검	- 상주중·성신여중과 자유학구	함창중	상지여중	
		백원	- 연봉1, 2리는 상주중·성신여중과 자유학구			
		함창 함창중앙 이안	- 양범3리, 대현리(한틔제외), 아천리는 은척중학구와 자유학구			
		은척초무릉분교	- 은척중학구와 자유학구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문경시	(63) 문경	호서남 점촌북 점촌 신기 점촌중앙 모전 산양 호계 농암 청화분교 영순	- 평지2리 - 위만1리, 우본리 중 감실은 용궁중학구(예천) (기타는 산양중학구) - 지동리, 선곡리는 은척중학구(상주) (기타는 가은중학구와 자유학구) - 내서3리는 화령중학구(상주) (기타는 가은중학구와 자유학구) - 왕태1리는 용궁중학구(예천)		문경여중	
문경시	(64) 산양	산양	- 평지2리는 문경시중학교군 및 문경중학구 - 위만1리, 우본리 중 감실은 용궁중학구(예천)	산양중	(남녀공학)	
문경시	(65) 산북	산북 창구분교 동로	- 지내리, 흑송리, 월천리는 용궁중학구(예천) - 마광리 - 명전리는 동로중학구와 단성중(충북)의 자유학구 (기타는 동로중학구)	산북중	(남녀공학)	
문경시	(66) 동로	동로 단천초가산분교(충북)	- 마광리는 산북중학구 - 명전리는 단성중(충북)과 자유학구 - 단성면 벌천리, 대강면 반곡리는 단성중(충북)과 자유학구〔기타는 단성중(충북)〕	동로중	(남녀공학)	
문경시	(67) 문경읍	문경 용흥 당포		문경서중	(남녀공학)	
문경시	(68) 마성	동성		마성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문경시	(69) 가은	가은 　희양분교 농암 　청화분교	 - 지동리, 선곡리는 은척중학구(상주) (기타는 문경시중학교군 및 문경중학구와 자유학구) - 내서3리는 화령중학구(상주) (기타는 문경시중학교군 및 문경중학구와 자유학구)	가은중	(남녀공학)	
경산시	(70) 자인	자인 남산 남성 다문	 - 전지리, 반곡리, 상대리, 하대리, 인흥리는 경산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강서리, 백안리, 당리리는 경산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경산시중학교군) - 마곡리, 현내리는 진량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진량중학교군 및 하양중학구)	자인중	자인여중	
경산시	(71) 용성	용성 금천(청도)	- 매남4리는 별빛중학구(영천)와 자유학구 - 소천 3리 〔기타는 금천중학구(청도)〕	용성중	(남녀공학)	
경산시	(72) 하양	하양 　화성분교 하주 청천 금락 다문 부림 와촌 계당 대동	 - 진량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청천리, 남하1, 2리, 은호1,2리는 대구광역시 3학교군(동구)과 자유학구 - 평(坪)사리, 평(平)1, 2리는 진량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진량중학교군 및 자인중학구) - 보인2리, 북1, 2리, 부기1, 2리, 양기리, 문천2리, 상림리, 내리리는 진량중학교군과 자유학구	무학중	하양여중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경산시	(73) 압량	경산압량		압량중	(남녀공학)	
군위군	(74) 군위	군위 효령 송원	 - 노행2리 중 심원 (기타는 효령중학구) - 사리2리는 경북중부중학구(의성)	군위중	(남녀공학)	
군위군	(75) 효령	효령 고매	- 노행2리 중 심원은 군위중학구	효령중	(남녀공학)	
군위군	(76) 부계	부계		부계중	(남녀공학)	
군위군	(77) 우보	우보		군위중우보분교	(남녀공학)	
군위군	(78) 의흥	의흥 석산분교		의흥중	(남녀공학)	
의성군	(79) 의성	의성 의성남부 의성북부 단촌 점곡 옥전 안평 금성	 - 세촌2리 중 본동·동내개골은 일직중학구(안동) - 오류리, 금봉리, 금학리 (큰마, 새뜸 제외), 실업2리 중 윗몸안골 (기타는 옥산중학구) - 신안 3리 - 대사1리는 봉양중학구와 경북중부중학구의 자유학구 (기타는 경북중부중학구) - 만천1, 2리 (기타는 금성중학구)	의성중	의성여중	
의성군	(80) 금성	금성 가음 춘산	- 만천1, 2리는 의성중학구 - 경북중부중학구와 자유학구 - 경북중부중학구와 자유학구	금성중	탑리여중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등학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의성군	(81) 다인	다인	- 용곡1, 2, 3리는 지보중학구(예천)와 자유학구	다인중	(남녀공학)	
의성군	(82) 경북중부	안평	- 대사1리는 봉양중학구와 자유학구	경북중부중	(남녀공학)	
		신평분교	- 신안3리는 의성중학구			
		이두	- 안사1, 2리, 중하1, 2, 3리, 만리1, 2리, 신수1, 2리, 월소1, 2, 3리, 쌍호1, 2리는 안계중학교군 및 안계중학구와 자유학구			
		송원(군위)	- 사리2리 〔기타는 군위중학구(군위)〕			
		단밀				
		가음				
		춘산	- 금성중학구와 자유학구			
의성군	(83) 안계	구천		안계중	(남녀공학)	- 구천초등학교: 남·여학생
		안계				
		이두	- 안사1, 2리, 중하1, 2, 3리, 만리1, 2리, 신수1, 2리, 월소1, 2, 3리, 쌍호1, 2리는 경북중부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경북중부중학구)			
의성군	(84) 봉양	도리원		봉양중	(남녀공학)	
		안평	- 대사1리는 경북중부중학구와 자유학구 - 신안3리는 의성중학구 (기타는 경북중부중학구)			
의성군	(85) 옥산	옥전	- 오류리, 금봉리, 금학리(큰마, 새뜸제외), 실업2리 중 윗몸안골은 의성중학구	옥산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청송군	(86) 청송	청송 파천 길안(안동) 이전	- 지리는 청송중부동분교 중학구와 자유학구 - 어천리, 송강리, 신기리, 황목리, 지리는 진보중학구 (기타 남학생은 진성중과 자유학구) - 황목리, 병부리 〔기타는 길안중학구(안동)〕 - 상평리중 석고개 (기타는 청송중부동분교중학구)	청송중	청송여중	
청송군	(87) 청송중 부동분교	청송 이전	- 지리는 청송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청송중학구) - 상평리 중 석고개는 청송 중학구	청송중부동 분교	(남녀공학)	
청송군	(88) 구천	부남		구천중	(남녀공학)	
청송군	(89) 현서	화목 길안초길송 분교(안동)	- 무계리 중 말방, 수락리 중 원수락은 안덕중학구 - 송사1리는 길안중학구(안동)	현서중	(남녀공학)	
청송군	(90) 안덕	안덕 화목	- 인지리 중 추강·손달은 현동중학구 - 무계리 중 말방, 수락리 중 원수락 (기타는 현서중학구)	안덕중	(남녀공학)	
청송군	(91) 현동	도평 안덕 죽장(포항)	- 인지리중 추강·손달 (기타는 안덕중학구) - 상사리, 하사리는 죽장중학구 (포항)와 자유학구 〔기타는 죽장중학구(포항)〕	현동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청송군	(92) 진보	진보 파천 임동(안동) 입암(영양)	 - 어천리, 송강리, 신기리, 황목리, 지리 (기타는 청송중학구) - 지리, 기곡리, 후평리, 어천리 〔기타는 웅부중학구(안동)〕 - 홍구리, 방전리는 영양중학구 (영양)와 자유학구	진성중	진보중	
영양군	(93) 영양	영양 영양중앙 입암 일월 청기분교 수비 석보	 - 홍구리, 방전리는 진보중학구 (청송)와 자유학구 - 수비중학구와 자유학구 - 수비중학구와 자유학구 - 석보중학구와 자유학구	영양중	영양여중	
영양군	(94) 석보	석보	- 영양중학구와 자유학구	석보중	(남녀공학)	
영양군	(95) 수비	일월 수비	- 영양중학구와 자유학구 - 영양중학구와 자유학구	수비중	(남녀공학)	
영덕군	(96) 영덕	영덕야성 지품	 - 삼화리, 신애리, 오천리중 구읍골 (기타는 지품중학구)	영덕중	영덕여중	
영덕군	(97) 강구	강구 남정	 - 남호리, 남정리, 중화리, 우곡리 (기타는 남정중학구)	강구중	(남녀공학)	
영덕군	(98) 남정	남정 송라(포항)	- 남호리, 남정리, 중화리, 우곡리는 강구중학구 - 지경1, 3리 〔기타는 송라중학구(포항)〕	남정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덕군	(99) 지품	지품	- 삼화리, 신애리, 오천리 중 구읍골은 영덕중학구	지품중	(남녀공학)	
영덕군	(100) 축산	축산항 경정분교 영해	- 영해중학구와 자유학구 (사진3리는 영해중학구) - 영해중학구와 자유학구 - 축산면 고곡1, 2리, 상원리, 부곡리, 도곡 1, 2리, 칠성1, 2리, 조항리, 대곡리, 기암2리는 영해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영해중학구)	축산중	(남녀공학)	
영덕군	(101) 영해	축산항 경정분교 영해 병곡 원황 창수 인천분교	- 사진3리 (기타는 축산중학구와 자유학구) - 축산중학구와 자유학구 - 축산면 고곡1, 2리, 상원리, 부곡리, 도곡 1, 2리, 칠성1, 2리, 조항리, 대곡리, 기암2리는 축산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영해중학구) - 병곡중학구와 자유학구 - 덕천리, 신평리, 사천리, 송천 1, 2리 및 각리1, 2, 3리 (기타는 병곡중학구와 자유학구)	영해중	(남녀공학)	
영덕군	(102) 병곡	병곡 원황	- 영해중학구와 자유학구 - 영해중학구와 자유학구 - 덕천리, 신평리, 사천리, 송천 1, 2리, 각리1, 2, 3리는 영해중학구	병곡중	(남녀공학)	
청도군	(103) 풍각	풍각 각남 덕산	 - 녹명2리 - 녹명1리는 이서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이서중학구)	풍각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청도군	(104) 금천	금천	- 소천3리는 용성중학구(경산)	금천중	(남녀공학)	
청도군	(105) 매전	동산		매전중	(남녀공학)	
청도군	(106) 이서	이서 각남 화양	 - 녹명2리는 풍각중학구 - 녹명1리는 풍각중학구와 자유학구 - 유등2리 - 유등1, 3리, 서상2리는 청도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청도중학교군)	이서중	(남녀공학)	
고령군	(107) 고령	고령 덕곡 운수 우곡 수륜(성주)	 - 노2리, 백1, 2리는 수륜중학구(성주)와 자유학구 - 사촌리 4반 - 예곡리 중 부례는 구지중(대구) (기타는 우곡중학구) - 작은리, 보월1, 2리, 남은1, 2리는 수륜중학구(성주)와 자유학구 〔기타는 수륜중학구(성주)〕	고령중	(남녀공학)	
고령군	(108) 고령중개진분교	개진		고령중개진분교	(남녀공학)	
고령군	(109) 성산	성산 박곡		성산중	(남녀공학)	
고령군	(110) 우곡	우곡	- 사촌리 4반은 고령중학구 - 예곡리 중 부례는 구지중(대구)	우곡중	(남녀공학)	
고령군	(111) 쌍림	쌍림		쌍림중	(남녀공학)	
고령군	(112) 다산	다산 용암(성주)	 - 동락2리 중 가죽정 - 중거1,2리는 성주중학구(성주) - 동락2리 중 모방골은 수륜중학구(성주)〔기타는 용암중학구(성주)〕	다산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성주군	(113) 성주	성주 성주중앙 선남 용암 대가 초전 월항	 - 문방1, 2, 3리 - 장학리, 명포1, 2리, 유서2리는 명인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명인중학구) - 중거1, 2리 - 동락2리 중 모방골은 수륜중학구 - 동락2리 중 가죽정은 다산중학구(고령) (기타는 용암중학구) - 광산리, 어은리, 명천리, 대천1, 2리, 옥화1, 2리, 도남1, 2리는 성주중가천분교중학구와 자유학구 - 용성1리 (기타는 초전중학구) - 용각1, 2, 3리, 보암1, 2리는 초전중학구와 자유학구	성주중	성주여중	
성주군	(114) 성주중 가천분교	가천 대가 수륜	 - 광산리, 어은리, 명천리, 대천1, 2리, 옥화1, 2리, 도남1, 2리는 성주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성주중학구) - 수성1리 중 가람 (기타는 수륜중학구)	성주중 가천분교	(남녀공학)	
성주군	(115) 용암	용암 대동	- 동락2리 중 가죽정은 다산중학구(고령) - 동락2리 중 모방골은 수륜중학구 - 중거1, 2리는 성주중학구 - 기산1, 2리, 운산리 (기타는 명인중학구)	용암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성주군	(116) 초전	초전 봉소분교 월항 지방분교	- 용성1리는 성주중학구 - 용각1, 2, 3리, 보암1, 2리는 성주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성주중학구)	초전중	(남녀공학)	
성주군	(117) 벽진	벽진		벽진중	(남녀공학)	
성주군	(118) 수륜	수륜 용암 덕곡(고령)	- 작은리, 보월1, 2리, 남은1, 2리는 고령중학구(고령)와 자유학구 - 수성1리 중 가람은 성주중 가천분교중학구 - 동락2리 중 모방골 - 동락2리 중 가죽정은 다산중학구(고령) - 중거1, 2리는 성주중학구 (기타는 용암중학구) - 노2리, 백1, 2리는 고령중학구(고령)와 자유학구 〔기타는 고령중학구(고령)〕	수륜중	(남녀공학)	
성주군	(119) 명인	선남 도원 대동	- 문방1, 2, 3리는 성주중학구 - 장학리, 명포1, 2리, 유서2리는 성주중학구와 자유학구 - 용신1, 2, 3리는 왜관중학교군(칠곡)과 자유학구 - 기산1, 2리, 운산리는 용암중학구	명인중	(남녀공학)	
칠곡군	(120) 약목	숭산 약목 관호 북삼초오평분교 운곡(김천)	- 북삼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관호2, 3, 4, 5리는 왜관중학교군 - 부상2리 〔기타는 율곡중학교군(김천)〕	약목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칠곡군	(121) 신동	신동 지천 하빈(대구)	- 삼청2리는 왜관중학교군 - 연호2리는 칠곡중(대구) - 금호리, 연호리 중 가정·구슬개, 낙산리는 칠곡중(대구) - 대평리, 무등1리 〔기타는 달서중(대구)〕	신동중	(남녀공학)	
칠곡군	(122) 동명	동명 동명동부 다부 가산	 - 금화리 〔기타는 오상중학구(구미)〕	동명중	(남녀공학)	
칠곡군	(123) 장곡	장곡 대교	 - 남율4, 5, 6리는 석적중학구	장곡중	(남녀공학)	
칠곡군	(124) 석적	석적 대교	 - 남율4, 5, 6리 (기타는 장곡중학구)	석적중	(남녀공학)	
예천군	(125) 용궁	예천 용궁 영순(문경) 산양(문경) 산북(문경)	- 황산리, 입암리는 예천중학교군 및 예천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예천중학교군 및 예천중학구) - 왕태1리 〔기타는 문경시중학교군(문경) 및 문경중학구(문경)〕 - 위만1리, 우본리 중 감실 - 평지2리는 문경시중학교군(문경) 및 문경중학구(문경) 〔기타는 산양중학구(문경)〕 - 지내리, 흑송리, 월천리 〔기타는 산북중학구(문경)〕	용궁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예천군	(126) 풍양	풍양 중동(상주)	- 회상2리 중 갈발은 상주시중학교군(상주)과 낙동중학구(상주)의 자유학구 (기타는 상주시중학교군)	풍양중	(남녀공학)	
예천군	(127) 지보	지보 다인(의성)	- 용곡1, 2, 3리는 다인중학구(의성)와 자유학구 〔기타는 다인중학구(의성)〕	지보중	(남녀공학)	
예천군	(128) 감천	감천	- 기곡2리 중 한밤실은 영주시중학교군(영주)과 자유학구	감천중	(남녀공학)	
예천군	(129) 용문	용문 유천	- 노사2리 (기타는 예천중학교군 및 예천중학구)	용문중	(남녀공학)	
예천군	(130) 예천	예천 예천동부 예천남부 호명 풍천풍서(안동) 유천	- 황산리, 입암리는 용궁중학구와 자유학구 - 풍천중학구(안동)와 자유학구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내 A-1, B-5, B-6-1/2, B-7, B-8-1/2, D-3, D-4, D-5, D-6은 풍천중학구(안동)와 자유학구 - 노사2리는 용문중학구		예천여중	
예천군	(131) 은풍	상리 은풍		은풍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봉화군	(132) 봉화	봉화 도촌 내성 동양 상운 봉성 물야	- 수식리는 영주시중학교군(영주)과 자유학구 - 문단1, 2리, 화천리, 도촌리는 영주시중학교군(영주)과 자유학구 - 청량중학구와 자유학구 - 하눌2리 중 배골 - 신라1, 2리는 청량중학구와 웅부중학구(안동)의 자유학구(기타는 청량중학구) - 청량중학구와 자유학구 - 북지1리 21통 4반은 봉화중학구 - 수식리는 영주시중학교군(영주)과 자유학구 (기타는 물야중학구)	봉화중	(남녀공학)	
봉화군	(133) 물야	물야	- 수식리는 봉화중학구와 영주시중학교군(영주)의 자유학구 - 북지1리 21통 4반은 봉화중학구	물야중	(남녀공학)	
봉화군	(134) 춘양	춘양 소천초 임기분교 소천초 두음분교	- 삼동1리는 청량중학구와 자유학구 - 갈산2리중 합강은 청량중학구와 자유학구 - 애당1, 2리, 도심1, 2리는 춘양중 서벽분교중학구 - 임기1, 2, 3리, 두음리(10통/1,2반), 눌산2리(10통/2,3반), 서천리는 소천중학구와 자유학구 - 임기3리 중 감전, 거내, 죽미는 소천중학구 - 갈산1리 중 공이, 갈산2리는 청량중학구	춘양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봉화군	(135) 춘양중 서벽분교	서벽 춘양	- 애당1, 2리, 도심1, 2리 - 삼동1리는 청량중학구와 춘양중학구의 자유학구 - 갈산2리중 합강은 청량중학구와 춘양중학구의 자유학구 (기타는 춘양중학구) - 김삿갓면(강원) 내리4반 중 조제와 춘양면 우구치리 중 하금정은 녹전중(강원)과 자유학구	춘양중 서벽분교	(남녀공학)	
봉화군	(136) 소천	소천 분천분교 임기분교 삼근초옥방분교(울진)	- 임기1, 2, 3리, 두음리(10통/1,2반), 눌산2리(10통/2,3반), 서천리는 춘양중학구와 자유학구 - 갈산1리 중 공이, 갈산2리는 청량중학구	소천중	(남녀공학)	
봉화군	(137) 석포	석포		석포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봉화군	(138) 청량	명호 법전중앙 재산 상운 봉성 동양 춘양 소천초 임기분교 녹전초원천분교 (안동) 이산(영주) 평은(영주)	 - 하눌2리중 배골은 봉화중학구 - 신라1, 2리는 웅부중학구 (안동)와 자유학구 - 봉화중학구와 자유학구 - 봉화중학구와 자유학구 - 삼동1리는 춘양중학구와 자유학구 - 갈산2리 중 합강은 춘양중학구와 자유학구 - 애당1, 2리, 도심1, 2리는 춘양중서벽분교중학구 (기타는 춘양중학구) - 갈산1리 중 공이, 갈산2리 - 임기3리 중 감전, 거내, 죽미는 소천중학구 (기타는 춘양중학구와 소천중학구의 자유학구) - 원천1, 2리, 매정리는 웅부중학구(안동)와 자유학구 〔기타는 웅부중학구(안동)〕 - 두월리는 영주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기타는 영주시중학교군) - 천본1리 중 윗두들 - 강동1리 중 왕류는 북후중학구(안동) 〔기타는 영주시중학교군(영주)〕	청량중	(남녀공학)	
울진군	(139) 울진	울진 울진남부 부구초 삼당분교 삼근 죽변 노음	 - 명도2리, 정림2리 - 소곡1리는 부구중학구 (기타는 죽변중학구) - 구산3리는 매화중학구	울진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울진군	(140) 평해	평해 월송 기성초 구산분교	- 학곡2리 남자는 후포중학구	평해중	(남녀공학)	
울진군	(141) 부구	부구 죽변	- 고목1, 2리, 덕천리는 죽변중학구 - 소곡1리 - 명도2리, 정림2리는 울진중학구 (기타는 죽변중학구)	부구중	(남녀공학)	
울진군	(142) 매화	매화 노음	- 구산3리 (기타는 울진중학구)	매화중	(남녀공학)	
울진군	(143) 기성	기성 사동분교		기성중	(남녀공학)	
울진군	(144) 온정	온정	- 덕인2, 3리는 후포중학구	온정중	(남녀공학)	
울진군	(145) 죽변	죽변 부구	- 명도2리, 정림2리는 울진중학구 - 소곡1리는 부구중학구 - 고목1, 2리, 덕천리 (기타는 부구중학구)	죽변중	(남녀공학)	
울진군	(146) 후포	후포 후포동부 평해 온정	 - 학곡2리 남자 (기타는 평해중학구) - 덕인2, 3리 (기타는 온정중학구)	후포중	(남녀공학)	
울릉군	(147) 울릉	울릉 저동 남양 천부 현포분교		울릉중	(남녀공학)	

【별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 중학교의 희망 배정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에 따라 **큰 학교(중학교)의 중학교군 및 중학구의 배정 대상 학생은 아래 표와 같이 작은 학교(중학교)로도 지원 할 수 있다.**

【큰 학교(중학교)에서 작은 학교(중학교)로 일방향 이동 가능】

시군명	【큰 학교】 (중학교)	중학교군 · 중학구	【작은 학교】 (중학교)	중학교군 · 중학구	비고
포항	신흥중(남녀공학) 포항포은중(남녀공학) 오천중(남녀공학)	오천중학교군	대송중(남녀공학) 장기중(남녀공학)	영일중학교군 장기중학구	
포항	양덕중(남녀공학) 장흥중(남녀공학) 대도중(남) 환호여중(여)	포항시 제1학교군	청하중(남녀공학) 서포중(남녀공학)	청하중학구 서포중학구	
김천	율곡중(남녀공학) 운남중(남녀공학)	율곡중학교군	개령중(남녀공학) 감문중(남녀공학)	개령중학구 감문중학구	
안동	풍천중(남녀공학)	풍천중학구	풍산중(남녀공학)	풍산중학구	
안동	안동중(남) 경안중(남) 경덕중(남) 안동여중(여) 복주여중(여) 경안여중(여) 길주중(남녀공학)	안동시중학교군	북후중(남녀공학)	북후중학구	

시군명	【큰 학교】 (중학교)	중학교군 · 중학구	【작은 학교】 (중학교)	중학교군 · 중학구	비고
영주	영주중(남) 영주여중(여) 영광중(남) 대영중(남) 영광여중(여) 동산여중(여)	영주시중학교군	단산중(남녀공학) 소수중(남녀공학)	단산중학구 소수중학구	
경산	경산중(남) 장산중(남녀공학) 사동중(남녀공학) 삼성현중(남녀공학) 문명중(남) 경산여중(여)	경산시중학교군	용성중(남녀공학) 자인여중(여)	용성중학구 자인중학구	
군위	군위중(남녀공학)	군위중학구	군위중우보분교 (남녀공학)	우보중학구	
고령	고령중(남녀공학)	고령중학구	쌍림중(남녀공학)	쌍림중학구	
성주	성주중(남)	성주중학구	용암중(남녀공학)	용암중학구	
칠곡	왜관중(남녀공학) 순심중(남)	왜관중학교군	신동중(남녀공학)	신동중학구	
봉화	봉화중(남녀공학)	봉화중학구	물야중(남녀공학) 소천중(남녀공학)	물야중학구 소천중학구	
울진	울진중(남녀공학)	울진중학구	매화중(남녀공학)	매화중학구	
울진	후포중(남녀공학)	후포중학구	평해중(남녀공학)	평해중학구	

【별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 초등학교의 희망 배정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에 따라 **큰 학교(초등학교) 통학 구역 거주지 내 주소를 둔 학생이 작은 학교(초등학교) 졸업 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배정은 학생이 거주하는 **주소지 기준의 초등학교와 졸업한 기준의 초등학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시군명	【큰 학교】 초등학교 (주소지 기준)	중학교군·중학구	【작은 학교】 초등학교 (졸업교 기준)	중학교군·중학구	비고
포항	포항양덕초 포항송곡초	포항시제1학교군	곡강초 흥해서부초 신광초 송라초	흥해중학구 흥해중학구 신광중학구 송라중학구	
포항	포항원동초 문덕초	오천중학교군	문충초 장기초 양포초 대송초 남성초	오천중학교군(신흥중) 장기중학구 장기중학구 영일중학교군 영일중학교군	선 배정
포항	포항대흥초	포항시제1학교군	기북초	기계중기북분교중학구	
포항	이동초	포항시제1학교군	죽장초	서포중학구	

시군명	【큰 학교】 초등학교 (주소지 기준)	중학교군·중학구	【작은 학교】 초등학교 (졸업교 기준)	중학교군·중학구	비고
경주	경주초	경주시학교군	사방초	경주시학교군	
	동방초	경주시학교군			
	황성초	경주시학교군	괘릉초	불국중학구	
	흥무초	경주시학교군			
	동천초	경주시학교군	양동초	안강중학구	
	유림초	경주시학교군			
	용강초	경주시학교군	영지초	불국중학구	
	용황초	경주시학교군			
	금장초	경주시학교군	모아초	경주시학교군	
	현곡초	경주시학교군			
	황남초	경주시학교군			
	불국사초	불국중학구			
	안강제일초	안강중학구			
	산대초	안강중학구			
	입실초	외동중학구			
	건천초	무산중학구			
김천	율곡초	율곡중학교군 (대신1~3리, 봉산1~3리는 아포중학구와 자유학구)	개령초	개령중학구	
			조마초	김천시 중학교군	
			위량초	감문중학구	
김천	운곡초	율곡중학교군 (봉천1리는 아포중학구와 자유학구, 부상2리는 약목중학구)	감천초	김천시 중학교군	
안동	안동송현	안동시중학교군 (수1, 2리는 풍산중학구와 자유학구)	북후	북후중학구	

시군명	【큰 학교】 초등학교 (주소지 기준)	중학교군·중학구	【작은 학교】 초등학교 (졸업교 기준)	중학교군·중학구	비고
구미	선산초	선산중학구 (생곡리, 신기리는 도개중학구와 자유학구)	옥성초 무을초 덕촌초 도개초	선산중학구 무을중학구 선산중학구 도개중학구	
구미	구미문성초 원호초	현일중학구 (구미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현일중학구 (원호1리,원호10리는 구미시 중학교군과 자유학구)	남계초	현일중학구	
영주	영주동부초 영주중앙초 영주남부초 영주서부초 영일초 남산초 영주가흥초 풍기초	영주시중학교군 영주시중학교군 영주시중학교군 영주시중학교군 영주시중학교군 영주시중학교군 영주시중학교군 풍기중학교군	이산초 평은초 문수초 장수초 안정초 풍기북부초 봉현초 순흥초 욱대초 부석초	영주시중학교군 영주시중학교군 영주시중학교군 영주시중학교군 영주시중학교군 풍기중학교군 풍기중학교군 소수중학구 단산중학구 부석중학구	

시군명	【큰 학교】 초등학교 (주소지 기준)	중학교군·중학구	【작은 학교】 초등학교 (졸업교 기준)	중학교군·중학구	비고
영천	영천중앙초 포은초 영천초	영천시학교군	거여초 고경초 대창초 북안초 자천초 자천초보현분교 지곡초 청통초 평천초 화산초 영천중앙초화남분교	금호중학구 별빛중학구 별빛중학구 영안중학구 별빛중학구 별빛중학구 산동중학구 청통중학구 별빛중학구 화산중학구 산동중학구	
상주	상주초 상산초 상주중앙초 상영초 성동초	상주시중학교군 〔신촌1, 2리, 고곡1, 2리(둔더기 제외), 북장리는 내서 중학구와 자유학구〕 상주시중학교군 상주시중학교군 상주시중학교군 상주시중학교군	외남초 은척초 공검초	청리중학구 은척중학구 함창중학구 (상주중. 성신 여중과 자유학구)	
경산	경산동부초 사동초	경산시중학교군	용성초	용성중학구	
군위	군위초	군위중학구	효령초 우보초	효령중학구 우보중학구	
청송	청송초	청송중학구 (지리는 청송중부동분교중학구와 자유학구)	부남초	구천중학구	
영양	영양초	영양중학구	일월초	영양중학구 (수비중학구와 자유학구)	

시군명	【큰 학교】 초등학교 (주소지 기준)	중학교군 · 중학구	【작은 학교】 초등학교 (졸업교 기준)	중학교군 · 중학구	비고
영덕	영해초	영해중학구 (축산면 고곡1, 2리, 상원리, 부곡리, 도곡1, 2리, 칠성1, 2리, 조항리, 대곡리, 기암2리는 축산중학구와 자유학구)	창수초	영해중학구	
고령	다산초	다산중학구	박곡초	성산중학구	
칠곡	왜관초 왜관동부초	왜관중학교군	신동초	신동중학구	
칠곡	북삼초 인평초	북삼중학교군	송산초	북삼중학교군 (약목중학구와 자유학구)	
칠곡	왜관초 왜관중앙초	왜관중학교군	관호초	약목중학구	
예천	예천초	【남】 예천중학교군 (황산리, 입암리는 용궁중학구와 자유학구) 【여】 예천중학구 (황산리, 입암리는 용궁중학구와 자유학구)	상리초 은풍초	은풍중학구	
예천	호명초	【남】 예천중학교군 (풍천중학구(안동)와 자유학구) 【여】 예천중학구 (풍천중학구(안동)와 자유학구)	상리초 은풍초 지보초	은풍중학구 은풍중학구 지보중학구	
봉화	내성초	봉화중학구	봉성초 동양초	봉화중학구 (청량중학구와 자유학구)	
울진	울진초 울진남부초	울진중학구	노음초 매화초	매화중학구	
울진	후포초	후포중학구6	월송초	평해중학구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신·구 대비표

중학교군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 학 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 학 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김천시	(6) 김천시	〈중략〉 김천신일 김천부곡 김천동신 농소 〈중략〉	-신촌리, 월곡2리 중 용시, 월곡3리 중 남곡, 월곡4리(기타는 율곡중학구)	김천중앙중 김천중 성의중 석천중 문성중	김천여중 성의여중 한일여중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김천시	(6) 김천시	〈중략〉 김천신일 김천부곡 김천동신 〈삭제〉	〈삭제〉	김천중앙중 김천중 성의중 석천중 문성중	김천여중 성의여중 한일여중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2021.3.1. 운남중 신설에 따른 농소초 일부 중학구 조정(김천시 중학교군→율곡중학교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김천시	(7) 율곡	농소 운곡 율곡 아포	-봉천1리는 아포중학구와 자유학구 -부상2리는 약목중학구(칠곡) -대신1~3리, 봉산1~3리는 아포중학구와 자유학구 -대신1~3리, 봉산1~3리는 아포중학구와 자유학구(기타는 아포중학구)	율곡중 운남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2021.3.1. 운남중 신설에 따라 율곡중학구를 율곡중학교군으로 개편 단, 구 농남중학구 거주 학생은 율곡중학교 선배정(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참조)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구미시	(8) 구미시	〈중략〉 구미문성 〈신설〉	 -현일중학구와 자유학구 〈신설〉	구미중 금오중 경구중 인동중 형곡중 형남중 구미신평중 진평중 도송중 옥계중 상모중 봉곡중 선주중 천생중 오태중 광평중 옥계동부중 해마루중	구미여중 송정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회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구미시	(9) 구미시	〈중략〉 구미문성 구미원당	 -현일중학구와 자유학구 -산동중학구와 자유학구	구미중 금오중 경구중 인동중 형곡중 형남중 구미 신평중 진평중 도송중 옥계중 상모중 봉곡중 선주중 천생중 오태중 광평중 옥계 동부중 해마루중	구미여중 송정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회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칠곡군	(18) 왜관	왜관 왜관중앙 왜관동부 낙산 매원 신동 석적 관호 약동 도원(성주)	 -금남리 중 바우는 달서중(대구) -삼청2리 -연호2리는 칠곡중(대구) (기타는 신동중학구) -장곡중학구와 자유학구 -관호2, 3, 4, 5리 (기타는 약목중학구) -선남면 용신1, 2, 3리는 명인중학구(성주)와 자유학구 (기타는 명인중학구)	왜관중 석전중 순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순심여중		칠곡군	(19) 왜관	왜관 왜관중앙 왜관동부 낙산 매원 신동 〈삭제〉 관호 약동 도원(성주)	 -금남리 중 바우는 달서중(대구) -삼청2리 -연호2리는 칠곡중(대구) (기타는 신동중학구) 〈삭제〉 -관호2, 3, 4, 5리 (기타는 약목중학구) -선남면 용신1, 2, 3리는 명인중학구(성주)와 자유학구 (기타는 명인중학구)	왜관중 석전중 순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순심여중	〈삭제〉 2021. 3. 1.자 석적중 신설에 따른 학구 조정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현행					개정안				
학 교 명	마 을 명	성별	선배정학교	비고	학 교 명	마 을 명	성별	선배정학교	비고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농소초등학교 운곡초등학교 율곡초등학교	구 농남중학구 -농소면: 월곡1리~3리(용시, 남곡 제외), 입석리, 연명리, 노곡리, 봉곡1,2리, 용암1,2리 -남면: 운남1리 중 1192번지 및 1200번지 -남면: 운곡리, 송곡1,2리, 운남1,2리, 부상1리, 월명1,2리, 옥산1,2리, 봉천1,2리, 오봉1,2리 -남면: 초곡1리	남·여	율곡중학교	〈김천〉 희망 시 선배정
옥계초등학교 양포초등학교 옥계동부초등학교 해마루초등학교 〈신설〉	 - 금전2동은 오상중학구와 자유학구	남·여 남·여 남·여	옥계중학교 옥계동부중학교 해마루중학교	추첨배정	옥계초등학교 양포초등학교 옥계동부초등학교 해마루초등학교 구미원당초등학교	 - 금전2동은 오상중학구와 자유학구	남·여 남·여 남·여	옥계중학교 옥계동부중학교 해마루중학교	추첨배정 〈구미〉 2020. 3. 1.자 구미원당초 신설

중학구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포항시	(5) 기계	기계 〈신설〉	〈신설〉	기계중	(남녀공학)		포항시	(5) 기계	기계 죽장초 상옥분교	-기계중기북분교중학구와 자유학구	기계중	(남녀공학)	
포항시	(6) 기계중 기북 분교	기북 〈신설〉	〈신설〉	기계중 기북분교	(남녀공학)		포항시	(6) 기계중 기북분교	기북 죽장초 상옥분교	-기계중학구와 자유학구	기계중 기북분교	(남녀공학)	
포항시	(7) 기계중 상옥분교	죽장초 상옥분교		기계중 상옥분교	(남녀공학)		포항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021.3.1. 기계중상옥분교 폐교
포항시	(8) 제철	제철 제철지곡 효자		포항제철중	포항제철여중	효자초는 포항시제1학교군 및 제출중학구와 추첨에 의한 배정 ※포항제철여중 미개교시 기존 중학구 적용	포항시	(7) 제철	제철 제철지곡 효자		포항 제철중	〈삭제〉 (남녀공학)	효자초는 포항시제1학교군 및 제출중학구와 추첨에 의한 배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김천시	(23) 아포	아포 운곡 율곡 고아(구미)	-대신1~3리, 봉산1~3리는 율곡중학구와 자유학구 -봉천1리는 율곡중학구와 자유학구(기타는 율곡중학구) -대신1~3리, 봉산1~3리는 율곡중학구와 자유학구(기타는 율곡중학구) -황산리, 외예리, 내예리는 현일중학구(구미)와 자유학구 -황산리중 물목은 선산중학구(구미)와 현일중학구(구미)의 자유학구 〔기타는 현일중학구(구미)〕	아포중	(남녀공학)		김천시	(22) 아포	아포 운곡 율곡 고아(구미)	-대신1~3리, 봉산1~3리는 율곡중학교군과 자유학구 -봉천1리는 율곡중학교군과 자유학구(기타는 율곡중학교군) -대신1~3리, 봉산1~3리는 율곡중학교군과 자유학구(기타는 율곡중학교군) -황산리, 외예리, 내예리는 현일중학구(구미)와 자유학구 -황산리중 물목은 선산중학구(구미)와 현일중학구(구미)의 자유학구 〔기타는 현일중학구(구미)〕	아포중	(남녀공학)	2021.3.1. 운남중 신설에 따라 율곡중학구를 율곡중학교군으로 조정 〈수정〉
김천시	(26) 율곡	농소 운곡 율곡 아포	-신촌리, 월곡2리 중 용시, 월곡3리 중 남곡, 월곡4리는 김천시중학교군 -봉천1리는 아포중학구와 자유학구 -부상2리는 약목중학구(칠곡) -대신1~3리, 봉산1~3리는 아포중학구와 자유학구 -대신1~3리, 봉산1~3리는 아포중학구와 자유학구(기타는 아포중학구)	율곡중	(남녀공학)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021.3.1. 운남중 신설에 따라 율곡중학구 삭제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구미시	(38) 산동	산동 구미인덕 〈신설〉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 산동면(신당리, 인덕리)은 구미인덕중학구와 자유학구 -구미인덕중학구와 자유학구 〈신설〉	산동중	(남녀공학)		구미시	(36) 산동	산동 구미인덕 구미신당 구미원당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 산동면(신당리, 인덕리)은 구미인덕중학구와 자유학구 -구미인덕중학구와 자유학구 -구미인덕중학구와 자유학구 -구미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산동중	(남녀공학)	2020. 3. 1.자 구미신당초 신설 2020. 3. 1.자 구미원당초 신설
구미시	(39) 구미인덕	구미인덕 산동 〈신설〉	-산동중학구와 자유학구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 산동면(신당리, 인덕리)은 산동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산동중학구) 〈신설〉	구미인덕중	(남녀공학)		구미시	(37) 구미인덕	구미인덕 산동 구미신당	-산동중학구와 자유학구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 산동면(신당리, 인덕리)은 산동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산동중학구) -산동중학구와 자유학구	구미인덕중	(남녀공학)	2020. 3. 1.자 구미신당초 신설
영천시	(47) 신녕	신녕 영화초화덕분교	-대안3리 (기타는 화산중학구)	신녕중	(남녀공학)		영천시	(45) 신녕	신녕 〈삭제〉	〈삭제〉	신녕중	(남녀공학)	2020. 3. 1.자 영화초화덕분교 폐교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영천시	(48) 화산	화산 영화초 화덕분교	-화산1리(곽산제외), 화산2리 중 효지미는 산동중학구와 자유학구 -대안3리는 신녕중학구	화산중	(남녀공학)		영천시	(46) 화산	화산 〈삭제〉	-화산1리(곽산제외), 화산2리 중 효지미는 산동중학구와 자유학구 〈삭제〉	화산중	(남녀공학)	2020.3.1.자 영화초화덕분교 폐교
칠곡군	(122) 약목	〈중략〉 운곡 (김천)	-부상2리〔기타는 율곡중학구 (김천)〕	약목중	(남녀공학)		칠곡군	(120) 약목	〈중략〉 운곡 (김천)	-부상2리〔기타는 율곡중학교군 (김천)〕	약목중	(남녀공학)	〈수정〉
칠곡군	(125) 장곡	장곡 석적 대교	-왜관중학교군과 자유학구	장곡중	(남녀공학)		칠곡군	(123) 장곡	장곡 〈삭제〉 대교	〈삭제〉 -남율4, 5, 6리는 석적중학구	장곡중	(남녀공학)	〈수정〉 2021.3.1.자 석적중 신설에 따른 학구 조정
〈신설〉							칠곡군	(124) 석적	석적 대교	-남율4, 5, 6리 (기타는 장곡중학구)	석적중	(남녀공학)	2021.3.1.자 석적중 신설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1월 30일

2021년도 정기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 총괄표

(단위 : ㎡, 천원)

구 분			건 수	수량(면적)	금 액	비 고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	22,039 3,407	3,000,000 8,0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22,039	3,000,000	
	2.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1	3,407	8,000,000	2동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6.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구분	소재지	수량(면적)				
1	토지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1404 (구어2산업단지 內)	• 22,039㎡	3,000,000	'20. 11.	•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신축에 따른 소유권 취득 • (토지)수의계약 (건축)공개경쟁 입찰	소재부품산업과 (신축)
	건물		• 연면적 3,407㎡	8,000,000	'22. 5.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 **주요내용**

○ **메디컬 융합소재 실용화센터 사용료 감면**

• 목　　적 : 메디컬 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섬유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메디컬 융합소재 실용화센터를 구축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 주관기관 지원

• 사용기관 : (재)경북테크노파크(道 출연기관)

• 사용기간 : 2020. 허가일 ~ 5년간

• 사용방법 : 무상

• 사용대상

사 업 명	건 물 명	준 공 시 기	소 재 지	건 축 연면적
메디컬 융합소재산업 활성화사업	메디컬 융합소재 실용화센터	'19. 12월	경산 지식산업 지구	7,014㎡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4일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

□ **주요내용**

1. 사 업 명 :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2. 위탁기간 : 2021. 1. ~ 2023. 12.(3년간)
3. 위탁대상 :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사무
4. 수탁기관 : 경상북도체육회
5. 사 업 비 : 연 3,400백만원(2021년도 본예산안)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6. 주요위탁내용
   가.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 선발
   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
   다. 우수선수 발굴육성, 훈련, 대회출전, 합숙생활 등 업무 지도
7. 위탁조건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 준수 조건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4일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

□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민간위탁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추진 필요성

○ 맑은누리타워 운영에 관한 전문성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 관리 효율화 및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지역 관광객들의 관광 코스로 활용

○ 맑은누리타워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 안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소각시설 굴뚝을 환경친화적 시설로 신도시 랜드마크화 추진

3. 위탁사무 내용 : 맑은누리타워 관리·운영 전반

○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청소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 점검

○ 시설물 운영 관리(견학 신청 관리, 방문객 안내 등)

○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월 1회 이상)

○ 기타 위탁자가 요구하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4. 위탁시설 개요

가.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호민로 108(맑은누리파크 內)

나. 시설규모 : 연면적 1,182㎡, 지상 1층(519㎡), 전망대 1 ~ 2층(663㎡)

다. 시설용도

○ 지상1층 : 홍보관 및 휴게공간

○ 전망대 : 별자리관측, 북카페 등

라. 견학코스(약 60분)

○ 시청각실 → 홍보관 → 자원회수(소각)시설 → 유기성 폐자원바이오 가스화(음식물)시설 → 맑은누리타워

5. 민간위탁기간

○ 위탁기간 : 2021. 1. ~ 2023. 12.(3년간)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입찰 방식

7. 소요예산 : 매년 550백만원

○ 인건비(청소 인력 2명, 경비 및 견학안내 3명)

○ 공공요금 및 제세(전력비, 연료비, 보험료 등)

○ 방문객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 유지관리비 등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기간 : 2020. 11. 16.(1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사전 적정성

○ 심의위원 : 11명(당연직 5, 위촉직 6)

○ 심의결과 : 적정(정책기획관-14537호(2020.11.19.))

〓 결 의 안 〓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20. 12. 18)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춘우 의원('20. 12. 1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기간**

○ 2020. 11. 9.(월) ~ 11. 22.(일) / 14일간

□ **감 사 반 : 각 상임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편성·운영**

□ **감사대상 : 87개 기관**

□ **감사결과 처리의견 : 552건**

○ 시정·처리 : 157건
○ 건의·촉구 : 368건
○ 제도 개선 : 23건
○ 수범 사례 : 4건

□ **지적사항 처리결과 : 지적사항 552건에 대하여 연 2회 (다음 연도 2월, 11월) 보고**

별첨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0년 12월 18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시**

○ 2021. 1. 26.(화) 14:00(1차 본회의)

○ 2021. 2. 5.(금) 11:00(2차 본회의)

□ **출석범위**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

□ **출석장소**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 **출석주요내용** :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도정질문 등 답변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2조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73조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320회 정례회)

●

2021. 1. 인쇄 / 2021. 1.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 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

<비매품>